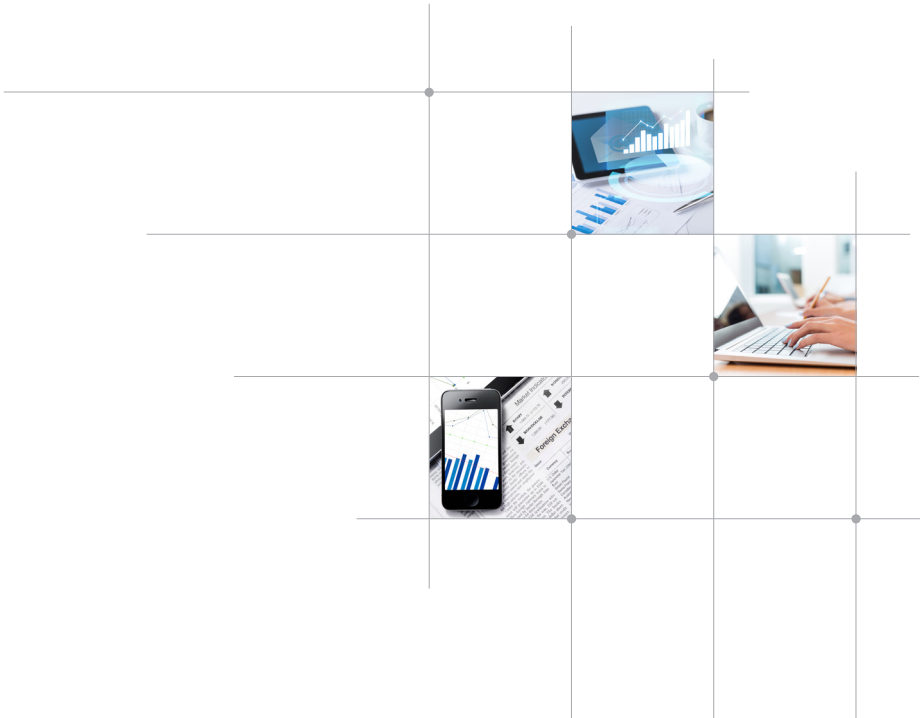




#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2024. 12.

권성준 · 이경훈 · 강성훈



#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2024. 12.

권성준 · 이경훈 · 강성훈



## 서 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지출을 발생시키므로, 반대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기부를 통한 민간의 공익활동 증가로 인한 효과가 세제지원에 따른 세 수입 감소 효과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세율 등의 변화로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하였을 때 납세자들의 기부참여, 평균 기부금액 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기부금 세제지원으로 사회적 효용이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세수입 감소분보다 더 큰지를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기부금 세제지원의 최소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의 증가 여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 2014년 이후 기부금 세액 공제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자의 기부행태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도 분석했다. 비록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욱 엄밀한 분석이 수행되어 본 연구에서 보여 주지 못한 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권성준 부연구위원과 이경훈 부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저지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 단계까지 연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조언을 해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과 외부 평가위원들이 계신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강동훈 초빙전문위원과 국세청 관계자 분들의 도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귀중한 자료를 특별히 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희선 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 분석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희선 연구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두 분의 익명 심사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으로,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견해를 정리한 것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2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OECD의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와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4.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1%보다 6.3%p 낮은 수준이고, 2021년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4.8%인데, OECD 회원국 평균 10.9%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낮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높은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로 복지재정 증대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에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무지출은 2022년 141.6조원, GDP 대비 6.5%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366.3조원, 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은 자발적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기부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장려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지출이므로 세수입을 감소시킨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지출은 2023년 귀속 기준 1.6조원으로, 세액감면 규모로는 매년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적지 않은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기부를 통한 민간의 공익활동 증가로 세수입 감소분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부금 세제지원으로 납세자의 기부행태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의 변화로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하였을 때 기부참여 비율, 평균적인 기부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본다.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는 과거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2014년 이후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된 사례가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으므로 소득세율의 변화로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할 수 있는데, 2014년 이후 일부 과세표준 구간인 소득세율이 인상된 사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와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 과세표준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의 사업소득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계점 아래로 낮추려는 유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세수입 감소분보다 사회적 효용이나 사회복지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의 최소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부 참여 및 평균적인 기부금액 수준의 증가 여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최근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므로, 공제율 인상이 기부금액 또는 기부 행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도 분석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볼 수 있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의 기부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는 납세자의 소득, 기부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므로 전체 납세자를 대표하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는 파악할 수 없으며, 신고자료상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간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5~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10% 표본에 대한 소득세 신고자료와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표본은 소득, 연령, 성별, 기부유형별 기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층화하고 각층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구축했다. 반복 횡단면 표본과 패널 표본 두 가지 형태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패널 표본의 경우 2015년 횡단면 표본을 2022년까지 추적하는 형태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며 각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기초자료로 분석 표본을 구축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분석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가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다. 2014년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세 차례 변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2018년과 2021년의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2018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6~2020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수행하며, 이 기간에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3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21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8~2022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1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5%p 상향 조정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변화 효과 분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 두 그룹에 대해 수행하며, 기부참여 여부,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의 변화가 기부금 규모, 기부유형(특례, 종교 외 일반, 종교 일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도 분석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소득세 신고 패널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던 납세자로 구성된 균형(balanced) 패널을 이용한다. 다만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기간 중 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납세자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소득신고를 했지만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즉 연말정산 신고자는 총급여액이 0,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수입금액이 0인 경우 표본에서 제외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부참여 여부, 기부금액 등의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과 2021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를 외생적 변이로 간주하고, 이를 활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한다.

$$C_{it} = \beta T_{it} \times P_{it} + \delta T_{it} + \gamma X_{it} + m_i + \pi_t + \varepsilon_{it}$$

여기서  $i$ 는 개별 납세자,  $t$ 는 연도,  $C_{it}$ 는 기부참여 여부 또는 (기부금액+1)의 로그값 등의 종속변수,  $T$ 는 처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P$ 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X$ 는 통제변수로 가처분소득의 로그값, 연령, 부양가족 수 등 주요 통제변수를 포함하며,  $m$ 은 개인고정효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특성을 통제한다.  $\pi$ 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연도별 더미변수이다.  $\varepsilon$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이상의 회귀식에서  $\beta$ 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세액공제율 인상 전후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가 기부참여 여부이면  $\beta$ 는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기부참여 비율이 몇 %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며, 종속변수가 로그 기부금액이면  $\beta$ 는 세액공제율 인상에 의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몇 % 증가했는지 나타낸다.

종속변수 중 하나인 기부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를 활용하여 각 연도에 실제로 기부한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계산하여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기부금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부유형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른 종속변수인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금액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때 기부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부유형별로 분석할 때 기부유형별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유형별 기부금액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처치집단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 통제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처치집단,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함께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처치집단,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참여율(즉 납세자 수 대비 기부자 수의 비율)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부참여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변화는 전체 기부참여율을 약 0.67%p 증가시켰

는데,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1.3%의 기부참여율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기부금 구간의 공제율만 변화하였을 뿐인데 모든 기부금 구간에서 효과가 나타나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분석 결과를 2018년 제도 변화의 온전한 효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참여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기부참여율은 약 1.65%p 감소하였고,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3.1%의 기부참여율 감소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천만원 초과 기부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나 100만원 초과 기부참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기부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제도 변화로 1천만원 미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제도 변화는 1천만원 미만 기부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부유형별 분석 결과는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종교 외 일반기부 참여의 증가로 전체 기부참여가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모든 기부유형에 대한 기부참여가 감소하여 전체 기부참여가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데, 특례기부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득수준별 분석 결과는 2018년, 2021년 제도 변화 모두 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기부참여가 증가하고, 소득 5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기부참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두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 변화였다. 하지만 소득구간별 분석 결과는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로 고소득층의 기부참여가 오히려 감소함을 보여 준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약 1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종교 외 일반기부가 다른 기부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분석에서는 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납세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라 할 수 있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인상된 경우로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 구간별 분석 결과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오히려 약 16.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특례기부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소득구간별로는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증가하지만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에서의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의 효과와 기부참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는 새로운 기부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효과가, 평균 기부금액의 감소는 기존 기부참여자가 기부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감소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나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 전후 기간 각각 한 해 이상 기부에 참여한 지속기부자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지속기부자에 대한 제도 변화의 효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에 대한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기부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평균적인 기부금액의 변화 정도는 기부 신규참여인원 혹은 중단인원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시사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을 1.0%p(제도 변화 이전 대비 약 16.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증가에 기인했다. 그런데 앞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액기부의 증가로 전반적인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결과는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가 제대로 식별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을 약 2.0%p 증가시켜 기부참여율이 제도

변화 이전보다 약 29%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은 하였지만,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참여도 약 0.2%p 증가하여 제도 변화 전 대비 빠른 증가세(약 49% 증가)를 보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안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기부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 모두 종교 외 일반기부 참여의 증가가 전반적 기부참여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는 증가하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된 결과, 두 제도 변화 모두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액을 약 12.9%, 2021년 제도 변화는 약 28.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두 제도 변화로 인한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가 종교 외 일반기부의 평균 금액이 증가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 분석의 경우 2018년 제도 변화는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을 증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고소득 신고자의 기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 서로 동일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의 영향이 상당 부분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기부자의 반응 정도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보다 작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도출되

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변화의 효과도 신규 기부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히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서만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소득세액 결정 과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규모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결국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가 소득세율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변화하면 기부가격이 변화하고, 결국 기부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2014년 5개 과세표준 구간에 6~38%의 세율을 적용하던 형태에서, 8개 과세표준 구간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특히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에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의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를 살펴본다. 해당 구간의 세율은 2017년 38%에서 40%,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패널 표본자료로, 불균형 패널자료이다. 불균형 패널인 이유는 소득세 신고자료의 특성상 일부 관측 대상의 경우 특정 연도의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이다. 따라서 분석 표본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다.

분석 방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부금액의 차이를 소득세율 인상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중차분분석법을 이용한다.

$$\log d_{it} = \alpha + \beta \text{Treat}_i \times \text{Post}_t + X_{it}\gamma + m_i + T_t + \varepsilon_{it}$$

여기서  $i$ 는 개인,  $t$ 는 연도,  $\log d$ 는 (기부금액+1)의 로그변수,  $\text{Treat}$ 는 처치

집단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Post*는 2017년 이후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X*는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 필요경비금액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T*는 연도별 더미변수, *m*은 관측되지 않은 개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  $\varepsilon$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 식에서 본 연구의 관심모수는  $\beta$ 로,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처치효과가 있었다면  $\beta$ 는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017년 이후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와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로 구분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과세표준 수준이 높은 고소득 사업소득자라 할 수 있으며, 추정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는 고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권성오·권성준(2020)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도 추정한다. 기부가격 탄력성은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2SLS(two stage least squares)로 추정한다.

$$\log d_{it} = \alpha + \beta \log(1 - \tau_{it}) + X_{it}\gamma + T_t + m_i + \varepsilon_{it}$$

여기서 *i*는 개인, *t*는 연도, *log d*는 (기부금액+1)의 로그변수,  $\tau$ 는 법정한계세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X*는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 필요경비금액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 벡터를 의미하고, *T*는 연도별 더미변수, *m*은 관측되지 않은 개인특성을 반영한 변수,  $\varepsilon$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상의 식에서  $\beta$ 가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기부가격에 대한 도구변수는 2017년과 2018년 소득세율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을 사용한다.

한편 소득의 과소신고, 비용의 과다계상 등 조세회피가 용이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는 분석 표본을 과소신고

비율이 낮은 업종과 높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과소신고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의 과소신고, 비용의 과다계상 등 조세회피가 용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본을 구분하였다.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업종은 안중석·김빛마로(2019)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과소신고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업종, 나머지 업종을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의 변화를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의 고소득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만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다른 주요 설명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 결과는 가치분소득이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성과, 기부금을 제외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소득세율 인상은 기부가격을 낮춤으로써 기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가치분소득을 감소시켜 기부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율 인상의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요경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은 필요경비 규모가 클수록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기부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필요경비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기부할 여력이 있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낮출 여지가 있는 사업소득자일수록 기부를 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세신고비율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과 달리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현상은 해당 집단이 세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수준이 높아서 세부담 경

감 수단인 기부금 세제혜택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다르게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기부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 용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기부 의사결정에 경제적 요건이 세제지원 제도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에는 전년도 과세대상소득과 당해의 기부금액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 결과도 있었다.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사업소득자가 기부 시점을 소득세율 인상 전으로 앞당겨 소득세율 인상 후 기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율 인상에 의한 기부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득세율 인상 결과,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와 함께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기본적으로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이중차분 결과와 유사하다. 전체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이론적 예측과 달리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부유형별 분석에서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1.410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기부가격의 1% 감소가 종교 일반기부 금액의 약 1.4%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과소신고비율 집단별 분석에서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기부가격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 집단의 기부가격 탄력성은 1.431로 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기부가격이 1% 하락한 경우, 기부금액이 1.4%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업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율의 변화는 세율체계를 개편하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의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변화하면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이 바뀌는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점에서 나타난다. 즉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경계점 아랫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거나 경계점 윗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표준 경계점 윗 구간의 사업소득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조정할 유인이 있는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경계점 아랫 구간으로 조정하려는 유인도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 바로 아래의 기부한 인원 비율이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경계점 바로 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을 기준으로 기부인원 비율, 평균 기부금액 등의 분포를 아랫 구간과 윗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 사업소득자의 기부형태 분석은 2015~2022년 종합소득세 횡단면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분석 표본에는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만을 포함한다. 경비를 신고자, 비사업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0인 사업자 등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거나 유인이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기부인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과세표준 1.5억원 근방에서만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고, 모든 기부유형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표준 1.5억원 근방 사업소득자가 기부참여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에서의 세율 변화에 대응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과세표준이 1.5억원보다 조금 크면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은 38%이고, 1.5억원보다 조금 작으면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은 35%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5억원 근방인 납세자는 기부참여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1.5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행태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부비율이 0.01~0.02% 수준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3억원, 5억원, 10억원 경계점은 각각 2018년, 2017년, 2021년에 도입되어 경계점 도입 전후 경계점 기부인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경계점 도입에 사업소득자들이 반응을 한다면 경계점 도입 이후에만 경

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과세표준 3억원, 5억원, 10억원 경계점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근방의 기부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기부인원이 적어 유의미한 변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과세표준 2.8억원에서 3.1억원 구간의 기부인원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이전보다 많아진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부를 한 사업소득자가 경계점 부근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일 수 있다.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경계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을 보여 주지 못했다. 앞서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에서는 경계점 아랫 구간 기부비율이 경계점 윗 구간 기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부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에서 세율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가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보다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변화와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바뀌었을 때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연구의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특정 고액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제도 변화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 이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의 증가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2018년 제도 변화로 고액기부 참

여가 증가하거나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한 것과 같은 제도 변화는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민간의 공익활동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 외 일반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제도 변화 효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액공제율의 전반적 인상의 효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기부를 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부금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한, 기부금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조세지출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 오히려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각종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다양한 공제제도 등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는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용받는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 비율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부근 사업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기부 인센티브 또는 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기부행태가 변화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 인센티브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집단 또는 계층을 타깃하여 해당 집단 또는 계층의 기부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경계점에서 기부행태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고,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또는 필요경비가 클수록 기부금액 수준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소득수준이 낮거나 수입 대비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부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기부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적 관점 그리고 민간 공익활동의 증대 측면에서 특례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 일반기부는 대체로 신앙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경제적 유인 없이 신앙적 동기만으로도 기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교 일반기부의 이러한 특성은 기부가격 하락에 의한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대체로 기부 인센티브 변화가 종교 일반기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종교 일반기부가 세제혜택보다 신앙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소득세율의 변화를 통해 기부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부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와 함께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충효과는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율이 낮은 원인인면서 기부 인센티브 변화의 효과가 특정 집단 혹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세제혜택의 확대로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도 변화를 통한 기부유도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면 기부 인센티브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액기부 참여를 늘리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021~2022년에는 한시적이지만 소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액기부 참여의 증가가 이러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부참여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에는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소액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참여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하며, 향후 더 엄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 중 하나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한계이다. 서두에서 설명했듯 본 연구가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나, 소득세 신고자료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가 없어 기부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신고자료상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세제적격 기부금에 한정하여 분석하여 모든 기부행태를 완전 반영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중차분분석,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 등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다.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이 동질적이지 못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부분에서는 통제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중차분분석의 가정인 평행추세를 엄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주요 한계점이다. 그리고 기부금액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서 0에 많이 분포하는 특성을 반영한 토빗 모형(Tobit Model)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



## 목 차

|                               |    |
|-------------------------------|----|
| I. 서론 .....                   | 29 |
| II.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 개요 .....      | 34 |
| I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 41 |
| 1. 이론적 모형 및 논의 .....          | 41 |
| 2. 문헌 고찰 .....                | 44 |
| 가. 국내 연구 .....                | 45 |
| 나. 해외 연구 .....                | 47 |
| 다. 시사점 및 논의 .....             | 51 |
| IV. 기초자료 및 현황 .....           | 53 |
| 1. 분석 자료 .....                | 53 |
| 2. 납세자의 기부현황 .....            | 56 |
| 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현황 .....      | 56 |
| 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현황 ..... | 62 |
| V.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 효과 분석 .....   | 67 |
| 1. 분석 방법 .....                | 68 |
| 2. 기초통계 분석 .....              | 71 |
| 3. 분석 결과 .....                | 80 |
|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 80 |
|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            | 90 |
| 4. 소결 .....                   | 98 |

---

|                                  |     |
|----------------------------------|-----|
| VI.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분석 .....         | 101 |
| 1. 소득세율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 | 103 |
| 가. 이론적 논의 .....                  | 103 |
| 나. 분석 방법 .....                   | 104 |
| 다. 기초통계 분석 .....                 | 109 |
| 라. 회귀분석 결과 .....                 | 115 |
| 마. 소결 .....                      | 126 |
| 2.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 | 127 |
| 가. 분석 개요 .....                   | 127 |
| 나. 분석 결과 .....                   | 129 |
| 다. 소결 .....                      | 151 |
| <br>                             |     |
| VII. 결론 .....                    | 152 |
| 1. 시사점 .....                     | 152 |
| 2. 한계점 .....                     | 155 |
| 3. 향후 연구과제 .....                 | 156 |
| <br>                             |     |
| 참고문헌 .....                       | 158 |
| <br>                             |     |
| 부록 .....                         | 162 |

---

---

## 표목차

|  |    |
|--|----|
| 〈표 II-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 37 |
| 〈표 II-2〉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                     | 39 |
| 〈표 II-3〉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 40 |
|  |    |
| 〈표 IV-1〉 종합소득세 자료 변수 .....                       | 54 |
| 〈표 IV-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 변수 .....                  | 55 |
|  |    |
| 〈표 V-1〉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변화 .....                      | 68 |
| 〈표 V-2〉 기초통계량 -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 분석 기간 .....         | 72 |
| 〈표 V-3〉 기초통계량 - 종합소득 신고자: 전체 분석 기간 .....         | 74 |
| 〈표 V-4〉 기초통계량 - 연말정산 신고자: 2016~2020년 .....       | 76 |
| 〈표 V-5〉 기초통계량 - 연말정산 신고자: 2018~2022년 .....       | 77 |
| 〈표 V-6〉 기초통계량 - 종합소득 신고자: 2016~2020년 .....       | 78 |
| 〈표 V-7〉 기초통계량 - 종합소득 신고자: 2018~2022년 .....       | 80 |
| 〈표 V-8〉 기부금액대별 기부참여율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 82 |
| 〈표 V-9〉 기부유형별 기부참여율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 83 |
| 〈표 V-10〉 소득구간별 기부참여율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 84 |
| 〈표 V-11〉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 85 |
| 〈표 V-12〉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지속기부자) .. | 87 |
| 〈표 V-13〉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 88 |
| 〈표 V-14〉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지속기부자) .. | 89 |
| 〈표 V-15〉 기부금액대별 기부참여율의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 91 |
| 〈표 V-16〉 기부유형별 기부참여율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 92 |
| 〈표 V-17〉 소득구간별 기부참여율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 93 |
| 〈표 V-18〉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 94 |

---

|  |     |
|--|-----|
| 〈표 V-19〉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종합소득세 신고자(지속기부자) .....    | 95  |
| 〈표 V-20〉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종합소득세 신고자 .....           | 97  |
| 〈표 V-21〉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종합소득세 신고자(지속기부자) .....    | 98  |
|  |     |
| 〈표 VI-1〉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                    | 102 |
| 〈표 VI-2〉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                    | 106 |
| 〈표 VI-3〉 업종별 사업소득세 과소신고비율 .....                  | 109 |
| 〈표 VI-4〉 이중차분모형 회귀분석 결과 .....                    | 116 |
| 〈표 VI-5〉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높은 집단) .....        | 118 |
| 〈표 VI-6〉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낮은 집단) .....        | 119 |
| 〈표 VI-7〉 2SLS 회귀분석 1단계 회귀분석 결과 .....             | 120 |
| 〈표 VI-8〉 2SLS 회귀분석 2단계 회귀분석 결과 .....             | 121 |
| 〈표 VI-9〉 기부유형별 2SLS 회귀분석 2단계 회귀분석 결과 .....       | 122 |
| 〈표 VI-10〉 과소신고비율 집단별 2SLS 회귀분석 결과 .....          | 123 |
| 〈표 VI-11〉 기부유형별 2SLS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높은 집단) ..... | 124 |
| 〈표 VI-12〉 기부유형별 2SLS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낮은 집단) ..... | 125 |

---

---

## 그림목차

|  |     |
|--|-----|
| [그림 IV-1]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비율 및 평균 기부금액 .....                             | 57  |
| [그림 IV-2]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금 공제인원 비율 및 평균 공제받은 기부금액 ·                     | 58  |
| [그림 IV-3] 종합소득세 신고자 공제방식별 평균 기부금액 .....                              | 59  |
| [그림 IV-4]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분 중 필요경비 산입 비율 .....                           | 59  |
| [그림 IV-5]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                                 | 60  |
| [그림 IV-6]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                              | 61  |
| [그림 IV-7]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 및<br>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 ..... | 62  |
| [그림 IV-8]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및 평균<br>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 .....  | 63  |
| [그림 IV-9]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br>인원 비율 .....          | 64  |
| [그림 IV-10]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 ·                       | 65  |
| [그림 IV-1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인원<br>비율 .....            | 65  |
| [그림 IV-1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받은<br>기부금액의 평균 .....         | 66  |
|  |     |
| [그림 VI-1] 연평균 총기부금액 분포 .....   | 110 |
| [그림 VI-2] 연평균 기부자 비율과 기부금액 추이 .....                                  | 110 |
| [그림 VI-3] 과세표준 구간별 연평균 기부자 비율과 기부금액 추이 .....                         | 111 |
| [그림 VI-4] 2017년 전후 과세표준별 납세자 수 변화 .....                              | 113 |
| [그림 VI-5] 연도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기부금액(로그값) 추이 .....                        | 114 |
| [그림 VI-6] 연도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부가격 추이 .....                              | 114 |
| [그림 VI-7]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기부비율 .....           | 130 |

---

|   |           |
|---|-----------|
| [그림 VI-8]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평균 기부금액             | · 131     |
| [그림 VI-9] 과세표준 3억, 5억, 10억원 근방 기부비율                                 | ..... 133 |
| [그림 VI-10]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기부인원 비교                               | ..... 134 |
| [그림 VI-11] 과세표준 3억, 5억, 10억원 근방 평균 기부금액                             | ..... 135 |
| [그림 VI-12] 과세표준 1,200만, 4,600만원 근방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 ..... 137 |
| [그림 VI-13] 과세표준 8,800만, 1.5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 ..... 138 |
| [그림 VI-14] 과세표준 1,200만, 4,600만원 근방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 .... 139  |
| [그림 VI-15] 과세표준 8,800만, 1.5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 ..... 140 |
| [그림 VI-16]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 ..... 142 |
| [그림 VI-17] 기부유형별 신고인원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비교                         | ..... 143 |
| [그림 VI-18]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 ..... 144 |
| [그림 VI-19]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비교                      | .. 145    |
| [그림 VI-20]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br>기부비율    | ..... 147 |
| [그림 VI-21]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br>평균 기부금액 | ..... 148 |
| [그림 VI-22]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 기부비율                                 | ..... 149 |
| [그림 VI-23] 과소신고비율별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신고인원 비교                       | .. 150    |
| [그림 VI-24]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 평균 기부금액                              | ..... 150 |

---

# I. 서론

---

우리나라는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OECD의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와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4.8%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1%보다 6.3%p 낮은 수준이다.<sup>1)</sup> 고령층에 대한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3.5%인데, OECD 평균과 비교하여 4.7%p 낮은 수준이다.<sup>2)</sup> 2021년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열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sup>3)4)</sup> 또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14.8%인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0.9%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39.3%에 이르며(OECD 회원국 평균 12.5%), 이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sup>5)</sup>

---

1) OECD Data Explorer,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 <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4. 10. 25.

2) OECD Data Explorer,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 <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4. 10. 25.

3)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커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팔마비율은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40%의 소득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021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은 각각 0.329와 1.25로 나타나며,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지니계수는 0.021, 팔마비율은 0.08 높은 수준이다.

4)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4. 10. 25.

낮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높은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로 복지재정 증대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2)에서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무지출은 2022년 141.6조원으로 GDP 대비 6.5%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366.3조원, GDP 대비 11.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 규모는 2022년 31.9조원에서 2050년 182.9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은 자발적 기부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기부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장려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지출이므로 세수입을 감소시킨다.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개인기부금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지출은 2023년 귀속 기준 1.6조원으로, 세액감면 규모로는 매년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다.<sup>6)</sup>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

5) OECD Data Explorer,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 일자: 2024. 10. 25.

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 9.

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적지 않은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기부를 통한 민간의 공익활동 증가로 세수입 감소분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부금 세제지원으로 납세자의 기부행태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의 변화로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하였을 때 기부참여 비율, 평균적인 기부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본다.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는 과거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2014년 이후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된 사례가 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으므로 소득세율의 변화로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변화할 수 있는데, 2014년 이후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이 인상된 사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와 소득세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 인센티브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 과세표준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의 사업소득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계점 아래로 낮추려는 유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기부참여와 평균적인 기부금액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는 사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세수입 감소분보다 사회적 효용이나 사회복지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sup>7)</sup>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의 최소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기부참여 및 평균적인 기부금액 수준의 증가 여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7)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중요하고 유망한 연구 주제로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2014년 공제방식 변화의 효과를 주로 분석하여, 2014년 공제방식 변경된 이후 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므로, 공제율 인상이 기부금액 또는 기부행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도 분석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근로소득자의 기부행태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고,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에 대한 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볼 수 있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의 기부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sup>8)</sup>

선행연구 대비 본 연구의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분석에 이용한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는 납세자의 소득, 기부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광범위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므로 전체 납세자를 대표하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소득세 신고자료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누락변수 편의로 분석 결과

---

8) 2014년 공제방식의 변경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자에게만 영향을 주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4년 제도 변화에 상관없이 2014년 이후에도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소득자가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중 선택하여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II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신고자료상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간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자료에 나타나는 기부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한 정보만 존재하므로,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기부를 했다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sup>9)</sup> 그리고 세제지원 대상 기부금의 경우에도 소득세액이 적거나 다른 공제항목 적용으로 이미 충분한 공제를 받은 경우 실제 기부금액을 과소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소득세 신고자료상 식별되는 세제적격 기부금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기부행태를 완전 반영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 저해될 수 있음도 의미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Ⅲ장은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Ⅳ장은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기초자료인 국세청 소득세 신고표본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이 표본자료에 기반하여 납세자의 기부현황을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변화가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소득세율의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하며,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의 변화가 기부가격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 과세표준의 조정을 통해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9) 세무 절차의 복잡성을 회피하기 위해 비적격 단체나 기관에 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 II.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 개요10)

「소득세법」에서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sup>11)12)</sup> 이렇게 정의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경우 해당 유형으로 분류되는 기부금용 세법에 열거하고 있다.<sup>13)</sup> 세법에서 일반적인 용역기부는 기부로 인정하고

10) 본 장은 권성준 외(2020)의 일부를 수정하여 정리한 것이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http://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1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되는데, 이때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13) 특례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2%95%EC%9D%B8%EC%84%B8%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2%95%EC%9D%B8%EC%84%B8%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에 열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세법상 지정하는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

있지 않지만 재난지역구호에 대해서는 기부로 인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된다.<sup>14)</sup> 이때 자원봉사 여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소득세법」상 현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개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sup>15)</sup>)로 한다.<sup>16)17)</sup>

현행 제도상에서 「소득세법」상 조세지원 대상인 기부금을 지출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 산입을 통한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세액공제 적용을 통한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즉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만약 사업소득만 있다면 세

---

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 14)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로 나누어 산출하고, 부수적인 비용은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http://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 15) 장부가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의미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0%95%EB%AC%BC%EA%B4%80+%EB%B0%8F+%EB%AF%B8%EC%88%A0%EA%B4%8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하며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소득이 없고 사업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과 다른 유형의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공제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산입순서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이며,<sup>18)</sup> 기부금 유형별로 산입한도액이 적용된다. 각 기부금 유형별로 산입한도는 <표 II-1>에 정리하였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일반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종교단체기부금 유무에 따라 다르다.<sup>19)</sup>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산입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등의 합계액<sup>20)</sup>을 차감한 금액의 30%이고,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등의 합계액의 20%를 차감한 금액과 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중 작은 것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20) 기부금 등의 합계액이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다.

만약 필요경비 산입한도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sup>21)</sup>

〈표 II-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기부금 유형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 정치자금기부금,<br>고향사랑기부금,<br>특례기부금 |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sup>1)</sup> - 이월결손금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br>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 일반<br>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br>없음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의 합계액 <sup>2)</sup> ) × 30%   |
|                               | 종교단체기부금<br>있음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 합계액) × 10% +<br>Min[(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 등 합계액) × 20%,<br>종교단체 외에 지출한 일반기부금] |

주: 1)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임

2) 기부금 등의 합계액이란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계액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sup>22)</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즉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 제5항, [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http://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22) 2014년 이전에는 소득공제 방식이었는데, 2014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sup>23)</sup> 공제대상 기부금액에는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된다.<sup>24)</sup>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으로 공제되며,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된다. 필요경비 산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에도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가 존재한다. 정치자금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100%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이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과 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이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이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의 경우처럼 종교단체기부금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가 한도로 적용된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와 합산한 금액이 공제한도이다.

---

23) 이는 2014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24) 2017년 이전 부양가족 나이 요건이 있었으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었다.

〈표 II-2〉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 기부금 종류      |                |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   |
|-------------|----------------|---|
| ① 정치자금기부금   |                | 소득금액의 100%  |
| ② 고향사랑기부금   |                | Min[(소득금액-①)의 100%, 500만원]                                      |
| ③ 특례기부금     |                | (소득금액-①-②)의 100%  |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소득금액-①-②-③)의 30%   |
| ⑤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br>기부금 있음 | (소득금액-①-②-③-④)의 30%   |
|             | 종교단체<br>기부금 없음 | (소득금액-①-②-③-④)의 10% +<br>Min[(소득금액-①-②-③-④)의 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 주: 1.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며 이월결손금 차감한 금액  
 2.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함  
 3.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http://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소득세법#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58조,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4. 3. 6.  
 4. 국제형,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3, pp. 177~17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액공제율의 경우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00/110, 10만원 초과분으로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100/1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기부금 유형의 경우, 2024년 기준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원 초과분으로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40% 공제율은 2024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기부금 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이후 수차례 변화하였다. 2016년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구간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로 하향 조정되었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되었다. 2018년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고액기부 구간이 1천만원으로 한 번 더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2021~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5%p 인상되었다가 2023년 인상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고, 2024년에는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다.

〈표 II-3〉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구분                              |             | 귀속연도    |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정치자금<br>기부금                     | 10만원<br>이하  | 100/110 |      |      |      |      |      |      |      |      |         |
|                                 | 10만원<br>초과  | 15%     |      |      |      |      |      |      |      |      |         |
|                                 | 3천만원<br>초과  | 25%     |      |      |      |      |      |      |      |      |         |
| 고향사랑<br>기부금                     | 10만원<br>이하  | -       |      |      |      |      |      |      |      |      | 100/110 |
|                                 | 500만원<br>이하 | -       |      |      |      |      |      |      |      |      | 15%     |
| 특례·<br>우리사주<br>조합·<br>일반<br>기부금 | 1천만원<br>이하  | 15%     | 15%  | 15%  |      |      | 20%  |      | 15%  |      |         |
|                                 | 2천만원<br>이하  |         |      | 30%  |      |      | 35%  |      | 30%  |      |         |
|                                 | 3천만원<br>이하  | 25%     | 30%  | 30%  |      |      | 35%  |      | 30%  |      |         |
|                                 | 3천만원<br>초과  |         |      | 30%  |      |      | 35%  |      | 30%  |      |         |

주: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에 도입됨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Ⅲ.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

#### 1. 이론적 모형 및 논의

본 장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통해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는 기부의 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대부분의 기부가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기부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기부가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조세 정책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부가 비순수한 이타적 동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기부행위는 사회적 인정과 같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기부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부를 통해 보상이 더 증가하므로, 기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기부를 증가시킬 유인을 갖는다.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부행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의 기부가 비순수한 이타적 동기(impure altruism)에 의해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Andreoni(1989)의 비순수한 이타적 동기 모형을 CES 효용함수에 적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ES 효용함수는 식 (Ⅲ-1)과 같다.

$$U_i = (\alpha x_i^\rho + \beta Y^\rho + (1 - \alpha - \beta)g_i^\rho)^{\frac{1}{\rho}} \quad \text{식 (Ⅲ-1)}$$

여기서  $x_i$ 는 복합재화에 대한 개인 소비량,  $g_i$ 는 개인의 기부량,  $Y$ 는 공공재의 총 공급량,  $\alpha$ 와  $\beta$ 는 각각 소비와 공공재에 대한 가중치(단  $0 < \alpha + \beta < 1$ ),  $\rho$ 는 대체탄력성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식 (Ⅲ-1)의 효용함수는 기

부에 대한 선호( $1-\alpha-\beta$ )가 클수록 이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기부금액( $g$ )이 크고, 자신의 소비  $x_i$ 와 기부는 대체관계에 있으며, 소비에 대한 만족과 기부에서 오는 만족(warm-glow) 간의 상충 관계에 따라 소비와 기부의 최적 선택이 달라짐을 반영하고 있다.

이 효용함수에서는 자신의 기부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총량에 대해서도 효용이 증가한다. 공공재의 총량이 증가할 때 기부에 대한 효용이 줄어들면서 기부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순수한 이타적 동기라면 공공재의 총 공급량에 관심이 있으므로, 공공재 공급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100%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비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는 부분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거나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x_i$ 의 가격은 1이고,  $g_i$ 의 가격은  $\gamma=(1-c)$ 이다. 여기서  $c$ 는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의미한다. 기부 공제율이 클수록 기부가격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제약은 식 (Ⅲ-2)와 같다.

$$x_i + \gamma g_i + T_i = w_i \quad \text{식 (Ⅲ-2)}$$

여기서  $x_i$ 는 복합재화에 대한 개인 소비량,  $g_i$ 는 개인의 기부수준,  $\gamma$ 는 기부가격,  $T$ 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w$ 는 임금을 의미한다.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 기부금액은 주어진 파라미터( $1-\alpha-\beta, \rho$ )하에서 기부가격과 가처분소득( $I$ )의 함수로 나타난다.

$$g = (r, I) \quad \text{식 (Ⅲ-3)}$$

효용 극대화 기부수준( $g_i$ )은 기부가격  $\gamma$ 에 대한 반비례 관계로, 기부가격 증가는 기부금액 감소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기부가격  $\gamma$ 에 대한 기부수준  $g_i$ 의 변화는 대체탄력성  $\frac{1}{1-\rho}$ 의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소비와 기부 간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기부가격 변화는 기부금액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기부가격 변화가 기부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효용 극대화 기부지출액( $\gamma g$ )을 기부가격으로 미분하면 식 (Ⅲ-4)를 얻을 수 있다.

$$\frac{\partial G(= \gamma g_i)}{\partial \gamma} = g(1 + \epsilon) \quad \text{식 (III-4)}$$

식 (III-4)는 기부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인한 기부가격 하락이 기부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Andreoni and Payne(2013)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부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 감소보다 기부유인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가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기부 세제지원 방식이 다르다. 근로소득 기부자는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통해 세제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업소득 기부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통한 소득공제 형태로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 근로소득 기부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관계없이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되지만, 사업소득 기부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받는 (법정)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한다. 이는 사업소득 기부자가 고소득일수록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의 절대적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만약 근로소득 기부자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소득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면, 이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이 기부 증대에 더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소득공제는 기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제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부가격 탄력성이 높은 근로소득 기부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이다. 반대로 만약 기부가격 탄력성이 낮다면, 세제지원 방식에 관계없이 기부금액의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통한 큰 세금 절감 효과보다는 일정 비율의 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정적 관점에서도 기부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는 기부금액 증가에 따라 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부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 세수손실을 기부금액 증가로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의 세제혜택이 큰데, 기부금액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세수손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부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소득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사업소득자 중에도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소득공제)과 세액공제 방식 모두를 통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소득 규모가 클수록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제공하는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 관점에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자가 소득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두 제도 중 보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세제혜택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의 여지는 납세자의 의사결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유형의 기부자에게 동일한 기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제혜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중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세제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격 탄력성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부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면 소득공제로 통합하고, 기부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면 세액공제로 통합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 생각된다.

## 2. 문헌 고찰

우리나라는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공제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인 기부가격을 1로 가정한다면, 기부금 세제지원을 고려할 경우 기부가격은 1보다 작다.

만약 기부자가 비순수 이타주의, 즉 기부행위 자체에 직접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얻는다면, 기부금 세제지원은 기부가격을 감소시켜 기부를 유인한다 (Andreoni and Payne, 20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부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기부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부금 세제지원이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설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절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 관련 연구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부동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분석 대상, 자료 및 모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기부금 세제지원과 사업소득자의 기부행위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부동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기부를 이윤 극대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 준다. 이는 기부금 세제지원이 기부행위를 촉진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가. 국내 연구

초기 국내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박기백(2010)은 2008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토빗 모형을 통해 기부가격 탄력성을  $-0.564$ 로 추정하였으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다. 또한 횡단면 분석의 한계로 개인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생략변수(omitted variable)로 인한 편의 가능성이 있다. 송헌재(2013)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헤크만 2단계 모형(Hekman two-stage model)으로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하고 임의효과 토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부가격 탄력성은  $-7.5$ 에서  $-9.9$ 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송은주(2015) 역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의효과 토빗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기부가격 탄력성은  $-3.23$ 에서  $-4.24$ 로 높게 추정되었으나, 그 수준은 송헌재(2013)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

났다. 하지만 송은주(2015)가 추정한 고소득 집단의 기부가격 탄력성은 -11.5로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저소득 집단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지만 송헌재(2013)와 송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임의효과 토빗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의 고정효과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박정수·김준기(2014)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토빗 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결과, 기부가격 탄력성은 -1.8로 추정되어 이전 연구들보다 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고정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생략변수 편의를 줄인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부금 세제지원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집단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하고,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이하 집단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집단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였다. 국내 다수의 연구는 이러한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의 변화를 활용하여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박명호·전병목(2016)은 2014년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 전환을 활용하여 이중차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중차분분석 결과는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저소득 계층에서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제도 변화로 세제혜택이 감소하였으나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박명호·전병목(2016)은 2011~2015년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는 재정패널이 아닌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이중차분 분석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효과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기존 연구와 달리 기부가격 탄력성이 -0.1~-0.6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추정한 기부가격 탄력성 결과에서

는 중하위 소득 계층에서 기부가격 탄력성이  $-2.40 \sim -2.47$ 로 높게 나타났고, 고소득 계층의 기부가격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Hong and Kang(2024)은 박명호·전병목(2016)의 분석 기간을 6년 더 확대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한 이중차분분석으로 2014년 세제지원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박명호·전병목(2016)의 결과와 달리 저소득층의 기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고소득층의 기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 전환이 저소득자의 기부유인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자의 기부유인을 감소시켰으나, 고소득자가 이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 여부(extensive margin)보다는 기부금액(intensive margin)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Hong and Kang(2024)은 실제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저소득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매년 연속적인 행동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홍우형(2020)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고,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통제하는 것에 적합한 동적 패널 모형을 적용하였다. 홍우형(2020)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부가격 탄력성은  $-1.2$ 로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도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했는데, 중·고소득 집단의 경우  $-1.5$ , 저소득 집단의 경우  $-0.99$ 로 추정되었다. 다만 저소득 집단의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 전환이 고소득층의 기부행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저소득층의 기부행위를 증가시키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 나. 해외 연구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해외 연구들에서는 횡단면이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Taussig(1967)과 Schwartz(1970)는 기부금 세제혜택이 기부행위에 미

치는 영향이 주로 고소득층에서만 관찰되고 전체 기부행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Taussig(1967)은 기부금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영향을 주므로, 기부금 규모가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세제혜택을 주는 기부금 하한제를 제안하면서, 이는 세수손실을 막고 기부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초기 연구들과 다른 분석 방법을 이용하거나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 문제를 완화하여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Clotfelter(1980)는 개인의 기부행태 변화가 조세정책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적 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단기 기부가격 탄력성은  $-0.333$ 으로 비탄력적, 장기 기부가격 탄력성은  $-1.549$ 로 탄력적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세제혜택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Barrett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세제 인센티브 변화에 기부행위가 즉각적으로 반응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기부습관, 기부 시점 조정, 소비평탄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부가격 탄력성은  $-1.398$ 로 크게 나타나지만, 이를 고려할 경우 기부가격 탄력성은  $-0.417$ 로 작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는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 시 세제 변화에 따른 기부 시점의 재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Randolph(1995)는 현재 및 미래 기대 기부가격의 변화에 따른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은 영구적 기부가격 탄력성과 일시적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영구적 기부가격 탄력성은 장기적인 세제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부 효과를 의미하고, 일시적 기부가격 탄력성은 현재의 세제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부 효과를 의미한다. Randolph(1995)는 영구적 기부가격 탄력성이  $-0.51$ 로 비탄력적, 일시적 가격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1.55$ 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Auten et al.(2002)은 가격의 동적 과정을 모델링하여 Randolph(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 문제를 완화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기부가격의 변화를

고려한 탄력성은  $-0.79$ 에서  $-1.26$ 으로, 일시적 기부가격 탄력성( $-0.40 \sim -0.61$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기부가격 변화보다 지속적인 기부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들은 고소득자와 고액기부자가 기부금 세제혜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Backus and Grant(2019)는 고소득자의 기부가격 탄력성을  $-1$ 에서  $-2$  사이로 추정하였다. Adena(2021)는 독일 자료를 활용하여 영구적 기부가격 탄력성이 일시적 기부가격 탄력성보다 더 높음을 보였고,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집단의 영구적 기부가격 탄력성은 각각  $-0.17 \sim -0.26$ ,  $-0.96 \sim -1.56$ ,  $-1.07 \sim -1.38$  범위로 추정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고소득기부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에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ack and Landais(2010)는 프랑스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2003년과 2005년에 발생한 기부금 세제지원 혜택 증가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히 소득수준이 아닌 기부금액 수준에 따라 기부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부가격 탄력성은  $-0.2$ 에서  $-0.6$ 으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기부금액이 클수록 세제혜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는데, 이는 고액기부자가 상대적으로 세제지원 규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기부 여부(extensive margin)가 결정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부를 결정한 사람이 기부할 금액(intensive margin)을 결정하게 된다. Hickey et al.(2019)은 전체 기부가격 탄력성은  $-1$ 로 추정되었지만, 기부 여부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과 기부금액이 0 이상인 경우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소득수준별로 각각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저소득가구의 경우 기부 여부를 결정할 때 기부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기부금액을 결정할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Hickey et al.(2019)은 기부자가 세제혜택의 가시성(salience)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기부가격 변동이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는 세제혜택이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기부자가 경제적 인센티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Tiehen(2001)은 가구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기부가격 탄력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Almunia et al.(2020)은 영국의 세제개편을 활용하여 기부 여부 및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부 여부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0.1$ 로 추정되었고,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0.2$ 로 추정되었다. 특히 Hickey et al.(2019)의 결과와 유사하게 고소득층일수록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났고, 저소득층일수록 기부 여부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미국 연구 결과와 달리 영국의 기부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부 동기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기업의 기부 동기 관련 연구들은 개인 사업자가 개인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기부금 세제지원에 반응하여 기부를 증가시킬 유인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기부 역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경쟁적인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Johnson, 1966). Hess et al.(2002)은 기부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긍정적 평판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Amato and Amato(2007)는 소기업과 대기업이 중기업과 비교하여 수입 대비 기부금액 비율이 더 높음을 밝혔는데, 소기업의 경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기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고객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Lähdesmäki and Takala(2012)는 소기업일수록 개인사업자와 고객,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 관계가 강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이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Thompson et al.(1993)은 기부행위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적 가치와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윤 극대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유사하게 Peterson et al.(2021)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어 종교적 원인에 대한 기부 비율이 높지만,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적 이익을 증가시키지 않는 종교적 원인에 대한 기부 비율이 낮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Jurik and Bodine(2014)은 중소기업은 이윤, 개인사업자 및 가족의 후생, 사회적 책임 중 하나 이상의 동기로 기부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더 중요한 기부동기로 여긴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 또는 개인의 편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부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 시사점 및 논의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기부가격 탄력성은 해외의 경우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어, 기부동기 측면에서 세제혜택보다 사회적 책임감이나 개인의 이타적 만족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해외의 기부가격 탄력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내 연구와 해외 연구의 공통점은 고소득자와 계속 기부자의 기부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이 높고,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부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일수록 기부에 대한 이타적 만족감과 함께 세제혜택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세제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장기 기부가격 탄력성이 단기 기부가격 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세제혜택의 보장이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ack and Landais(2010)는 고액기부자 일수록 상대적으로 기부가격 탄력성이 높음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기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부동기 관련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부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재정 여건과 기부를 통한 이윤 증가 가능성이 기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를 국내 사업소득자에 적용한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경비가 낮을수록, 소득탈루 수준이 낮을수록 기부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 IV. 기초자료 및 현황

---

###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5~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10% 표본에 대한 소득세 신고자료와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표본은 소득, 연령, 성별, 기부유형별 기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층화하고 각층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구축했다. 여기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료에서는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반복 횡단면 표본과 패널 표본 두 가지 형태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패널 표본의 경우 2015년 횡단면 표본을 2022년까지 추적하는 형태의 자료이다. 자료에는 <표 IV-1>과 <표 IV-2>에 제시된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기부금 상세내역은 기부금명세서 상 정보를 활용했다. 즉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소득세 신고자료와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통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며, 각 분석의 목적에 따라 본 장에서 소개한 기초자료로 분석 표본을 구축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각 분석의 표본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하겠다.

〈표 IV-1〉 종합소득세 자료 변수

| 구분          | 변수명   |                 |
|-------------|---|-----------------|
| 납세자<br>기본정보 | 식별번호  |                 |
|             | 귀속연도  |                 |
|             | 신고유형  |                 |
|             | 연령대   |                 |
|             | 성별  |                 |
|             | 지역  |                 |
|             | 부양가족 수  |                 |
|             | 업종  |                 |
| 납세자<br>과세정보 | 소득종류별<br>(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외 소득)                   | 수입금액            |
|             |   | 필요경비            |
|             |   | 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
|             | 배우자 인적공제 금액                                     |                 |
|             | 소득공제 합계   |                 |
|             |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합계   |                 |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
|             | 세액감면 합계   |                 |
| 결정세액        |   |                 |
|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구분코드별 <sup>1)</sup><br>(10, 20, 40, 41, 42) | 공제대상 기부금액       |
|             |   | 공제 제외 기부금액      |
|             |   |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액    |
|             |   |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 |
|             |   | 이월금액            |

주: 1) 기부금 구분코드 10: 특례기부금, 20: 정치자금기부금, 4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41: 일반기부금(종교단체), 42: 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자료: 저자 작성

〈표 IV-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 변수

| 구분          | 변수명   |                 |
|-------------|---|-----------------|
| 납세자<br>기본정보 | 식별번호  |                 |
|             | 귀속연도  |                 |
|             | 연령대   |                 |
|             | 성별  |                 |
|             | 지역  |                 |
|             | 부양가족 수  |                 |
|             | 업종  |                 |
| 납세자<br>과세정보 |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                 |
|             | 배우자 인적공제 금액                                     |                 |
|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 소득공제 합계(근로소득공제 제외)                              |                 |
|             |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합계   |                 |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
|             | 세액감면 합계   |                 |
|             | 결정세액  |                 |
|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 구분코드별 <sup>1)</sup><br>(10, 20, 40, 41, 42) | 공제대상 기부금액       |
|             |   | 공제 제외 기부금액      |
|             |   |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 |
|             |   | 이월금액            |

주: 1) 기부금 구분코드 10: 특례기부금, 20: 정치자금기부금, 4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41: 일반기부금(종교단체), 42: 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자료: 저자 작성

## 2. 납세자의 기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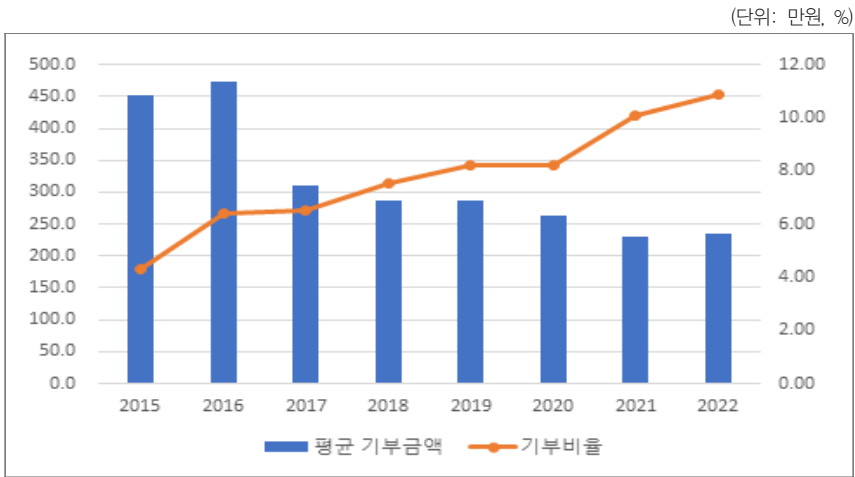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개괄적인 납세자의 기부현황을 살펴본다. 자료가 납세자 신고자료의 10% 표본이므로, 총량 분석은 하지 않고 납세자 중 기부한 비율(기부비율),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 등의 기초통계만 보고한다. 종합소득세 자료의 경우 귀속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액을 식별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자료의 경우 귀속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액을 식별할 수 없어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공제대상 기부금액에는 과거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액 중 일부가 당해 연도로 이월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과거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당해 연도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액이 연간 기부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두 변수를 이용한 연도별 현황이 납세자의 실제 기부현황과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현황

[그림 IV-1]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비율과 평균 기부금액을 보여 준다. 여기서 기부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를 한 인원의 비율을 의미하고, 평균 기부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를 한 사람, 즉 기부자들이 평균적으로 기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2015~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한 인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4.30%이던 기부비율은 2022년 10.89%로 7년 동안 두 배 넘게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은 450.8만원에서 235.4만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평균 기부금액의 하락은 계속 기부를 하던 기존 기부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하락하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부비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기부를 하지 않다 새롭게 기부를 한 신규 기부

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기존 기부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보다 작아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V-1]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비율 및 평균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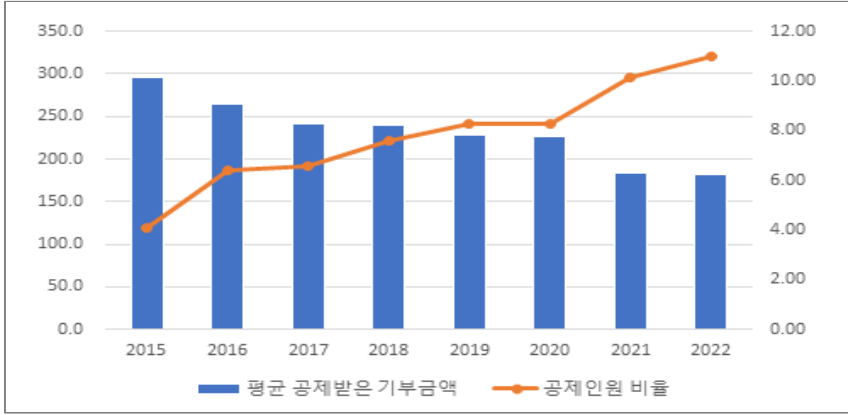


주: 1. 기부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기부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2. 평균 기부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를 한 사람들의 평균임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과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들이 공제 적용을 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을 보여준다. 기부금을 공제받은 인원의 비율은 2015년 4.10%에서 2022년 11.00%로 상승하여 기부비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기부금 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평균 공제받은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처럼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2015년 296.2만원에서 2022년 181.8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앞서 기부금액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제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이 감소한 것은 새롭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의 평균 공제기부금액이 계속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아 온 납세자의 경우보다 작은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V-2]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금 공제인원 비율 및  
평균 공제받은 기부금액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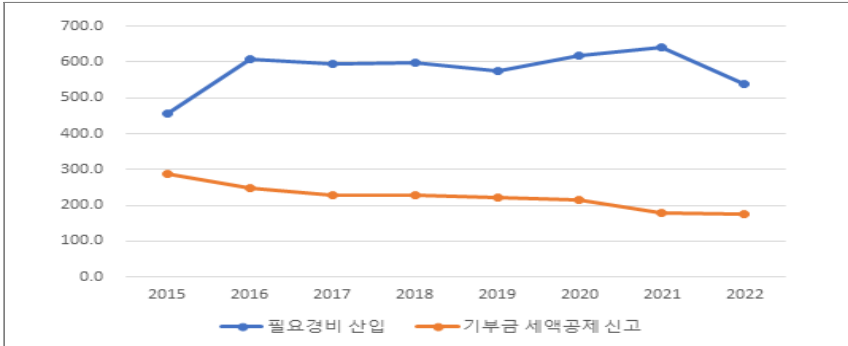
1. 공제인원 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금 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2. 평균 공제받은 기부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임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3]은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을 보여 준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사업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로 기부금을 공제받으며,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방식으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납세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400만원 후반에서 600만원 초반 수준,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납세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 후반 수준으로 나타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평균 기부금액이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평균 기부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평균 기부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공제방식별로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은 2015년 288.5만원에서 2022년 176.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은 2015년 457.4만원에서 2016년 609.4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1년까지 600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639.6만원으로 증가한 후 2022년 537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IV-3] 종합소득세 신고자 공제방식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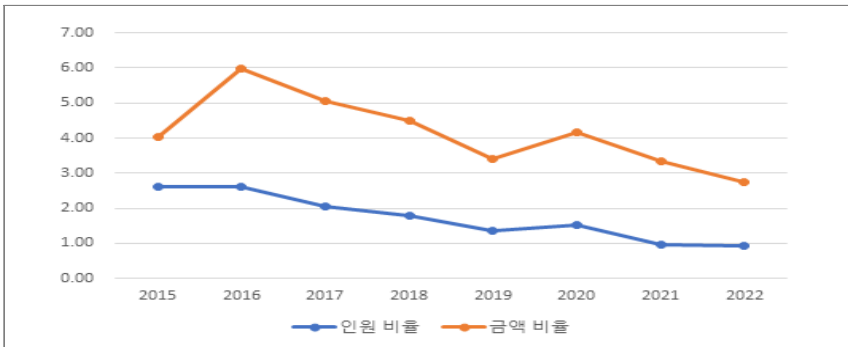
주: 필요경비 산입의 경우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산입한 자의 평균 기부금액이고,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한 자의 평균 기부금액임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4]는 기부금을 공제받은 인원 및 기부금액 중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은 인원 및 금액의 비율을 각각 보여 주는데, 인원 및 금액 비율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확인된다. 기부금 공제를 받은 인원 중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2015년 2.61%에서 2022년 0.93%로 하락하였다. 공제받은 기부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의 비율은 2015년 4.03%에서 2016년 6.00%로 상승했다가 2019년 3.40%로 하락하고, 2020년 4.17%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여 2022년 2.75%에 이르렀다.

[그림 IV-4]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분 중 필요경비 산입 비율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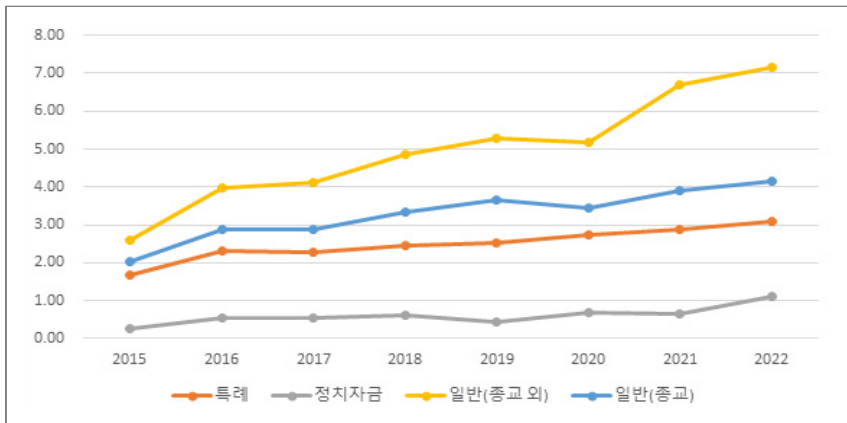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5]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부한 인원 비율을 기부유형별로 보여 준다. 2015~2022년 모든 기부유형의 기부비율은 상승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부유형은 종교 외 일반기부로 2015년 2.58%에서 2022년 7.16%로 상승하였다. 특례기부, 정치자금기부,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각각 1.40%p, 0.87%p, 2.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부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종교 외 일반기부로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종교 일반기부, 특례기부, 정치자금기부 순으로 기부비율이 높다. 2022년 기준 기부비율은 종교 외 일반기부 7.16%, 종교 일반기부 4.16%, 특례기부 3.09%, 정치자금기부 1.12%이다.

[그림 IV-5]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단위: %)



주: 기부비율은 신고인원 대비 기부인원의 비율임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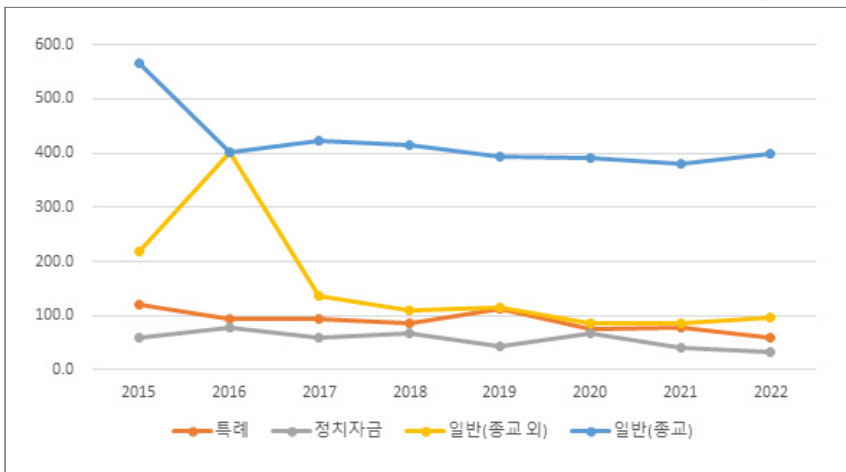
[그림 IV-6]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즉 각 기부유형으로 기부한 자들의 해당 유형에 대한 기부금액 평균을 보여 준다. 종교 일반기부를 제외하면, 각 기부유형의 평균 기부금액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례기부의 평균 기부금액은 90만~120만원 내외 수준에서 오르내리다 2022년 58.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면 평균 기부금액이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평균 기부금액은 2015년 218.5만원, 2017년 135.1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96.3만원이다. 정치자금기부금의 평균은 60만~80만원 내외 수준에서 오르내리다 2022년에 32.8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기부유형과 달리 종교 일반기부의 평균 기부금액은 2016년부터 400만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거의 매년 종교 일반기부의 평균 금액은 다른 유형의 평균에 비해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종교 일반기부의 평균 기부금액은 398.5만원으로, 특례기부 58.4만원, 정치자금기부 32.8만원, 종교 외 일반기부 96.3만원에 비해 상당히 크다. 특히 종교 일반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를 비교해 보면, 종교 외 일반기부는 종교 일반기부에 비해 기부비율은 높지만 평균 기부금액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종교 외 일반기부는 소액기부, 종교 일반기부는 고액기부의 비중이 큼을 시사한다.

[그림 IV-6]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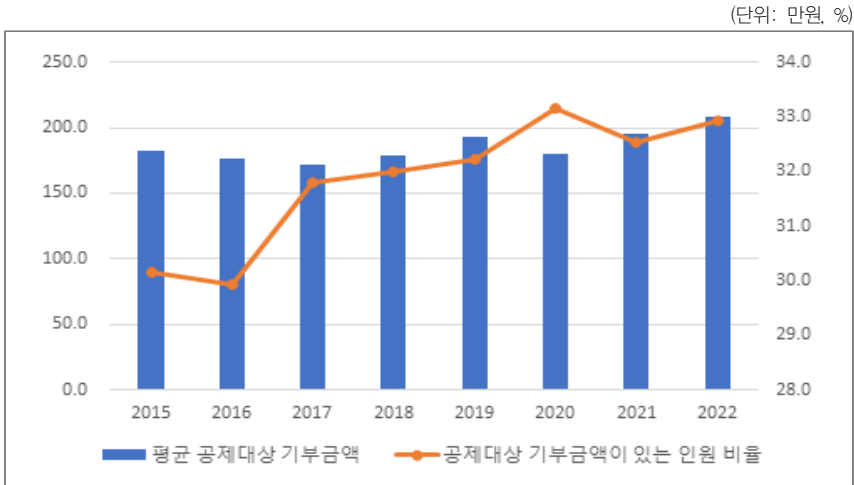


주: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은 각 유형의 기부를 한 사람들의 해당 유형 기부금액의 평균임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현황

[그림 IV-7]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의 비율과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사람들의 공제대상 기부금액 평균을 보여 준다.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은 2015~2022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은 2015~2016년 30% 내외 수준이었는데, 2017년 31.8%로 상승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2021년 급등락한 뒤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 가서 2022년 32.9%에 이르렀다.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181.9만원에서 2017년 172.3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고, 2022년 208.8만원을 기록했다.

[그림 IV-7]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 및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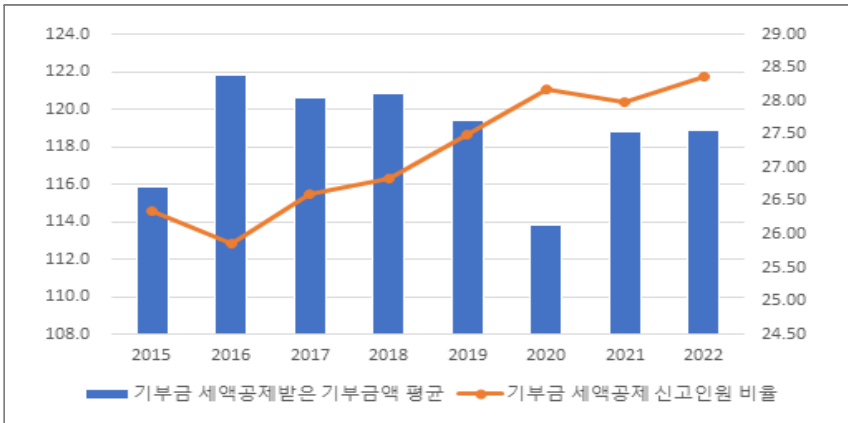
주: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사람들의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평균한 것임  
 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8]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 비율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한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을 보여 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은 2015년 26.35%에

서 2016년 25.86%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상승 전환하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은 28.37%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한 납세자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은 평균 기부금액은 2016년 121.9만원에서 2022년 118.9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IV-8]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및 평균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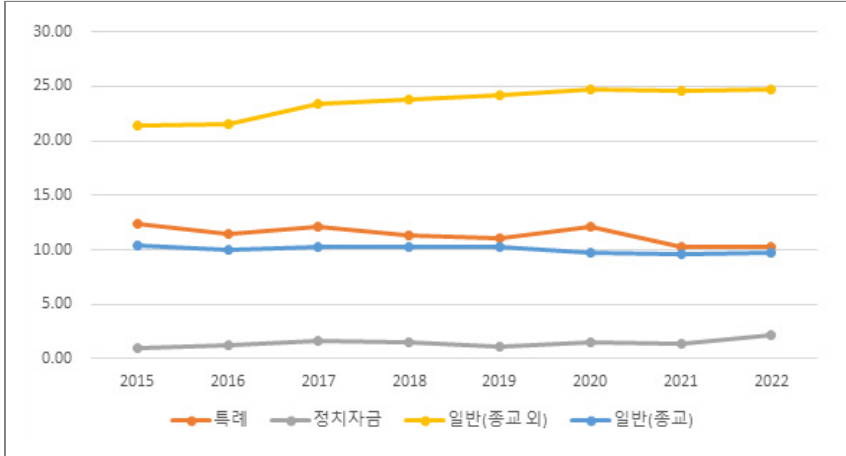
주: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 평균은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액을 평균한 값임

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9]는 기부유형별로 각 연도의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을 보여 준다. 매년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은 종교 외 일반기부, 특례기부, 종교 일반기부, 정치자금기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외 일반기부는 2015년 21.4%에서 2019년 24.19%로 상승한 후 24%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례기부는 2015~2020년 11~12% 내외 수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1년부터 10%대 수준으로 하락한 뒤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 일반기부는 가장 변화가 미미한 유형으로 2015~2019년 10%대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9%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자금기부는 1~2% 내외 수준을 오르내리는 흐름을 보인다.

[그림 IV-9]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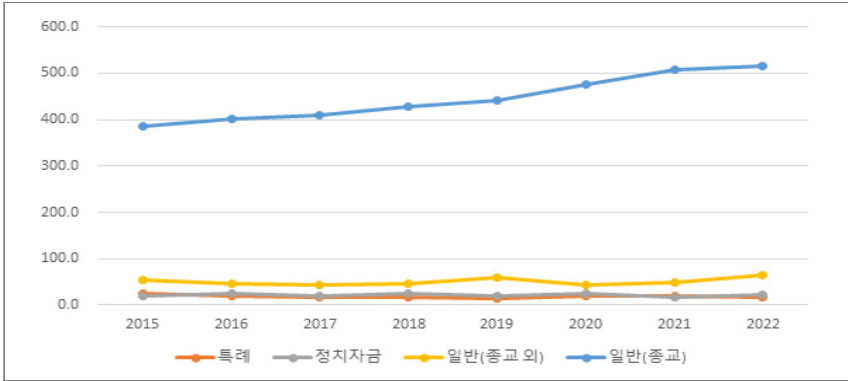


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0]은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자들의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기부유형별로 보여 준다.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매년 종교 일반기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종교 외 일반기부, 정치자금기부, 특례기부 순으로 규모가 크다. 종교 일반기부의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2015년 384.7만원에서 2022년 515.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종교 외 일반기부의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45만~65만원 내의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추이를 보이고, 정치자금기부는 18만~24만원 내외, 특례기부는 15만~18만원 내외 수준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도 종교 일반기부와 다른 기부유형 간 평균 기부금액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종교 외 일반기부와 비교하면,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인원비율은 종교 외 일반기부가 종교 일반기부보다 두 배 이상 크지만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종교 일반기부가 종교 외 일반기부보다 일곱 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결국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고액기부 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기부유형은 소액기부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V-10]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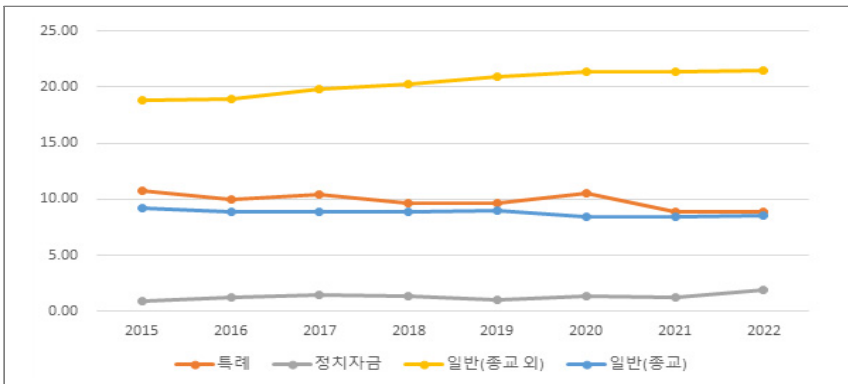
주: 기부유형별 평균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각 기부유형 공제대상 기부금액이 있는 자들의 해당 기부유형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평균한 것임

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1]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 비율을 기부유형별로 보여 주고, [그림 IV-12]는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액의 평균을 기부유형별로 보여 준다. 전반적인 양상은 앞서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IV-1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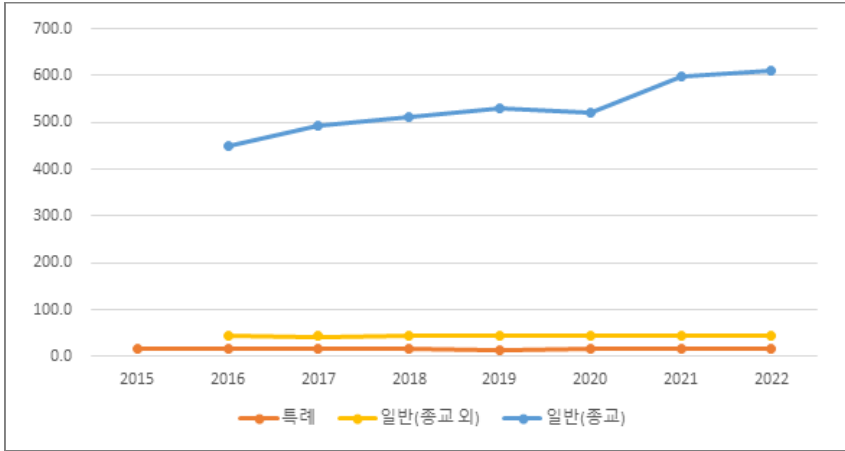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기부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기부금액의 평균

(단위: %)



주: 기부유형별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평균 기부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경우만 고려하여 평균한 것임  
 자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 V.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 효과 분석

---

본 장은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가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표 V-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에는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으며, 본 연구는 2018년과 2021년의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2018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6~2020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부금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1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2018~2022년을 분석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기부금액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5%p 상향 조정되었다.

본 장의 분석은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그룹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이고, 두 번째 그룹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이다. 기부참여 여부,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의 변화가 기부금 규모, 기부유형,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도 분석한다. 이때 기부유형은 특례기부, 종교 외 일반기부, 종교 일반기부로 나누어 살펴본다.<sup>25)</sup> 본 장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도 추정한다. 기부가격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계적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25)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와 우리사주조합기부도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 제도상 변화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했고, 우리사주조합기부는 일반적인 기부와 성격이 상이하고 관측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전체 기부 참여 여부나 기부금액 분석에서는 우리사주조합기부를 포함해서 수행하였다. 우리사주조합기부의 경우 특례기부, 종교 외 일반기부, 종교 일반기부와 동일한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V-1〉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변화

(단위: %)

| 기부금액            | 귀속연도 |      |      |      |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천만원 이하         | 15   |      | 15   |      | 15   |      |      | 20   |      |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      | 30   |      | 30   |      |      | 35   |      |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5   |      |      |      |      |      |      |      |      |  |
| 3천만원 초과         |      |      |      |      |      |      |      |      |      |  |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 분석 방법

본 장의 분석은 소득세 신고 패널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던 납세자로 구성된 균형(balanced) 패널을 기반으로 수행했다. 소득세 신고자료의 특성상 소득 신고가 없는 연도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기간 중 고소득구간의 소득세율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소득신고를 했지만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 즉 연말정산 신고자의 총급여액이 0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수입금액이 0인 경우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가 기부참여 여부, 기부금액 등의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과 2021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를 외생적 변이로 간주하고 이를 활용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이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는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처치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식별한다. 본 장에서는 다음의 패널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C_{it} = \beta T_{it} \times P_{it} + \delta T_{it} + \gamma X_{it} + m_i + \pi_t + \varepsilon_{it} \tag{V-1}$$

여기서  $i$ 는 개별 납세자,  $t$ 는 연도,  $C_{it}$ 는 기부참여 여부 또는 (기부금액+1)

의 로그값 등의 종속변수,  $T$ 는 처치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P$ 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X$ 는 통제변수로 가처분소득의 로그값, 연령, 부양가족 수 등 주요 통제변수를 포함하며,  $m$ 은 개인고정효과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특성을 통제한다.  $\pi$ 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연도별 더미변수이다.  $\varepsilon$ 은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V-1)의 회귀식에서  $\beta$ 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이를 세액공제율 인상 전후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가 기부참여 여부이면  $\beta$ 는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기부비율이 몇 %p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며, 종속변수가 로그 기부금액이면  $\beta$ 는 세액공제율 인상에 의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몇 % 증가했는지 나타낸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소득원천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점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각종 공제 적용 후 소득세액이 0인지 여부에 따라 기부유인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소득 여부,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은 다르다. ①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② 사업소득과 함께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방식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대부분 연말정산 신고자)에는 세액공제를 통해서만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실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세액이 있어야 한다. 즉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도 소득세액이 0보다 커야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 외 공제 적용으로 소득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부유인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를 ④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와 ⑤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

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원천에 따른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의 차이와 소득세액 유무에 따른 기부유인의 유무를 이용하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⑤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처치집단 ④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② 사업소득과 함께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 또는 ⑤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을 초과하는 납세자이면 처치집단 ①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또는 ④ 기부금 세액공제 외 다른 공제 적용 후 계산된 소득세액이 0 이하인 납세자이면 통제집단으로 구분한다.

종속변수 중 하나인 기부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를 활용하여 각 연도에 실제로 기부한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계산하여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기부금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부유형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연도의 실제 기부금액은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이 당해 연도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당해 연도의 공제대상 기부금액에서 전년도 이월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다른 종속변수인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금액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때 기부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부유형별로 분석할 때 기부유형별 기부참여 여부는 기부유형별 기부금액이 0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이용되는 가처분소득은 기부금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소득을 계산하여 구축하였다. 즉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뒤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합산한 값,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뒤 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금액(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받은 공제금액 포함)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값을 가처분소득으로 이용하였다. 근로소득공제액을 합산한 것은 연말정산 신고자

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지만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부양가족 수 등 개인 및 가구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연령은 자료의 한계로 10세 단위 연령대 변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령대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으로 구분된다. 부양가족 수는 납세자 본인은 제외한 부양가족 수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였다. 부양가족 수는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으로 구분된다.

이중차분법 분석의 중요한 가정은 평행추세가정(parallel trend assumption)이다. 이 가정은 일반적으로 제도 변화 이전 기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종속변수 추세의 유사성을 점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자료의 한계와 짧은 제도 변화 주기로 인해 제도 변화 이전 2~3개년의 추세만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평행추세가정을 판단하는 데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26)</sup>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다른 특성으로 인한 편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2. 기초통계 분석

〈표 V-2〉와 〈표 V-3〉은 각각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표본에는 84만 4,509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연말정산 신고자는 64만 7,349명, 종합소득 신고자는 19만 7,160명이다. 연말정산 신고자 중 통제집단은 5만 7,322명, 처치집단은 59만 27명에 대한 관측치를 포함하며,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통제집단은 16만 324명, 처치집단은 3만 6,8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표본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만을 포함하며, 같은 그룹유형(통제그룹 또는 처치그룹)을 유지한 납세자

26) 평행추세가정은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벤트 스터디 결과 그림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율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로 표본을 제한함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몇몇 납세자가 샘플에서 제외되었다.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부행태상 차이가 발견된다. 통제집단은 처치집단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여성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소득은 더 낮은 것으로 관찰되며, 특히 60대 이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제집단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평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과 고령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제집단의 기부참여 비율은 처치집단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처치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비중은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모두 크게 나타난다. 통제집단의 경우 기부자 중 약 85%가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이고, 처치집단의 경우 약 70%가 이에 해당한다. 전체 납세자 중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를 하는 비율의 경우 통제집단은 0.1%로 매우 작고, 처치집단도 1%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부금액의 경우 통제집단이 처치집단의 약 1/9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다. 기부금액이 0보다 큰 기부자로 한정하여 기부금액을 비교하면 통제집단의 평균 기부금액은 처치집단의 약 2/3 수준이다. 기부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기부금액 중 종교 일반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종교 외 일반기부금이 그 뒤를 잇는다.

〈표 V-2〉 기초통계량 -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 분석 기간

| 구분         | (1)   |       | (2)   |       | (3)   |       |
|------------|-------|-------|-------|-------|-------|-------|
|            | 모든 그룹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균형 패널 표본〉 |       |       |       |       |       |       |
| 30대 미만     | 0.066 | 0.249 | 0.040 | 0.196 | 0.069 | 0.254 |
| 30대        | 0.265 | 0.441 | 0.173 | 0.378 | 0.274 | 0.446 |
| 40대        | 0.327 | 0.469 | 0.363 | 0.481 | 0.324 | 0.468 |
| 50대        | 0.254 | 0.435 | 0.247 | 0.431 | 0.255 | 0.436 |
| 60대        | 0.074 | 0.261 | 0.125 | 0.331 | 0.069 | 0.253 |

〈표 V-2〉의 계속

| 구분                    | (1)       |       | (2)     |       | (3)       |       |
|-----------------------|-----------|-------|---------|-------|-----------|-------|
|                       | 모든 그룹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70대 이상                | 0.014     | 0.119 | 0.053   | 0.224 | 0.011     | 0.102 |
| 여성                    | 0.313     | 0.464 | 0.535   | 0.499 | 0.291     | 0.454 |
| 부양가족 수                | 1.229     | 1.385 | 1.077   | 1.351 | 1.244     | 1.388 |
| 총소득                   | 5,974     | 3,739 | 1,861   | 1,084 | 6,373     | 3,664 |
| 처치집단                  | 0.911     | 0.284 | 0.000   | 0.000 | 1,000     | 0.000 |
| 기부참여 여부               | 0.537     | 0.499 | 0.131   | 0.337 | 0.576     | 0.494 |
| 기부참여 여부<br>(100만원 초과) | 0.159     | 0.366 | 0.020   | 0.139 | 0.173     | 0.378 |
| 기부참여 여부<br>(300만원 초과) | 0.071     | 0.257 | 0.008   | 0.090 | 0.077     | 0.267 |
| 기부참여 여부<br>(1천만원 초과)  | 0.009     | 0.096 | 0.001   | 0.023 | 0.010     | 0.100 |
| 총기부금액                 | 19        | 408   | 0.6     | 32    | 100       | 937   |
| N                     | 4,531,442 |       | 401,252 |       | 4,130,190 |       |

〈기부자 표본〉

|               |           |     |       |       |           |     |
|---------------|-----------|-----|-------|-------|-----------|-----|
| 총기부금액         | 167       | 645 | 111   | 1,181 | 167       | 641 |
| 특례기부금액        | 7         | 120 | 18    | 1,165 | 7         | 86  |
| 일반(종교 외) 기부금액 | 45        | 89  | 22    | 40    | 45        | 89  |
| 일반(종교) 기부금액   | 114       | 624 | 71    | 195   | 115       | 625 |
| N             | 1,523,625 |     | 7,871 |       | 1,515,754 |     |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기부자 표본은 총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만으로 구성됨  
 3. 소득 및 기부금액의 경우 만원 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도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부행태에서의 차이가 확인된다. 통제집단은 처치집단과 비교해 평균 연령은 낮지만, 여성의 비율이 더 높고 소득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통제집단에서는 50대 이하 납세자의 비율이 처치집단보다 높다. 이는 통제집단에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젊은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제집단에서 연

령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처치집단의 경우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거나 연금소득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처치집단의 평균소득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제집단의 기부 비율은 처치집단의 1/100 수준으로 처치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와 달리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모두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특히 통제집단에서는 기부자 중 절반이 300만원 초과 기부자이며, 처치집단에서는 100만원 초과 기부자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고액기부참여 비율의 경우 통제집단은 거의 0이고, 처치집단은 2.1% 수준이다. 기부금액의 경우, 통제집단의 평균은 6천원으로 처치집단의 111만원과 비교하면 약 1/166 수준이다. 기부자로 한정할 경우,<sup>27)</sup> 통제집단의 평균 기부금액은 처치집단보다 약 20%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전체 기부금액에서 종교 일반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집단 모두 다른 기부유형 대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종교 외 일반기부금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처치집단의 경우 종교 일반기부금의 비중이 6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표 V-3〉 기초통계량 - 종합소득 신고자: 전체 분석 기간

| 구분         | (1)   |       | (2)   |       | (3)   |       |
|------------|-------|-------|-------|-------|-------|-------|
|            | 모든 그룹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균형 패널 표본〉 |       |       |       |       |       |       |
| 30대 미만     | 0.009 | 0.096 | 0.010 | 0.097 | 0.008 | 0.088 |
| 30대        | 0.089 | 0.284 | 0.093 | 0.290 | 0.071 | 0.257 |
| 40대        | 0.257 | 0.437 | 0.261 | 0.439 | 0.238 | 0.426 |
| 50대        | 0.359 | 0.480 | 0.364 | 0.481 | 0.337 | 0.473 |
| 60대        | 0.206 | 0.405 | 0.193 | 0.395 | 0.263 | 0.440 |
| 70대 이상     | 0.080 | 0.271 | 0.079 | 0.270 | 0.082 | 0.275 |

27) 표본을 기부자로 제한할 경우 통제집단의 관측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통제집단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치집단과의 구조적(systematic) 차이가 집단 특성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V-3〉의 계속

| 구분                    | (1)       |       | (2)       |       | (3)     |       |
|-----------------------|-----------|-------|-----------|-------|---------|-------|
|                       | 모든 그룹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여성                    | 0.378     | 0.485 | 0.400     | 0.490 | 0.286   | 0.452 |
| 부양가족 수                | 0.970     | 1.189 | 0.951     | 1.178 | 1.049   | 1.232 |
| 총소득                   | 345       | 443   | 268       | 368   | 680     | 567   |
| 처치집단                  | 0.187     | 0.390 | 0.000     | 0.000 | 1.000   | 0.000 |
| 기부참여 여부               | 0.064     | 0.244 | 0.002     | 0.044 | 0.332   | 0.471 |
| 기부참여 여부<br>(100만원 초과) | 0.030     | 0.170 | 0.001     | 0.033 | 0.155   | 0.362 |
| 기부참여 여부<br>(300만원 초과) | 0.016     | 0.126 | 0.001     | 0.024 | 0.084   | 0.277 |
| 기부참여 여부<br>(1천만원 초과)  | 0.004     | 0.063 | 0.000     | 0.012 | 0.021   | 0.143 |
| 총기부금액                 | 19        | 408   | 0.6       | 32    | 100     | 937   |
| N                     | 1,380,118 |       | 1,122,268 |       | 257,850 |       |
| 〈기부자 표본〉              |           |       |           |       |         |       |
| 총기부금액                 | 411       | 951   | 500       | 623   | 410     | 952   |
| 특례기부금액                | 42        | 493   | 68        | 188   | 42      | 494   |
| 일반(종교 외) 기부금액         | 83        | 339   | 113       | 167   | 83      | 339   |
| 일반(종교) 기부금액           | 281       | 630   | 290       | 590   | 281     | 630   |
| N                     | 33,166    |       | 125       |       | 33,041  |       |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기부자 표본은 총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만으로 구성됨  
 3. 소득 및 기부금액의 경우 만원 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표 V-4〉는 2018년 제도 변화 전후 연말정산 신고자의 통제집단과 처치 집단의 기부행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두 집단 모두 제도 변화 후 기부참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는 주로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참여가 증가한 반면, 처치집단에서는 고액기부까지 고르게 증가하였다. 평균 기부금액은 세액공제를 변화 이후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각각 약 14%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부자로 한정하면 통제집단은 약 33%, 처치집단은 약 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집단은 모든 기부유형에서 기부금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일반기부금(종교 외 및 종교)이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처치집단의 경우 특례기부금이 70% 이상 감소했지만, 일반기부금(종교 외 및 종교)은 통제집단과 유사하게 약 두 배 증가하였다.

〈표 V-4〉 기초통계량 - 연말정산 신고자: 2016~2020년

| 구분                    | (1)       |       | (2)       |       | (3)       |       | (4)       |       |
|-----------------------|-----------|-------|-----------|-------|-----------|-------|-----------|-------|
|                       | 2016~2017 |       |           |       | 2018~2020 |       |           |       |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균형 패널 표본〉            |           |       |           |       |           |       |           |       |
| 기부참여 여부               | 0.105     | 0.307 | 0.570     | 0.495 | 0.123     | 0.328 | 0.598     | 0.490 |
| 기부참여 여부<br>(100만원 초과) | 0.017     | 0.130 | 0.172     | 0.378 | 0.017     | 0.131 | 0.184     | 0.387 |
| 기부참여 여부<br>(300만원 초과) | 0.007     | 0.082 | 0.078     | 0.268 | 0.007     | 0.085 | 0.081     | 0.274 |
| 기부참여 여부<br>(1천만원 초과)  | 0.000     | 0.021 | 0.010     | 0.097 | 0.000     | 0.021 | 0.011     | 0.103 |
| 총기부금액                 | 7         | 68    | 82        | 741   | 8         | 244   | 87        | 54    |
| N                     | 137,530   |       | 1,129,354 |       | 206,295   |       | 1,694,031 |       |
| 〈기부자 표본〉              |           |       |           |       |           |       |           |       |
| 총기부금액                 | 86        | 271   | 157       | 306   | 114       | 1,478 | 168       | 780   |
| 특례기부금액                | 6         | 196   | 7         | 73    | 25        | 1,468 | 7         | 90    |
| 일반(종교 외) 기부금액         | 18        | 34    | 39        | 102   | 21        | 36    | 45        | 91    |
| 일반(종교) 기부금액           | 61        | 182   | 110       | 268   | 67        | 180   | 115       | 767   |
| N                     | 3,270     |       | 488,458   |       | 4,905     |       | 732,687   |       |

- 주: 1.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집단유형을 유지한 납세자만을 표본에 포함하였으며, 통제집단에서 처치집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움직인 납세자들은 제외함  
 2.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3. 기부자 표본은 총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만으로 구성됨  
 4. 소득 및 기부금액의 경우 만원 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표 V-5〉는 2021년 제도 변화 전후 연말정산 신고자의 통제집단과 처치 집단의 기부행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두 집단 모두 제도 변화 후 기부참여 비율이 증가했으나, 2018년 제도 변화와 비교하여 증가폭

은 감소하였다. 2021년 제도 변화 전후 변화에서는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모두 소액기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부금액 구간에서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부금액도 두 집단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제집단은 15%, 처치집단은 8%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부자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기부금액의 증가폭이 2018년 제도 변화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특히 통제집단에서는 특례기부금액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 전체 기부금액의 증가를 제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일반기부금(종교 외 및 종교)은 약 10% 내외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V-5〉 기초통계량 - 연말정산 신고자: 2018~2022년

| 구분                    | (1)       |       | (2)       |       | (3)       |       | (4)       |       |  |
|-----------------------|-----------|-------|-----------|-------|-----------|-------|-----------|-------|--|
|                       | 2018~2020 |       |           |       | 2021~2022 |       |           |       |  |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 〈균형 패널 표본〉            |           |       |           |       |           |       |           |       |  |
| 기부참여 여부               | 0.116     | 0.321 | 0.574     | 0.495 | 0.125     | 0.330 | 0.576     | 0.494 |  |
| 기부참여 여부<br>(100만원 초과) | 0.017     | 0.129 | 0.170     | 0.376 | 0.019     | 0.136 | 0.175     | 0.380 |  |
| 기부참여 여부<br>(300만원 초과) | 0.007     | 0.081 | 0.075     | 0.263 | 0.008     | 0.090 | 0.079     | 0.270 |  |
| 기부참여 여부<br>(1천만원 초과)  | 0.000     | 0.021 | 0.009     | 0.097 | 0.001     | 0.026 | 0.012     | 0.108 |  |
| 총기부금액                 | 8         | 104   | 80        | 510   | 9         | 76    | 86        | 567   |  |
| N                     | 142,425   |       | 1,819,293 |       | 94,950    |       | 1,212,862 |       |  |
| 〈기부자 표본〉              |           |       |           |       |           |       |           |       |  |
| 총기부금액                 | 85        | 180   | 155       | 746   | 95        | 207   | 168       | 597   |  |
| 특례기부금액                | 2         | 19    | 6         | 80    | 2         | 15    | 6         | 114   |  |
| 일반(종교 외) 기부금액         | 21        | 45    | 42        | 77    | 24        | 43    | 46        | 126   |  |
| 일반(종교) 기부금액           | 62        | 171   | 106       | 735   | 69        | 204   | 115       | 560   |  |
| N                     | 4,263     |       | 789,603   |       | 2,842     |       | 526,402   |       |  |

- 주: 1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집단유형을 유지한 납세자만을 표본에 포함하였으며, 통제집단에서 처치집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움직인 납세자들은 제외함  
 2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3 기부자 표본은 총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만으로 구성됨  
 4 소득 및 기부금액의 경우 만원 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표 V-6〉은 2018년 제도 변화 전후 종합소득 신고자의 통제집단과 처치 집단 간 기부행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통제집단은 기부참여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처치집단은 기부참여가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300만원 초과 기부참여가 줄어들었고, 처치집단은 100만원 초과 기부참여 비율이 감소했으나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가 늘어나 전체적인 기부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부금액은 통제집단의 경우 15% 감소하고, 처치집단은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자로 한정하면 통제집단의 평균 기부금액은 증가하고 처치집단의 경우는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은 종교 일반기부금이 크게 증가하고 다른 유형의 기부금은 모두 감소하여, 종교 일반기부금의 증가폭이 전체 평균 기부금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처치집단은 종교 일반기부금만 소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부금은 모두 감소하였다.

〈표 V-6〉 기초통계량 - 종합소득 신고자: 2016~2020년

| 구분                    | (1)       |       | (2)    |       | (3)       |       | (4)     |       |
|-----------------------|-----------|-------|--------|-------|-----------|-------|---------|-------|
|                       | 2016~2017 |       |        |       | 2018~2020 |       |         |       |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균형 패널 표본〉            |           |       |        |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02     | 0.045 | 0.347  | 0.476 | 0.002     | 0.042 | 0.357   | 0.479 |
| 기부참여 여부<br>(100만원 초과) | 0.001     | 0.035 | 0.169  | 0.375 | 0.001     | 0.030 | 0.167   | 0.373 |
| 기부참여 여부<br>(300만원 초과) | 0.001     | 0.025 | 0.091  | 0.288 | 0.000     | 0.022 | 0.090   | 0.286 |
| 기부참여 여부<br>(1천만원 초과)  | 0.000     | 0.012 | 0.022  | 0.146 | 0.000     | 0.011 | 0.022   | 0.146 |
| 총기부금액                 | 0.7       | 26    | 109    | 800   | 0.6       | 31    | 112     | 1503  |
| N                     | 370,038   |       | 70,980 |       | 555,057   |       | 106,470 |       |
| 〈기부자 표본〉              |           |       |        |       |           |       |         |       |
| 총기부금액                 | 364       | 335   | 391    | 1,035 | 407       | 379   | 381     | 856   |
| 특례기부금액                | 60        | 180   | 46     | 593   | 67        | 188   | 38      | 356   |
| 일반(종교 외) 기부금액         | 127       | 196   | 80     | 465   | 95        | 139   | 82      | 501   |

〈표 V-6〉의 계속

| 구분          | (1)       |     | (2)    |     | (3)       |     | (4)    |     |
|-------------|-----------|-----|--------|-----|-----------|-----|--------|-----|
|             | 2016~2017 |     |        |     | 2018~2020 |     |        |     |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일반(종교) 기부금액 | 156       | 202 | 260    | 529 | 221       | 292 | 257    | 514 |
| N           | 52        |     | 12,620 |     | 78        |     | 18,930 |     |

- 주: 1.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집단유형을 유지한 납세자만을 표본에 포함하였으며, 통제집단에서 처치집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움직인 납세자들은 제외함  
 2.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3. 기부자 표본은 총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만으로 구성됨  
 4. 소득 및 기부금액의 경우 만원 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표 V-7〉은 2021년 제도 변화 전후 종합소득 신고자의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 기부행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통제집단은 2018년 제도 변화와 유사하게 기부참여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반면 처치집단은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의 경우 2021년 제도 변화로 대부분의 기부금액 구간에서 기부참여가 늘어났다. 평균 기부금액도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약 19%, 처치집단은 약 15% 증가하였다. 기부자로 한정하여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고 처치집단의 평균 기부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경우 특례기부금과 종교 일반기부금이 각각 47%, 32% 감소하면서 전체 기부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처치집단은 모든 기부유형에서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 제도 변화로 모든 기부금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5%p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V-7〉 기초통계량 - 종합소득 신고자: 2018~2022년

| 구분                    | (1)       |       | (2)     |       | (3)       |       | (4)    |       |
|-----------------------|-----------|-------|---------|-------|-----------|-------|--------|-------|
|                       | 2018~2020 |       |         |       | 2021~2022 |       |        |       |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통제집단      |       | 처치집단   |       |
|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mean   | sd    |
| 〈균형 패널 표본〉            |           |       |         |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02     | 0.042 | 0.328   | 0.469 | 0.002     | 0.044 | 0.347  | 0.476 |
| 기부참여 여부<br>(100만원 초과) | 0.001     | 0.031 | 0.153   | 0.360 | 0.001     | 0.032 | 0.155  | 0.362 |
| 기부참여 여부<br>(300만원 초과) | 0.001     | 0.023 | 0.083   | 0.276 | 0.001     | 0.025 | 0.085  | 0.278 |
| 기부참여 여부<br>(1천만원 초과)  | 0.000     | 0.012 | 0.021   | 0.142 | 0.000     | 0.013 | 0.023  | 0.149 |
| 총기부금액                 | 0.6       | 32    | 100     | 1,176 | 0.7       | 42    | 115    | 3,516 |
| N                     | 467,052   |       | 117,831 |       | 311,368   |       | 78,554 |       |
| 〈기부자 표본〉              |           |       |         |       |           |       |        |       |
| 총기부금액                 | 550       | 698   | 370     | 734   | 492       | 679   | 395    | 962   |
| 특례기부금액                | 60        | 178   | 32      | 308   | 28        | 71    | 35     | 430   |
| 일반(종교 외) 기부금액         | 79        | 130   | 74      | 268   | 107       | 196   | 79     | 310   |
| 일반(종교) 기부금액           | 378       | 667   | 259     | 536   | 313       | 653   | 277    | 732   |
| N                     | 90        |       | 20,415  |       | 60        |       | 13,610 |       |

- 주: 1. 해당 기간 동안 같은 집단유형을 유지한 납세자만을 표본에 포함하였으며, 통제집단에서 처치집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움직인 납세자들은 제외함  
 2.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3. 기부자 표본은 총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만으로 구성됨  
 4. 소득 및 기부금액의 경우 만원 단위임

자료: 저자 작성

### 3. 분석 결과

#### 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1) 기부참여

〈표 V-8〉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참여율(즉 납세자 수 대비 기부자 수의 비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 2018년과 2021년 두 제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기부참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2018년 제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기부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모든 기부금액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기부참여율은 약 0.67%p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1.3%의 기부참여율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고액기부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기부참여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부금 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 구간의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기부유인을 높여 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기부금 구간의 공제율만 변화하였을 뿐인데 모든 기부금 구간에서 효과가 나타난 점은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2018년 제도 변화의 온전한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참여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천만원 초과 기부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나 100만원 초과 기부참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소액기부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제도 변화로 1천만원 미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p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제도 변화는 1천만원 미만 기부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1년 제도 변화로 인해 전체 기부참여율은 약 1.65%p 감소하였고,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3.1%의 기부참여율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 참여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자의 비율은 전체 기부자 중 약 2%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변화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V-8〉 기부금액대별 기부참여율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기부금액별<br>기부참여 여부      | (1)                      | (2)                      | (3)                     | (4)                     |
|-----------------------|--------------------------|--------------------------|-------------------------|-------------------------|
|                       | 전체                       |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
| <b>A. 2018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0669***<br>(0.00098)  | 0.00918***<br>(0.00049)  | 0.00228***<br>(0.00034) | 0.00100***<br>(0.00012)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51943                  | 0.15567                  | 0.07007                 | 0.00860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3,167,210                | 3,167,210                | 3,167,210               | 3,167,210               |
| <b>B. 2021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1651***<br>(0.00112) | -0.00204***<br>(0.00055) | 0.00031<br>(0.00037)    | 0.00161***<br>(0.00014)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54080                  | 0.15913                  | 0.06984                 | 0.00885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3,269,530                | 3,269,530                | 3,269,530               | 3,269,530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1)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9〉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기부유형별로 보여 준다. 2018년 제도 변화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특례기부의 경우 기부참여율이 감소했지만,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종교 일반기부보다 약 열 배 이상 높은 기부참여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율 대비 약 4.1% 증가한 것이다. 결국 2018년 전반적인 기부참여의 증가는 종교 외 일반기부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기부유형에 관계없이 기부참여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례기부는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율 대비 10.6%, 종교 외 일반기부는 2.3%, 종교 일반기부는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기부유형별 기부참여율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b>A. 2018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0669***<br>(0,00098)  | -0,00542***<br>(0,00068) | 0,01640***<br>(0,00084)  | 0,00074<br>(0,00056)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519425                 | 0,210948                 | 0,399636                 | 0,173851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3,167,210                | 3,167,210                | 3,167,210                | 3,167,210                |
| <b>B. 2021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1651***<br>(0,00112) | -0,02162***<br>(0,00077) | -0,00987***<br>(0,00095) | -0,00795***<br>(0,00063)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540809                 | 0,204786                 | 0,426539                 | 0,172634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3,269,530                | 3,269,530                | 3,269,530                | 3,269,530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1)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10〉은 소득구간별로 제도 변화의 기부참여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sup>28)</sup> 제도 변화의 효과는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두 번의 제도 변화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제도 변화는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을 약 2.4%p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효과는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상쇄하고 전반적인 제도 변화 효과가 양(+)으로 나타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이 0.29%p 증가하는 데 그쳐,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에서 나타난 부정

28) 소득구간은 제도 변화 이전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기부참여의 감소는 결국 고소득자의 기부참여 감소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두 배 인상되어 1천만원 초과 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든 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그러나 소득구간별 분석 결과는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로 고소득층의 기부참여가 오히려 감소함을 보여 준다.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0〉 소득구간별 기부참여율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소득구간           | 2018년 제도 변화              | 2021년 제도 변화              |
|----------------|--------------------------|--------------------------|
| 5천만원 이하        | 0.02399***<br>(0.00108)  | 0.00286**<br>(0.00121)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00307***<br>(0.00105) | -0.02547***<br>(0.00118)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02160***<br>(0.00134) | -0.04243***<br>(0.00139) |
| 개인특성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N              | 3,167,210                | 3,269,530                |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2) 기부금액

〈표 V-11〉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약 15.5%( $= (e^{0.144} - 1) \times 100\%$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유형별로 살펴

보면 특례기부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약 3.4% 감소하였지만, 종교 외 일반기부는 약 28.1%, 종교 일반기부는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9)</sup>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오히려 약 16.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sup>30)</sup> 기부유형별로는 특례기부가 약 20.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종교 외 일반기부는 약 2.5%로 가장 작은 감소폭을 보였다.<sup>31)</sup>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는 약 9.9%의 감소폭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sup>32)</sup> 앞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추정치의 방향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부금액에 대한 효과가 기부참여에 대한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평균 기부금액 증가의 경우 새로운 기부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평균 기부금액 감소의 경우 기존 기부참여자가 기부를 하지 않게 되면서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V-11〉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2018년 제도 변화     | 0.144***<br>(0.012) | -0.035***<br>(0.007) | 0.248***<br>(0.010) | 0.014*<br>(0.008)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735,947             | 33,613               | 184,246             | 517,500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3,167,210           | 3,167,210            | 3,167,210           | 3,167,210         |

29) 기부유형별 효과는 특례기부의 경우  $(e^{-0.035} - 1) \times 100\% = -3.4\%$ ,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e^{0.248} - 1) \times 100\% = 28.1\%$ ,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e^{0.014} - 1) \times 100\% = 1.4\%$ 로 계산된다.

30)  $(e^{-0.184} - 1) \times 100\% = -16.8\%$

31) 특례기부에 대한 효과는  $(e^{-0.227} - 1) \times 100\% = -20.3\%$ , 종교 외 일반기부에 대한 효과는  $(e^{-0.025} - 1) \times 100\% = -2.5\%$ 로 계산된다.

32)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효과는  $(e^{-0.104} - 1) \times 100\% = -9.9\%$ 로 계산된다.

〈표 V-11〉의 계속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2021년 제도 변화     | -0.184***<br>(0,013) | -0.227***<br>(0,008) | -0.025***<br>(0,004) | -0.104<br>(0,009)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745,717              | 32,157               | 195,803              | 517,402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3,269,530            | 3,269,530            | 3,269,530            | 3,269,530         |

- 주: 1. 전체의 경우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2.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12〉는 표본을 지속기부자로 한정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여기서 지속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 이전 기간에 한 해 이상 기부에 참여하고 제도 변화 이후에도 한 해 이상 기부에 참여한 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표 V-12〉의 결과는 제도 변화 전후 기간 주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제도 변화로 인해 기부금액의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V-11〉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체로 지속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의 효과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에 대한 효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속기부자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약 7.0%( $= (e^{0.068} - 1) \times 100\%$ ) 증가하여, 약 15.5% 증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의 경우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2021년 제도 변화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지속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감소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전체의 평균 기부금액 감소폭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기부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평균적인 기부금액의 변화 정도는 기부 신규 참여인원 혹은 중단인원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을 시사한다. 다만 2018년 제도 변화에서는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한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와 달리 지속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증가하였고, 2021년 제도 변화에서는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지속기부자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유형에 따라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V-12〉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지속기부자)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2018년 제도 변화     | 0.068***<br>(0,015)  | 0.056***<br>(0,017)  | 0.077***<br>(0,013)  | 0.034<br>(0,024)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1,416,847            | 159,343              | 461,035              | 2,976,680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1,650,171            | 595,622              | 1,283,322            | 525,631           |
| 2021년 제도 변화     | -0.066***<br>(0,015) | -0.065***<br>(0,019) | -0.072***<br>(0,014) | -0.013<br>(0,024)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1,378,892            | 157,026              | 459,051              | 2,997,104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1,724,349            | 573,090              | 1,359,005            | 529,949           |

- 주: 1. 지속기부자는 제도 변화 전후 기간 각각 기부참여 연수가 1년 이상인 자로 정의함  
 2. 전체의 경우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3. 개인특성으로는 거주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4.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13〉은 소득구간별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2018년 제도 변화는 1억 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납세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자라 할 수 있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해당 소득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제도 변화 이전 대비 약 41.2%( $= (e^{0.345} - 1) \times 100\%$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 폭이 약 4.0%로 작았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경우 평균 기부금액이 약 1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3)</sup> 그런데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된 경우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액에 대한 결과를 보면 5천만원 이하 저소득구간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2018년 제도 변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2018년 제도 변화의 온전한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표 V-13〉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소득구간           | 2018년 제도 변화          | 2021년 제도 변화          |
|----------------|----------------------|----------------------|
| 5천만원 이하        | 0.345***<br>(0.013)  | 0.053***<br>(0.014)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039***<br>(0.013)  | -0.279***<br>(0.014)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222***<br>(0.017) | -0.557***<br>(0.017) |
| 개인특성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N              | 3,167,210            | 3,269,530            |

- 주: 1.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2.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증가하지만,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 신고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폭을 보면 5천만원 이하 소득구

3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039} - 1) \times 100\% = 4.0\%$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222} - 1) \times 100\% = -19.9\%$ 로 계산된다.

간은 약 5.4%(=  $(e^{0.053} - 1) \times 100\%$ ) 증가로 증가폭이 제한적이었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약 -24.3%(=  $(e^{-0.279} - 1) \times 100\%$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약 -42.7%(=  $(e^{-0.557} - 1) \times 100\%$ )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21년 제도 변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한 것은 중·고소득층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V-14〉는 표본을 지속기부자로 한정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를 보여 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지속기부자의 기부금액 변화 정도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제도 변화에 대한 결과에서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기부자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간 변화폭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4〉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지속기부자)

| 소득구간           | 2018년 제도 변화         | 2021년 제도 변화          |
|----------------|---------------------|----------------------|
| 5천만원 이하        | 0.107***<br>(0.015) | 0.005<br>(0.016)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062***<br>(0.015) | -0.067***<br>(0.016)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033**<br>(0.015)  | -0.144***<br>(0.016) |
| 개인특성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N              | 1,650,171           | 1,724,349            |

- 주: 1. 지속기부자는 제도 변화 전후 기간 각각 기부참여 연수가 1년 이상인 자로 정의함  
 2.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3.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4.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나. 종합소득세 신고자

### 1) 기부참여

〈표 V-15〉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 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 2018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 참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참여율은 1.0%p 증가했는데, 이는 제도 변화 이전과 비교해 약 16.9%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2018년 제도 변화가 기부금액이 100만원, 3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참여를 높인다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전반적 기부참여의 증가는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증가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만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액기부의 증가로 전반적인 기부참여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가 제대로 식별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전반적인 기부참여율을 약 2.0%p 증가시켜 기부참여율이 제도 변화 이전보다 약 29%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전반적 기부참여 증가는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1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초과 기부참여에 대한 효과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 참여율의 경우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도 변화 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상당히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결과와 비교하면,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음(-)의 효과가 나타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자 분석에서는 양(+)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연말정산 신고자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V-15〉 기부금액대별 기부참여율의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기부금액별<br>기부참여 여부      | (1)                     | (2)                   | (3)                   | (4)                     |
|-----------------------|-------------------------|-----------------------|-----------------------|-------------------------|
|                       | 전체                      |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                 |
| <b>A. 2018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0974***<br>(0.00163) | -0.00155<br>(0.00123) | -0.00146<br>(0.00097) | 0.00010<br>(0.00054)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05779                 | 0.05779               | 0.01532               | 0.00364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1,102,735               | 1,102,735             | 1,102,735             | 1,102,735               |
| <b>B. 2021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1978***<br>(0.00153) | 0.00189*<br>(0.00112) | 0.00121<br>(0.00088)  | 0.00206***<br>(0.00052)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06754                 | 0.06754               | 0.01721               | 0.00424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974,995                 | 974,995               | 974,995               | 974,995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1)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16〉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기부유형별로 보여 준다.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먼저 살펴보면, 2018년 제도 변화로 특례기부의 기부참여율은 0.5%p(제도 변화 전 대비 19.2%) 감소하고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1.4%p(제도 변화 전 대비 3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추정치는 그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2018년 제도 변화로 전반적 기부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종교 외 일반기부에 대한 참여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도 종교 외 일반기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종교 외 일반기부 참여율은 1.9%p 증가하여 제도 변화 전 대비 41.1% 상승하였다. 반면 특례기부는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

참여율이 감소하였는데, 그 규모는 0.6%p, 제도 변화 전 대비 23.9% 수준이다.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2021년 제도 변화로 기부참여율이 증가하였지만 증가 폭이 0.2%p(제도 변화 전 대비 7.7%)로 작았다.

〈표 V-16〉 기부유형별 기부참여율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b>A. 2018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0974***<br>(0.00163) | -0.00456***<br>(0.00133) | 0.01437***<br>(0.00148) | -0.00127<br>(0.00122)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057786                | 0.023758                 | 0.037882                | 0.027594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1,102,735               | 1,102,735                | 1,102,735               | 1,102,735              |
| <b>B. 2021년 제도 변화</b> |                         |                          |                         |                        |
| 기부참여 여부               | 0.01978***<br>(0.00152) | -0.00618**<br>(0.00118)  | 0.01863***<br>(0.00137) | 0.00238**<br>(0.00111)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참여       | 0.067537                | 0.025884                 | 0.045286                | 0.031080               |
| 개인특성 <sup>1)</sup>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974,995                 | 974,995                  | 974,995                 | 974,995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1)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17〉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제도 변화의 기부 참여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2018년 제도 변화는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을 2.5%p 증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을 1.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제도 변화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율 증가는 5천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기부참여가 증가한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만 인상한 경우로,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집단이다. 따라서 2018년 제도 변화의 온전한 효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든 소득구간의 기부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은 2.2%p,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은 2.7%p,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은 0.5%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서로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2021년 제도 변화로 5천만원 초과 소득구간의 기부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17〉 소득구간별 기부참여율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구간           | 2018년 제도 변화              | 2021년 제도 변화             |
|----------------|--------------------------|-------------------------|
| 5천만원 이하        | 0.02452***<br>(0.00212)  | 0.02193***<br>(0.00202)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00103<br>(0.00321)    | 0.02692***<br>(0.00306)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01093***<br>(0.00387) | 0.00546<br>(0.00342)    |
| 개인특성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N              | 1,102,735                | 974,995                 |

주: 1. 기부참여 여부는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기준으로 설정함  
 2.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2) 기부금액

〈표 V-18〉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두 번의 제도 변화 모두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2018년 제도 변화는 기부금액을 약 12.9% ( $= (e^{0.121} - 1) \times 100\%$ ), 2021년 제도 변화는 약 28.3% ( $= (e^{0.249} - 1) \times 100\%$ )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례기부의 경우 두 제도 변화 모두에서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에는 두 제도 변화 모두에서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에는 2018년 제도 변화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음(-)의 효과가 나타났고, 2021년 제도 변화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종교 외 일반기부의 평균 금액은 2018년 제도 변화로 약 20.4% ( $= (e^{0.186} - 1) \times 100\%$ ), 2021년 제도 변화로 약 26.6% ( $= (e^{0.236} - 1) \times 100\%$ ) 증가하여 효과의 크기는 종교 외 일반기부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기부유형의 경우 증감폭이 10% 미만 수준이다. 따라서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로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증가한 것은 종교 외 일반기부의 평균 금액이 증가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발견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가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 서로 동일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의 영향이 상당 부분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18〉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2018년 제도 변화     | 0.121***<br>(0,021) | -0,044***<br>(0,015) | 0.186***<br>(0,019) | -0,021<br>(0,017)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184,243             | 25,636               | 36,768              | 121,813           |

〈표 V-18〉의 계속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1,102,545           | 1,102,545            | 1,102,545           | 1,102,545          |
| 2021년 제도 변화     | 0,249***<br>(0,020) | -0,079***<br>(0,013) | 0,236***<br>(0,017) | 0,035**<br>(0,016)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206,063             | 19,058               | 43,685              | 143,293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974,805             | 974,805              | 974,805             | 974,805            |

주: 1. 전체의 경우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2.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19〉는 표본을 지속기부자로 한정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추정 결과, 기부금세액공제 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들은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전체 기부에 대해 추정한 결과를 보면, 추정치의 크기가 〈표 V-18〉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기부자의 반응 정도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보다 작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변화의 효과도 신규 기부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19〉 기부유형별 기부금액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지속기부자)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2018년 제도 변화 | -0,071<br>(0,057) | -0,068<br>(0,200) | 0,055<br>(0,075) | -0,047<br>(0,058) |

〈표 V-19〉의 계속

| 기부유형            | (1)               | (2)               | (3)               | (4)               |
|-----------------|-------------------|-------------------|-------------------|-------------------|
|                 | 전체                |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3,188,370         | 1,079,089         | 970,583           | 4,414,525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59,777            | 21,356            | 39,384            | 27,154            |
| 2021년 제도 변화     | -0.084<br>(0.062) | -0.079<br>(0.184) | -0.043<br>(0.095) | -0.072<br>(0.068) |
| 제도 변화 전 평균 기부금액 | 3,707,901         | 321,229           | 740,219           | 2,595,223         |
| 개인특성            | ○                 | ○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 ○                 |
| N               | 62,894            | 20,726            | 41,922            | 27,843            |

- 주: 1. 지속기부자는 제도 변화 전후 기간 각각 기부참여 연수가 1년 이상인 자료 정의함  
 2. 전체의 경우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3.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4.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20〉은 소득구간별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금액을 36.3% 증가시키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고소득 신고자의 기부금액은 14.6%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sup>34)</sup>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추정치의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31.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경우는 43.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의 경우는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다만 1억원 초과 3억원

34)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310} - 1) \times 100\% = 36.3\%$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158} - 1) \times 100\% = -14.6\%$ 로 계산된다.

35) 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270} - 1) \times 100\% = 31.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358} - 1) \times 100\% = 43.0\%$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효과는  $(e^{0.060} - 1) \times 100\% = 6.2\%$ 로 계산된다.

이하 소득구간에 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표 V-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부금액에 대한 효과는 <표 V-17>의 기부참여에 대한 효과와 일관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부참여의 변화가 기부금액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V-20〉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구간           | 2018년 제도 변화          | 2021년 제도 변화         |
|----------------|----------------------|---------------------|
| 5천만원 이하        | 0.310***<br>(0.027)  | 0.270***<br>(0.026)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008<br>(0.042)    | 0.358***<br>(0.040)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158***<br>(0.052) | 0.060<br>(0.046)    |
| 개인특성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N              | 1,102,545            | 974,805             |

- 주: 1.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임  
 2.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V-21〉은 표본을 지속기부자로 한정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효과를 소득구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V-19〉의 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 추정치의 크기는 작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018년과 2021년 제도 변화로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기부자의 경우 모든 소득구간에서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확인된다. 이는 결국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변화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속기부자의 기여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표 V-21〉 소득구간별 기부금액 변화 - 종합소득세 신고자(지속기부자)

| 소득구간           | 2018년 제도 변화       | 2021년 제도 변화        |
|----------------|-------------------|--------------------|
| 5천만원 이하        | -0.052<br>(0.059) | -0.057<br>(0.064)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063<br>(0.058) | -0.074<br>(0.063)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095<br>(0.059) | -0.114*<br>(0.064) |
| 개인특성           | ○                 | ○                  |
| 개인 및 시간 고정효과   | ○                 | ○                  |
| N              | 59,777            | 62,894             |

- 주: 1. 지속기부자는 제도 변화 전후 기간 각각 기부참여 연수가 1년 이상인 자로 정의함  
 2. 총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을 이용하여 추정함  
 3. 개인특성으로는 가처분소득(로그로 변환), 연령대, 그리고 부양가족 수를 포함함  
 4.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4. 소결

본 장에서는 2018년과 2021년에 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 변화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18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는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장의 분석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납세자의 행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액기부금 구간의 기부참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소액기부금 구간의 기부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기부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구간의 기부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기부금액에 대한 효과도 저소득구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소액기부 참여가 증가하고, 저소득구간의 기부참여와 평균 기부금액이 증가하여 제도 변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021년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제도 변화에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는 기부금 규모에 상관없이 공제율을 5%p 인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기부가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에 부합하여 2021년 제도 변화는 모든 기부금 또는 소득구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참여를 증가시켰고, 평균 기부금액도 증가했다.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전반적인 기부 증가는 소액 기부의 증가와 종교 외 일반기부 증가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민간의 공익활동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교 외 일반기부의 증가는 민간의 공익활동을 통한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도 변화 전후 기간 모두 기부참여 경험이 있는 지속기부자의 평균적인 기부금액이 제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기부금액 증가의 상당 부분이 기부참여 증가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2021년 제도 변화의 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대하는 효과와 달리 기부참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액기부 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고소득층의 기부참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참여 감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찾기 어렵지만, 다른 공제제도의 확대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유인이 사라지면서 기부참여가 감소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2021년 새롭게 도입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 사례가 있다. 즉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는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유인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제도 변화는 평균 기부금액도 감소시켰는데, 특히 고소득구간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에도 지속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변화폭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보다 작게 나타나, 평균 기부금액 감소의 상당 부분이 기부참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장의 분석에는 몇 가지 주요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통제집단과 처치집단 간의 고유한 특성 차이로 인해 기부행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통계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는 나이, 소득수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과세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두 집단의 이질성, 기부행태의 내생성 등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변화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통제집단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는 통제집단 표본이 선택적으로 설정되어 선택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이중차분법 분석에서의 기본 가정인 평행추세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ent Study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행추세를 검토해 보았지만, 제도 변화 이전 기간이 2~3년 정도로 충분히 길지 않아 평행추세를 확인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본 장의 분석은 이와 같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더 엄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둔다.

---

## Ⅵ.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분석

---

본 장에서는 소득세율이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를 분석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서만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산출된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적용하고 나면 소득세액이 최종 결정된다. 이러한 소득세액 결정과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규모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가 소득세율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Ⅵ-1〉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체계는 신규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높이면서, 2014년 5개 과세표준 구간에 6~38%의 세율을 적용하던 형태에서, 8개 과세표준 구간에 6~45%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히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에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변화가 있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변화하면 기부가격이 변화하고, 결국 기부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변화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살펴본다.

사업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율의 변화는 세율체계를 개편하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의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변화하면서 경

협할 수도 있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의 조정으로 소득세율이 변화하는 현상은 세율이 바뀌는 과세표준 구간의 경계점에서 나타난다. 즉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경계점 아랫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거나 경계점 윗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표준 경계점 윗 구간의 사업소득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조정할 유인이 있는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경계점 아랫 구간으로 조정하기 위한 유인도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사업소득자가 이러한 기부행태를 보이는 지도 살펴본다.

〈표 VI-1〉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 귀속연도           |                    | 2014~<br>2016 | 2017 | 2018~<br>2020 | 2021~<br>2022 | 2023~              |             |
|----------------|--------------------|---------------|------|---------------|---------------|--------------------|-------------|
| 과세<br>표준<br>구간 | ~1,200만원           | 6%            | 6%   | 6%            | 6%            | ~1,400만원           | 6%          |
|                | 1,200만~<br>4,600만원 | 15%           | 15%  | 15%           | 15%           | 1,400만~<br>5,000만원 | 15%         |
|                | 4,600만~<br>8,800만원 | 24%           | 24%  | 24%           | 24%           | 5,000만~<br>8,800만원 | 24%         |
|                | 8,800만원~<br>1.5억원  | 35%           | 35%  | 35%           | 35%           | 8,800만원~<br>1.5억원  | 35%         |
|                | 1.5억~<br>3억원       | 38%           | 38%  | 38%           | 38%           | 1.5억~<br>3억원       | 38%         |
|                | 3억~<br>5억원         |               |      | 40%           | 40%           | 3억~<br>5억원         | 40%         |
|                | 5억~<br>10억원        |               |      | 40%           | 42%           | 42%                | 5억~<br>10억원 |
|                | 10억원~              | 45%           | 45%  |               |               | 10억원~              | 45%         |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1. 소득세율 개편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 가. 이론적 논의

소득세 최고 법정한계세율은 2017년부터 총 세 번의 세제개편을 통해 상향 조정되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상승하였다. 2018년에는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1년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되었다.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기부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으므로, 그동안의 소득세율 인상은 사업소득자 중 고소득자의 기부유인을 증가시킨다. 이는 일반 소득공제처럼 소득세율이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유인의 증가가 실제 기부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부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면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므로, 대체효과로 인해 여가는 증가하고 이는 과세대상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여가가 정상재라는 가정하에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소득의 감소는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는 감소하고, 이는 과세대상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해 임금률이 하락한 경우,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이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충족한 고소득자인 경우, 추가적인 소득의 한계효용이 낮아 여가를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여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소득세의 최고 법정한계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율 인상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 기부 여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기부에 따른 공제혜택을 증가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두 상충하는 효과의 크기에 따라 기부금의 감소, 유지 또는 증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후소득은 감소하였으나 기부금은 유지하거나 증가한다면, 이는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에 대한 경제적 유인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의 하락이 기부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패널 표본자료로 불균형 패널 자료이다. 불균형 패널인 이유는 소득세 신고자료의 특성상 일부 관측대상의 경우 특정 연도의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6)</sup>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이다. 따라서 분석 표본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경비를 신고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분석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부금액의 차이를 소득세율 인상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중차분분석법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d_{it} = \alpha + \beta Treat_i \times Post_t + X_{it}\gamma + m_i + T_t + \varepsilon_{it} \quad \text{식 (VI-1)}$$

여기서  $i$ 는 개인,  $t$ 는 연도,  $\log d$ 는 (기부금액+1)의 로그변수,  $Treat$ 는 처치집단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Post$ 는 2017년 이후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36) 제V장의 분석의 경우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한 균형 패널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제VII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사업소득만 있는 고소득자이다 보니 균형 패널로 자료를 구성하게 되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균형 패널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의미한다.  $X$ 는 가치분소득의 로그변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 필요경비금액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T$ 는 연도별 더미변수,  $m$ 은 관측되지 않은 개인특성을 반영한 변수,  $\varepsilon$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VI-1)에서 본 연구의 관심모수는  $\beta$ 로,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처치효과가 있었다면  $\beta$ 는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017년 이후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와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로 구분한다. 세제개편이 아닌 소득의 급격한 변화로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은 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많을수록 기부가격 탄력성의 추정치는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는 전체적으로 기부금액 규모가 상당히 작고 기부금액의 추세가 처치집단과 상이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구간의 사업소득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는 2018년 이후 소득세율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처치집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율 인상 이전 기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 추세가 통제집단의 기부금액 추세와 상이하게 나타나, 평행추세 가정(parallel trends assumption)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사업소득자는 처치집단에서 제외하였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적은 표본 수로 인해 통계적 신뢰성이 낮고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통계 분석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결국 본 절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과세표준 수준이 높은 고소득 사업소

득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추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는 고소득 사업소득자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표 VI-2〉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구간        | 2014~2016 | 2017 | 2018~2020 | 2021~2022 |
|----------------|-----------|------|-----------|-----------|
| ~1,200만원       | 6%        | 6%   | 6%        | 6%        |
| 1,200만~4,600만원 | 15%       | 15%  | 15%       | 15%       |
| 4,600만~8,800만원 | 24%       | 24%  | 24%       | 24%       |
| 8,800만원~1.5억원  | 35%       | 35%  | 35%       | 35%       |
| 1.5억~3억원       | 38%       | 38%  | 38%       | 38%       |
| 3억~5억원         |           |      | 40%       | 40%       |
| 5억~10억원        |           | 40%  | 42%       | 42%       |
| 10억원~          |           |      |           | 45%       |

자료: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절에서는 권성오·권성준(2020)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액 탄력성도 추정한다. 권성오·권성준(2020)은 다음의 회귀방정식에 2SLS(two stage least squares) 추정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log y_{it} = \alpha + \beta \log(1 - \tau_{it}) + X_{it} \gamma + \varepsilon_{it} \quad \text{식 (VI-2)}$$

여기서  $i$ 는 개인,  $t$ 는 연도,  $y$ 는 신고소득,  $\tau$ 는 법정한계세율을 의미한다.  $X$ 는 성별, 나이, 시도별 더미변수, 업종별 더미변수 등의 설명변수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varepsilon$ 은 오차항이다.

일반적으로 2SLS 추정법은 내생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비편향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내생변수와 관련이 있으나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권성오·권성준(2020)은 2017년과 2018년 소득세 세제개편의 과세표준 구간 및 법정한계세율 변화에 따른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생변수 세후소득률( $=1 - \tau$ )에 대한

도구변수로 처치집단과 세제개편 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성오·권성준(2020)의 분석 방법을 기부금에 대한 기부 가격 탄력성 추정에 적용한다. 즉 신고소득 대신 기부금액에 대한 로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부가격( $=1-\tau$ )의 로그변수를 관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때 기부가격에 대한 도구변수는 2017년 이후 소득세율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 간의 교차항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 d_{it} = \alpha + \beta \log(1 - \tau_{it}) + X_{it}\gamma + T_t + m_i + \varepsilon_{it} \quad \text{식 (VI-3)}$$

여기서  $i$ 는 개인,  $t$ 는 연도,  $\log d$ 는 (기부금액+1)의 로그변수,  $\tau$ 는 법정한 계세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X$ 는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 필요경비금액의 로그변수를 포함하는 설명변수 벡터를 의미하고,  $T$ 는 연도별 더미변수,  $m$ 은 관측되지 않은 개인특성을 반영한 변수,  $\varepsilon$ 은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VI-3)에서  $\beta$ 가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기부가격 하락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경우,  $\beta$ 는 음(-)의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beta$ 의 절댓값은 1보다 크게 추정될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득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처분소득과 전년도 과세대상소득 변수를 고려한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기부여력은 커지므로 기부금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의 로그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세율 인상 직전 연도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데,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비용이나 투자지출 조정을 통해 과세대상소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 전후 소득을 조정하면서 기부금액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득조정에 따른 기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로그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을 필요경비라 한다. 필요경비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필요경비 규모가 클수록 기부금으로 공제혜택을 받으려는 유인은 감소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위해 기부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 금액을 로그로 변환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한편 소득의 과소신고, 비용의 과다계상 등 조세회피가 용이한 업종의 경우는 기부를 통하지 않고서도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여 기부에 대한 유인이 작을 수 있다. 반대로 조세회피가 쉽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기부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의 용이성에 따라 세율 변화에 대한 기부행태 반응은 서로 다르게, 즉 조세회피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태 반응이 나타나거나 그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본 연구는 분석 표본을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업종과 높은 업종으로 구분한 분석을 수행한다. 과소신고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의 과소신고, 비용의 과다계상 등 조세회피가 용이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본을 구분하였다.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업종은 안종석·김빛마로(2019)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안종석·김빛마로(2019)는 2010~2016년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신고자료와 통상적 세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세 과소신고 텍스갭(Tax Gap)을 헤크만(Heckman)의 표본선택모형(Sample Selection Model)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과소신고 텍스갭은 과소신고비율로 실제 부담했어야 할 세액(이론적 세부담) 대비 과소신고세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표 VI-3>은 안종석·김빛마로(2019)가 업종별로 사업소득세 과소신고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기준으로 과소신고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업종을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업종으로 분류한다.

〈표 VI-3〉 업종별 사업소득세 과소신고비율

(단위: %)

| 구분           | 업종                       | 과소신고비율 |
|--------------|--------------------------|--------|
| 과소신고비율<br>높음 | 도매 및 소매업                 | 46.74  |
|              | 건설업                      | 46.02  |
|              | 금융 및 보험업                 | 39.93  |
|              | 교육서비스업                   | 39.91  |
|              | 제조업                      | 33.32  |
|              | 숙박 및 음식점업                | 32.40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31.10  |
| 과소신고비율<br>낮음 | 농업, 임업 및 어업              | 27.46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6.15  |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5.99  |
|              | 운수업                      | 22.81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2.25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6.89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5.07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4.72   |

주: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은 저자가 과소신고비율 30%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안종석·김빛마로(2019), p. 79, 〈표 IV-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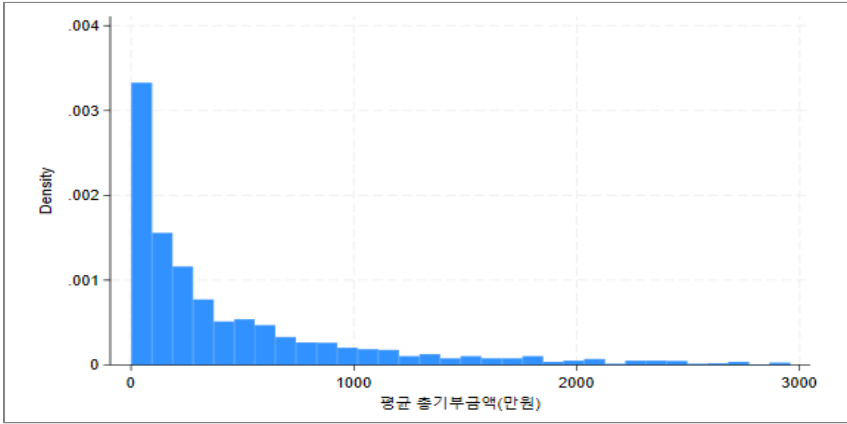
### 다. 기초통계 분석

사업소득자의 연평균 총기부금액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가진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부금액이 넓게 분포하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 기부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사업소득자가 평균적으로 소액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일부만 고액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부금액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본 절에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할 때 기부금액을 로그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사업소득자의 연평균 기부자 비율과 기부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기부자 비율은 2016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부금액이 0보다 큰 납세자의 기부금액 추이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기부자 비율은 2016년 약 0.4%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0.3% 이하로 하락한 이후로는

[그림 VI-1] 연평균 총기부금액 분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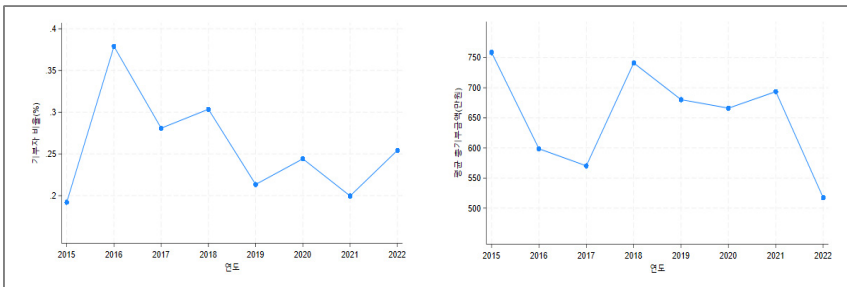
주: 기부금액 3천만원 이상 표본 비중은 3.7%임

자료: 저자 작성

다시 0.3%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부금액은 2015~2017년에 크게 감소했으나, 2018년에 다시 2015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22년의 기부금액은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여 5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림 VI-2] 연평균 기부자 비율과 기부금액 추이

(단위: %, 만원)



- 주: 1. 기부금액은 기부를 한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을 의미함
- 2. 연평균 기부 비중은 0.26%임
- 3. 연평균 기부금액은 674.4만원임

자료: 저자 작성

기부자 비율은 과세표준이 높은 집단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모든 구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부자 비율의 감소 추세는 특히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 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과세표준 5억~1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기부자 비율은 2018년까지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정점에 이른 후 하락 추세를 보인다.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부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 전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 기부금액은 과세표준이 높은 집단에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난다.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집단은 평균 기부금액이 매우 낮아 전체 기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1.5억~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2016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과세표준 5억~10억원 이하 구간은 2018년 평균 기부금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VI-3] 과세표준 구간별 연평균 기부자 비율과 기부금액 추이

(단위: %, 만원)



주: 기부금액은 기부를 한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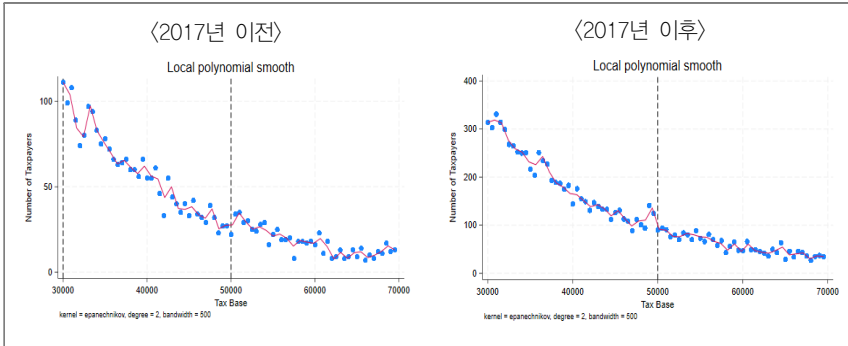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본 절의 분석은 과세표준 1.5억~3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를 통제집단, 과세표준 5억~10억원 이하 구간의 사업소득자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기부행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이 인상되었고, 2018년에는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 그러므로 소득세율이 인상된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납세자를 처치집단, 소득세율이 그대로 유지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의 납세자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VI-3]에서 확인하였듯이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구간이 전체 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또한 2017년 이전 과세표준 3억~5억원 이하 구간의 기부자 비율 및 평균 기부금액의 추세는 과세표준 1.5억~3억원 이하 구간과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과세표준 5억~10억원 이하 구간의 기부자 비율과 평균 기부금액의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율 인상 전후 납세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 5억원 경계점에서 납세자 수가 뚜렷하게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2017년 이전([그림 VI-4]의 왼쪽 그림)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과세표준 5억원 경계점 근방에서 집군 현상(bunching)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이후([그림 VI-4]의 오른쪽 그림)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 5억원 경계점에서 명확한 집군현상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 수가 감소하다 과세표준 5억원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에서 납세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과세표준 경계점을 넘어가면 다시 납세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납세자들이 높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제도 등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5억원 이하로 조정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 결과일 수 있으며, 기부를 통한 과세표준의 조정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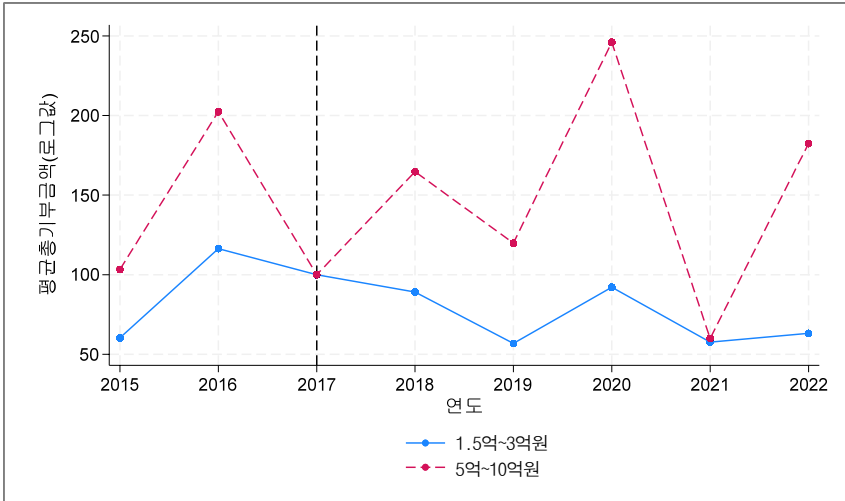
[그림 VI-4] 2017년 전후 과세표준별 납세자 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본 절의 분석에서는 기부금액의 로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주요 설명변수를 [처치집단에 대한 더미변수×2017년 이후 더미변수 또는 기부가격 (=1-소득세율)]을 사용한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기부금액(로그변수)의 평균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VI-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까지는 두 집단의 평균 총기부금액의 추세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2018~2019년 처치집단의 기부금액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처치집단의 기부금액이 감소하면서 두 집단 간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2017년과 2018년 소득세율 인상은 통제집단의 기부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처치집단의 기부가격을 하락시켰다. 소득세율 인상 정책이 반영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연도별 기부가격은 [그림 VI-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통제집단의 기부가격은 분석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나, 처치집단의 기부가격은 2017년과 2018년에 감소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해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기부가격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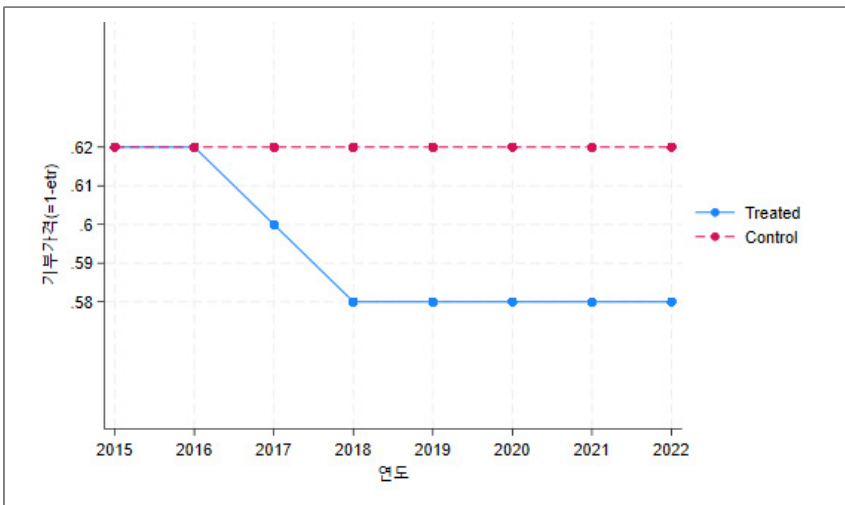
[그림 VI-5] 연도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총기부금액(로그값) 추이



주: 1. 기부금액은 기부를 한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을 의미하며, y축은 기부금액의 로그값을 나타냄  
 2. 2017년 값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값이 2017년과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6] 연도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부가격 추이



자료: 저자 작성

## 라. 회귀분석 결과<sup>37)</sup>

### 1) 이중차분분석 결과

〈표 VI-4〉는 이중차분모형에 기반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첫 번째 열은 전체 기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열은 각각 특례 및 정치기부, 종교 외 일반기부, 그리고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총기부액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의 하락으로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정치 및 특례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비교적 낮지만 종교 일반기부에서는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이 평균적으로 기부금액을 약 8.7%(=  $(e^{0.083} - 1) \times 100\%$ )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분소득의 증가는 기부금액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필요경비금액의 증가는 기부금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율 인상은 기부가격을 낮춤으로써 기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가치분소득을 감소시켜 기부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기부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율 인상의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요경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은 필요경비 규모가 클수록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기부할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대상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규모가 크다면 추가적인 기부로 인한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필요경비 비중이 높은 사업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부할 여력이 있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낮출 여지

37)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분포상 0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한 Tobit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본 보고서에 해당 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고정효과를 고려한 Tobit 모형의 추정 결과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저자에게 요청할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

가 있는 사업소득자일수록 기부를 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부유형별로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기부유형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기부금액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처분소득이 모든 유형의 기부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가처분소득의 기부증가 효과는 종교 일반기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종교 일반기부는 약 1.3% 증가하며, 이는 정치 및 특례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에 비해 각각 0.6%p와 0.5%p 더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규모의 증가는 기부유형 중 종교 일반기부에서만 기부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필요경비가 10% 증가할 경우, 종교 일반기부 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0.8%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필요경비 증가로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경우 추가적인 기부 유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특히 종교 일반기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기부유형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종교 일반기부의 비중이 더 높아서 필요경비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부금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up>38)</sup>

〈표 VI-4〉 이중차분모형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1)                 | (2)                | (3)                | (4)                 |
|------------------------------------|---------------------|--------------------|--------------------|---------------------|
| 기부유형                               | 전체                  | 정치 및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처치집단×2017년 이후<br>더미변수 <sub>t</sub> | -0.079<br>(0.116)   | -0.112<br>(0.102)  | -0.082<br>(0.086)  | 0.083*<br>(0.045)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1</sub>        | 0.138***<br>(0.047) | 0.069**<br>(0.028) | 0.076**<br>(0.034) | 0.129***<br>(0.041)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18<br>(0.036)   | -0.005<br>(0.024)  | -0.015<br>(0.025)  | 0.013<br>(0.029)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101**<br>(0.044) | -0.033<br>(0.027)  | -0.049<br>(0.033)  | -0.080**<br>(0.032) |
| 상수                                 | 0.115<br>(0.336)    | -0.073<br>(0.206)  | 0.053<br>(0.248)   | -0.189<br>(0.248)   |
| 연도별 더미                             | ○                   | ○                  | ○                  | ○                   |

38) 개인사업자의 기부유형별 기부참여 비율은 정치 및 특례기부의 경우 15.4%,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27.7%,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57.0%였다.

〈표 VI-4〉의 계속

| 구분        | (1)    | (2)     | (3)      | (4)    |
|-----------|--------|---------|----------|--------|
| 기부유형      | 전체     | 정치 및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R-Squared | 0.0037 | 0.0030  | 0.0036   | 0.0027 |
| 표본 수      | 14,088 | 14,088  | 14,088   | 14,088 |
| 개인사업자 수   | 4,623  | 4,623   | 4,623    | 4,623  |

주: 1. 종속변수는  $\log(\text{기부금액}+1)$ 임  
 2. \*\*\*  $p < 0.01$ , \*\*  $p < 0.05$ , \*  $p < 0.10$

자료: 저자 작성

〈표 VI-5〉와 〈표 VI-6〉은 각각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이층차분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높은 과소신고비율 집단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8.9%( $= (e^{0.085} - 1) \times 100\%$ )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설명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득 혹은 필요경비의 조정보다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의 활용이 세부담 경감 전략 측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기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종교 외 일반기부에서만 기부가격 하락으로 기부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7.5%( $= (e^{0.072} - 1) \times 100\%$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의 경우, 모든 기부유형에서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의 기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증가가 당해의 기부금액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의 효과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자가 기부 시점을 소득세율 인상 전으로 앞당겨, 소득세율 인상 후 기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즉 소득, 비용, 투자지출 등의 조정이 용이할 수 있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율이 인상되기 전에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세율 인상된 후에는 소득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소득세율 인상 전에는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기부금을 비용 처리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고, 이에 따

라 소득세율 인상 후 기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유인이 강화될 수 있으나,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을 조정하면서 미리 기부지출을 함으로써 세율 인상에 의한 기부 증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5〉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높은 집단)

| 구분                              | (1)                 | (2)               | (3)                  | (4)               |
|---------------------------------|---------------------|-------------------|----------------------|-------------------|
| 기부유형                            | 전체                  | 정치 및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처치집단×2017년 이후 더미변수 <sub>t</sub> | 0.085***<br>(0.039) | 0.033<br>(0.023)  | 0.072**<br>(0.033)   | 0.027<br>(0.021)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001<br>(0.047)   | 0.034<br>(0.031)  | -0.029<br>(0.030)    | -0.010<br>(0.035)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44<br>(0.039)   | 0.000<br>(0.026)  | -0.056***<br>(0.027) | -0.001<br>(0.026)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005<br>(0.041)    | -0.000<br>(0.025) | 0.004<br>(0.034)     | 0.007<br>(0.025)  |
| 상수                              | 0.238<br>(0.450)    | -0.148<br>(0.289) | 0.443<br>(0.346)     | 0.022<br>(0.299)  |
| 연도별 더미                          | ○                   | ○                 | ○                    | ○                 |
| R-Squared                       | 0.0035              | 0.0040            | 0.0032               | 0.0019            |
| 표본 수                            | 4,772               | 4,772             | 4,772                | 4,772             |
| 개인사업자 수                         | 1,777               | 1,777             | 1,777                | 1,777             |

주: 1. 종속변수는 log(기부금액+1)임  
 2. 0.000은 0보다 크고 0.001보다 작은 수임  
 3. \*\*\* p<0.01, \*\* p<0.05, \* p<0.10

자료: 저자 작성

낮은 과소신고비율 집단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및 특례 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이 기부금액을 평균적으로 약 9.0%(=  $(e^{0.086} - 1) \times 100\%$ )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가처분소득과 기부금액은 양(+)의 상관관계, 필요경비금액과 기부금액

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총기부금액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소득의 기부 증가 효과는 모든 기부유형에서 나타났으나, 필요경비의 기부 감소 효과는 종교 일반기부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기부가격과 기부금액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기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기부 의사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보다 주로 소득 및 필요경비 수준의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표 VI-6〉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낮은 집단)

| 구분                              | (1)                  | (2)                 | (3)                 | (4)                  |
|---------------------------------|----------------------|---------------------|---------------------|----------------------|
| 기부유형                            | 전체                   | 정치 및 특례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처치집단×2017년 이후 더미변수 <sub>t</sub> | -0.098<br>(0.125)    | -0.126<br>(0.110)   | -0.104<br>(0.093)   | 0.086*<br>(0.050)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245***<br>(0.078)  | 0.092***<br>(0.046) | 0.160***<br>(0.058) | 0.244***<br>(0.070)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06<br>(0.061)    | -0.011<br>(0.040)   | 0.009<br>(0.042)    | 0.014<br>(0.050)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180***<br>(0.077) | -0.055<br>(0.047)   | -0.087<br>(0.056)   | -0.147***<br>(0.056) |
| 상수                              | -0.069<br>(0.500)    | -0.044<br>(0.290)   | -0.300<br>(0.375)   | -0.423<br>(0.379)    |
| 연도별 더미                          | ○                    | ○                   | ○                   | ○                    |
| R-Squared                       | 0.0048               | 0.0034              | 0.0051              | 0.0047               |
| 표본 수                            | 9,316                | 9,316               | 9,316               | 9,316                |
| 개인사업자 수                         | 2,862                | 2,862               | 2,862               | 2,862                |

주: 1. 종속변수는  $\log(\text{기부금액}+1)$ 임  
 2. \*\*\*  $p < 0.01$ , \*\*  $p < 0.05$ , \*  $p < 0.10$

자료: 저자 작성

## 2)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 결과

〈표 VI-7〉은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의 1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2SLS를 통해 식 (VI-3)을 추정하여 기부

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를 구한다. 이때 기부가격에 대한 도구변수는 처치집단과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정책 시행 연도 더미변수) 간 교차항이다. 도구변수는 외생적이면서 내생변수인 기부가격과 강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표 VI-7>을 보면 도구변수가 외생성을 가지고 있고, 기부가격을 유의미하게 식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7> 2SLS 회귀분석 1단계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1)                               |
|--|-----------------------------------|
| 종속변수   | Log of 기부가격 <sub>t</sub>          |
| 처치집단×(2017년 이후 더미변수) <sub>t</sub>  | -0.059***<br>(0.0004)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0001<br>(0.0003)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02***<br>(0.0003)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0003<br>(0.0002)               |
| 연도별 더미   | ○                                 |
| Angrist-Pischke Multivariate F-test  | 26,048.9<br>(Prob > F=,000)       |
| Kleibergen-Paap rk LM statistics   | 121.5<br>(Chi-sq(1) P-val: 0,000) |
| Craigg Donald Wald F statistics<br>(Stock-Yogo weak ID test critical values:<br>10% maximal IV size) | 27,547.5<br>(16.38)               |
| Hansen J statistics  | 0,000                             |
| 표본 수   | 14,088                            |
| 개인사업자 수  | 4,623                             |

주: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 작성

<표 VI-8>은 전체 분석 표본에 대해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주며, 기본적으로 추정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이중차분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의 첫 번째 열은 기부가격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두 번째 열은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기부가격의 내생성을 고려한 결과를 보여 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치는 이론적 예측과 달리 양(+)의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모형의 추정치는 1.347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호는 양(+)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다른 설명변수의 계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앞선 이중차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소득이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성과 기부금을 제외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표 VI-8〉 2SLS 회귀분석 2단계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1)                 | (2)                 |
|------------------------------|---------------------|---------------------|
| Log of 기부가격 <sub>t</sub>     | 0.428<br>(1.693)    | 1.347<br>(1.965)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136***<br>(0.047) | 0.138***<br>(0.047)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21<br>(0.037)   | -0.016<br>(0.036)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102**<br>(0.044) | -0.101**<br>(0.044) |
| 상수                           | 0.346<br>(0.820)    | 0.745<br>(0.951)    |
| 연도별 더미                       | ○                   | ○                   |
| IV                           | X                   | ○                   |
| R-Squared                    | 0.004               | -                   |
| 표본 수                         | 14,088              | 14,088              |
| 개인사업자 수                      | 4,623               | 4,623               |

주: 1. 종속변수는 log(기부금액+1)임  
2. \*\*\* p<0.01, \*\* p<0.05, \* p<0.10

자료: 저자 작성

〈표 VI-9〉는 기부유형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특례 및 정치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부가격과 기부금액 간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가격 탄력성이 -1.410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부가격의 1% 감소가 종교 일반기부 금액의 약 1.4%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다른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가처분소득은 모든 기부 유형에서 기부금액과 강한 양(+)의 관계를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특례 및 정치 기부금액은 0.7%, 종교 외 일반기부는 0.8%, 종교 일반기부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 시 종교 일반기부금이 가장 크게 증가함을 보여 준다. 필요경비의 경우 종교 일반기부에서만 기부금액과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필요경비가 10% 감소하면 종교 일반기부 금액이 0.8%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가 증가하고, 필요경비가 감소할수록 종교 일반기부를 중심으로 기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VI-9〉 기부유형별 2SLS 회귀분석 2단계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1)                 | (2)                | (3)                  |
|------------------------------|---------------------|--------------------|----------------------|
| 기부유형                         | 특례 및 정치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Log of 기부가격 <sub>t</sub>     | 1.899<br>(1.740)    | 1.398<br>(1.452)   | -1.410*<br>(0.768)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069***<br>(0.028) | 0.076**<br>(0.034) | 0.129***<br>(0.041)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03<br>(0.024)   | -0.013<br>(0.025)  | 0.011<br>(0.029)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032<br>(0.027)   | -0.049<br>(0.033)  | -0.081***<br>(0.032) |
| 상수                           | 0.816<br>(0.835)    | 0.708<br>(0.676)   | -0.850**<br>(0.432)  |
| 연도별 더미                       | ○                   | ○                  | ○                    |
| IV                           | ○                   | ○                  | ○                    |
| 표본 수                         | 14,088              | 14,088             | 14,088               |
| 개인사업자 수                      | 4,623               | 4,623              | 4,623                |

주: 1. 종속변수는 log(기부금액+1)임

2. \*\*\* p<0.01, \*\* p<0.05, \* p<0.10

자료: 저자 작성

〈표 VI-10〉은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해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추정된 기부가격 탄력성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은 이중차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부가격 탄력성은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1.431로 탄력적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기부가격의 1% 감소가 기부금액의 약 1.4%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의 효과 역시 이중차분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만 관찰되어,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필요경비의 감소는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기부금액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VI-10〉 과소신고비율 집단별 2SLS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1)                 | (2)                 |
|------------------------------|---------------------|---------------------|
|                              | 과소신고비율 높은 집단        | 과소신고비율 낮은 집단        |
| Log of 기부가격 <sub>t</sub>     | -1.431**<br>(0.647) | 1.673<br>(2.138)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001<br>(0.047)   | 0.245***<br>(0.078)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44<br>(0.039)   | -0.002<br>(0.061)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005<br>(0.041)    | -0.179**<br>(0.078) |
| 상수                           | -0.444<br>(0.400)   | 0.707<br>(1.060)    |
| 연도별 더미                       | ○                   | ○                   |
| IV                           | ○                   | ○                   |
| 표본 수                         | 4,772               | 9,316               |
| 개인사업자 수                      | 1,777               | 2,862               |

주: 1. 종속변수는  $\log(\text{기부금액}+1)$ 임  
 2. \*\*\*  $p < 0.01$ , \*\*  $p < 0.05$ , \*  $p < 0.10$

자료: 저자 작성

〈표 VI-11〉은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 대해 기부유형별로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특례 및 정치기부와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 기부가격, 가처분소득,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필요경비 모두 기부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종교 외 일반 기부 의 경우 기부가격과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이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가격이 1% 감소할 경우 평균적으로 기부금액이 약 1.2% 증가하며, 전년도 과세대상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기부금액이 약 5.6%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VI-11〉 기부유형별 2SLS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높은 집단)

| 구분                           | (1)               | (2)                  | (3)               |
|------------------------------|-------------------|----------------------|-------------------|
| 기부유형                         | 특례 및 정치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Log of 기부가격 <sub>t</sub>     | -0.550<br>(0.377) | -1.215***<br>(0.546) | -0.453<br>(0.355)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034<br>(0.031)  | -0.029<br>(0.030)    | -0.010<br>(0.035)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00<br>(0.026)  | -0.056**<br>(0.027)  | -0.002<br>(0.026)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000<br>(0.025) | 0.004<br>(0.034)     | 0.007<br>(0.025)  |
| 상수                           | -0.410<br>(0.301) | -0.136<br>(0.298)    | -0.194<br>(0.252) |
| 연도별 더미                       | ○                 | ○                    | ○                 |
| IV                           | ○                 | ○                    | ○                 |
| 표본 수                         | 4,772             | 4,772                | 4,772             |
| 개인사업자 수                      | 1,777             | 1,777                | 1,777             |

- 주: 1. 종속변수는 log(기부금액+1)임  
 2. 0.000은 0보다 크고 0.001보다 작은 수임  
 3. \*\*\* p<0.01, \*\* p<0.05, \* p<0.10

자료: 저자 작성

〈표 VI-12〉는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 대해 기부유형별 기부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경우 기부유형 중 종교 일반기부에서만 기부가격 탄력성 부호가 음(-)의 값을 보였다.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은 1.461이며, 이는 기부가격이 1% 감소할 경우 기부금액이 약 1.5%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부가격 탄력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다.

모든 기부유형에서 가처분소득 증가는 기부금액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10% 증가할 경우, 특례 및 정치기부는 9.2%, 종교 외 일반기부는 1.6%, 종교 일반기부는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가처분소득의 기부 증가 효과가 다른 기부 유형과 비교하여 크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필요경비의 경우, 종교 일반기부에서만 기부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필요경비가 10%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종교 일반기부 금액이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2〉 기부유형별 2SLS 회귀분석 결과(과소신고비율 낮은 집단)

| 구분                           | (1)                | (2)                 | (3)                  |
|------------------------------|--------------------|---------------------|----------------------|
| 기부유형                         | 특례 및 정치            | 일반(종교 외)            | 일반(종교)               |
| Log of 기부가격 <sub>t</sub>     | 2.152<br>(1.877)   | 1.768<br>(1.584)    | -1.461*<br>(0.859)   |
| Log of 가처분소득 <sub>t</sub>    | 0.092**<br>(0.046) | 0.160***<br>(0.058) | 0.244***<br>(0.070)  |
| Log of 과세대상소득 <sub>t-1</sub> | -0.006<br>(0.040)  | 0.013<br>(0.043)    | 0.011<br>(0.051)     |
| Log of 필요경비 <sub>t</sub>     | -0.054<br>(0.047)  | -0.086<br>(0.056)   | -0.148***<br>(0.056) |
| 상수                           | 0.955<br>(0.901)   | 0.521<br>(0.750)    | -1.101**<br>(0.540)  |
| 연도별 더미                       | ○                  | ○                   | ○                    |
| IV                           | ○                  | ○                   | ○                    |
| 표본 수                         | 9,316              | 9,316               | 9,316                |
| 개인사업자 수                      | 2,862              | 2,862               | 2,862                |

주: 1. 종속변수는  $\log(\text{기부금액}+1)$ 임

2. \*\*\*  $p < 0.01$ , \*\*  $p < 0.05$ , \*  $p < 0.10$

자료: 저자 작성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이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기부금액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 증가는 종교 외 일반기부에서 주로 나타났다.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종교 일반기부에서만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가 발견되었고, 전반적으로 기부가격보다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기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요경비의 변화는 주로 종교 일반기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소결

본 절은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에 대한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반응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격 하락으로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특정 기부유형 또는 특정 집단에서만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부유형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으나 종교 일반기부의 금액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분석에서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경우 종교 일반기부금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에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기부금액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율 인상은 기부가격 하락으로 기부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기부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요경비의 증가는 기부금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경비 규모가 클수록 기부를 통한 공제혜택을 받으려는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분석에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소득세율 인상에 의한 기부금액의 증가가 조세회피 용이성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 기부금액의 증가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세회피 용이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행태 변화가 관측되었다. 과소신고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

서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현상은 해당 집단이 세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수준이 높아서 세부담 경감 수단인 기부금 세제혜택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다르게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기부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조세회피 용이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기부의 사결정에서 경제적 요건이 세제지원 제도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절의 분석 결과 중에는 전년도 과세대상소득과 당해의 기부금액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 결과도 있었다.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기부 시점을 소득세율 인상 전으로 앞당겨 소득세율 인상 후 기부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율 인상에 의한 기부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소득세율 인상 결과,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 효과와 함께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 가. 분석 개요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 근방에 있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부담을 줄이는 행태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행태반응에 대한 근거는 권성오(2019), 권성오·권성준(2020), Saez(2010), Chetty et al.(2011) 등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집군분석(Bunching Analysis) 방법론을 이용하여 세율이 증가하는 경계점 부근에서 집군이 나타남을 보여 줌으로써 납세자가 경계점 부근 세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밝혔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 근방에 있는 사업소득자에게는 기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유인이 존

재한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 바로 아래의 기부한 인원의 비율이나 평균적인 기부금액은 경계점 바로 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을 기준으로 기부인원 비율, 평균 기부금액 등의 분포를 아랫 구간과 윗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절의 분석은 2015~2022년 종합소득세 횡단면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sup>39)</sup> 분석에 실제로 활용한 자료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표본을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다. 경비율 신고자, 비사업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0인 사업자 등도 제외하였다. 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금액이 결정되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로 경비율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살펴볼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은 현행 세율체계상 경계점인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이다. 과세표준 경계점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의 경우 2015~2022년 동안 조정 없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해당 과세표준 경계점을 분석할 때 2015~2022년 자료를 모두 이용했다. 과세표준 경계점 3억원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분석 기간을 2015~2017년과 2018~2022년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했다. 만약 2018~2022년에서만 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가 관찰된다면 소득세율 인상으로 기부에 대한 유인이 달라져 기부행태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세표준 경계점 5억원과 10억원은 각각 2017년과 202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경계점 3억원의 경우와 유사하

39) 국세청의 국세통계센터에서는 2015년 귀속연도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어, 2015년부터 최근 연도까지의 자료를 구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계 분석 기간을 경계점 적용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과세표준 경계점 5억원의 경우 2015~2016년과 2017년, 과세표준 경계점 10억원의 경우 2018~2020년과 2021~2022년으로 분석 기간을 나누었다. 이때 일부 연도가 제외된 것은 해당 경계점 도입과 무관하게 세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 나. 분석 결과

### 1) 과세표준 경계점별 분석 결과

[그림 VI-7]은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보여 준다. 여기서 기부비율은 소득세 신고인원 대비 기부한 인원(즉 기부금액이 0보다 큰 인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바를 설명하면, 그림의 파란색 점과 주황색 점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내고,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낸다. 세부구간은 각 그림의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 좌우 구간을 20개로 균등하게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1,200만원 경계점에 대한 그림에서 아랫 구간은 1,000만~1,200만원이므로 세부구간의 크기를 10만원으로 하면 총 20개의 세부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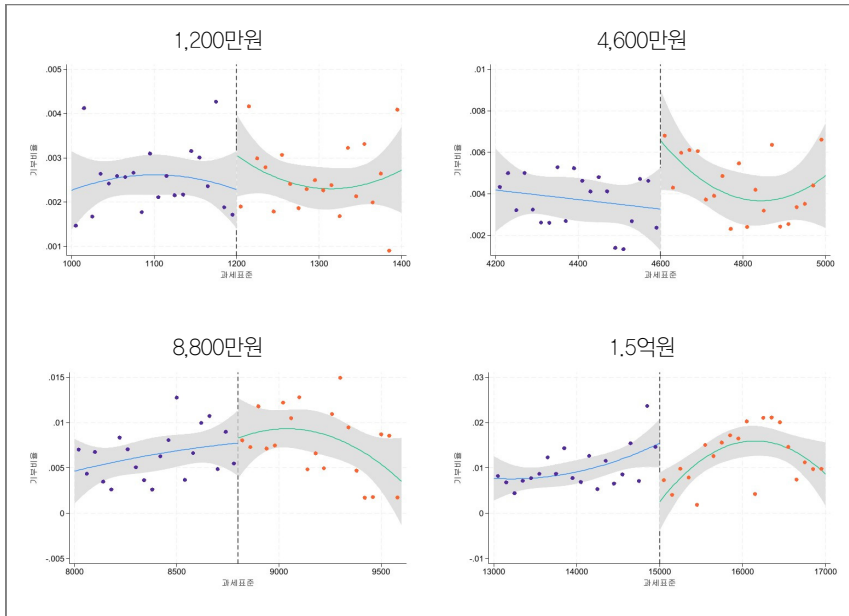
[그림 VI-7]을 보면 과세표준 경계점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에서의 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참여 행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경계점 4,600만원에서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과세표준 경계점 1.5억원 근방의 경우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

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된다. 그리고 경계점 부근에서의 기부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세표준 1.5억원 근방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참여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에서의 세율 변화에 대응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과세표준이 1.5억원보다 조금 크면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은 38%이고, 1.5억원보다 조금 작으면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은 35%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5억원 근방인 납세자는 기부참여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1.5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행태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부비율이 0.01~0.02% 수준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7]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기부비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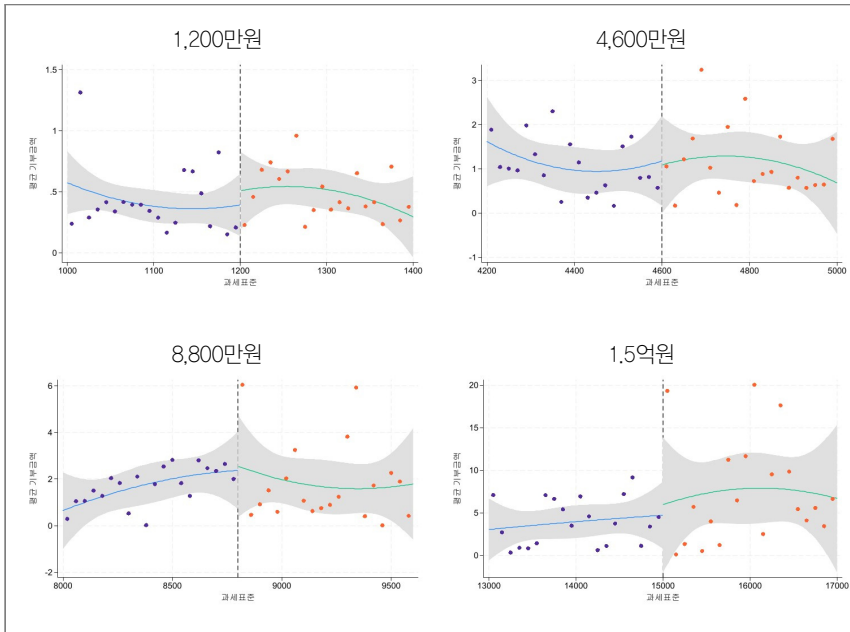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8]은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보여 준다. 네 경계점 모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에서는 경계점 아랫 구간 기부비율이 경계점 윗 구간 기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기부금액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부근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표준 경계점에서 세율 변화에 따른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가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보다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8]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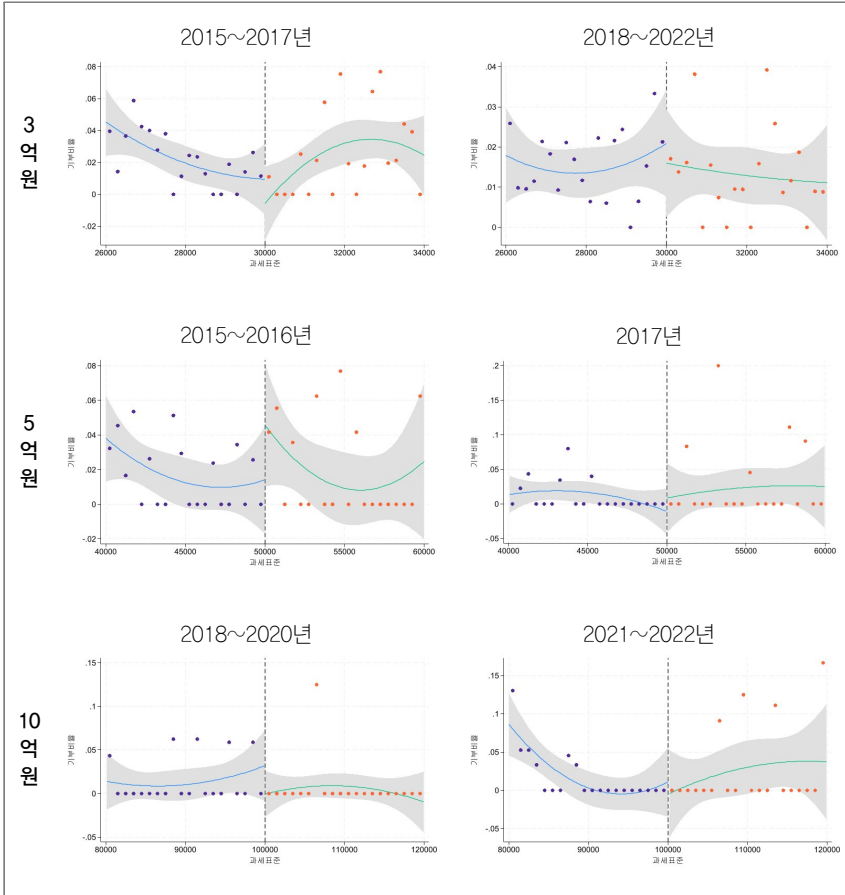
[그림 VI-9]은 과세표준 구간 3억원, 5억원, 10억원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각 경계점이 도입된 전후 기간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과세표준 경계점 3억원은 세율체계 개편으로 2018년에 도입되었다. 즉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2018년 이전 38%였는데, 2018년부터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한계세율의 변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기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추어 세부담을 줄일 유인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2018년 이전에는 경계점 3억원 근방에서 기부비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가, 2018년 이후에는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경계점 5억원과 10억원 근방에서도 경계점 도입 전후에 기부유인의 변화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면서 5억원 경계점이 도입되었고, 2021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면서 10억원 경계점이 도입되었다.

[그림 VI-9]에서 과세표준 3억원 근방에서의 기부비율을 보면, 경계점 도입 후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소득세율 인상으로 기부참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려는 행태 변화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지만, 경계점 도입 전후 기부비율을 비교해 보면 경계점 도입 후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도입 이전에 비해 조금 높아진 모습은 보인다. 이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부를 한 사업소득자가 경계점 부근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결과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경계점 근방의 기부인원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0]은 과세표준 구간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기간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근방의 기부인원 분포를 국소다항회귀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절대적인 기부인원이 작아 유의미한 변화로 받아들

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과세표준 2.8억원에서 3.1억원 구간의 기부인원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이전보다 많아진 현상은 발견된다.

[그림 VI-9] 과세표준 3억, 5억, 10억원 근방 기부비율

(단위: %, 만원)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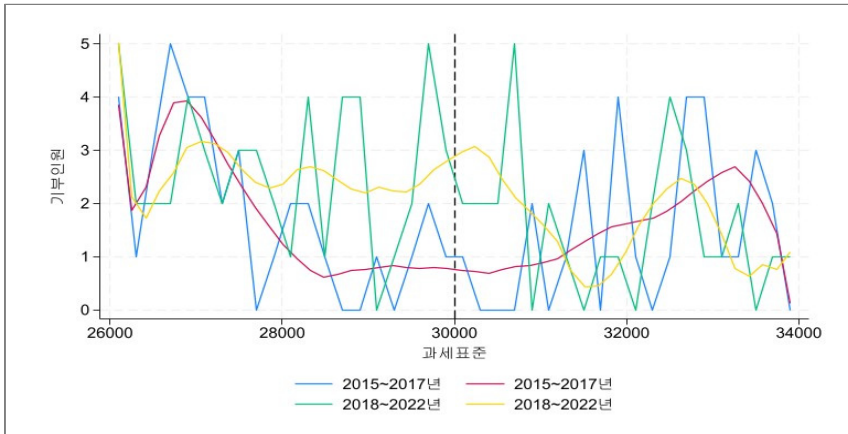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과세표준 3억원 근방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5억원, 10억원 근방에서의 기부비율 역시 경계점 도입 후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

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세 표준 5억원과 10억원 근방의 경우 기부비율이 0인 세부구간이 많이 발견되고,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오히려 경계점 도입 후 0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견된다. 즉 경계점이 도입되면서 기부유인이 발생하여 기부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 오히려 기부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초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부 외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비율이 낮고, 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유인도 크게 변화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과세표준 5억원과 10억원 근방에 대한 결과는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납세인원 자체가 적고 이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VI-10]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기부인원 비교

(단위: 명, 만원)



주: 붉은 실선과 노란 실선은 국소다항회귀(epanechnikov kernel, degree=5 적용)로 예측된 결과이고, 파란 실선과 초록 실선은 과세표준 세부구간별 인원을 연결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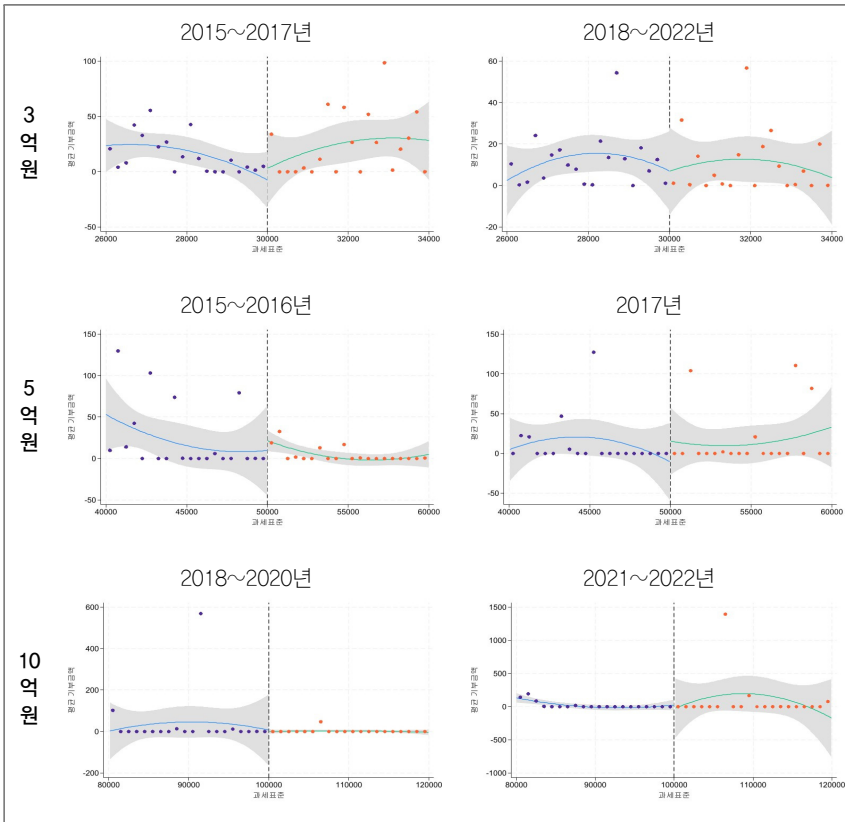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11]은 과세표준 구간 3억원, 5억원, 10억원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각 경계점이 도입된 전후 기간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도입되면서 경계점 윗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었음에도,

경계점 모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바로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즉 세율인상에도 더 많은 기부금을 지출하여 세부담을 낮추려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기부비율에 대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듯이 과세표준 경계점 5억원과 10억원 근방에서 평균 기부금액이 0인 구간이 다수 발견되어, 초고소득 사업소득자들의 경우 세율인상에 대한 대응을 기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그림 VI-11] 과세표준 3억, 5억, 10억원 근방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2) 기부유형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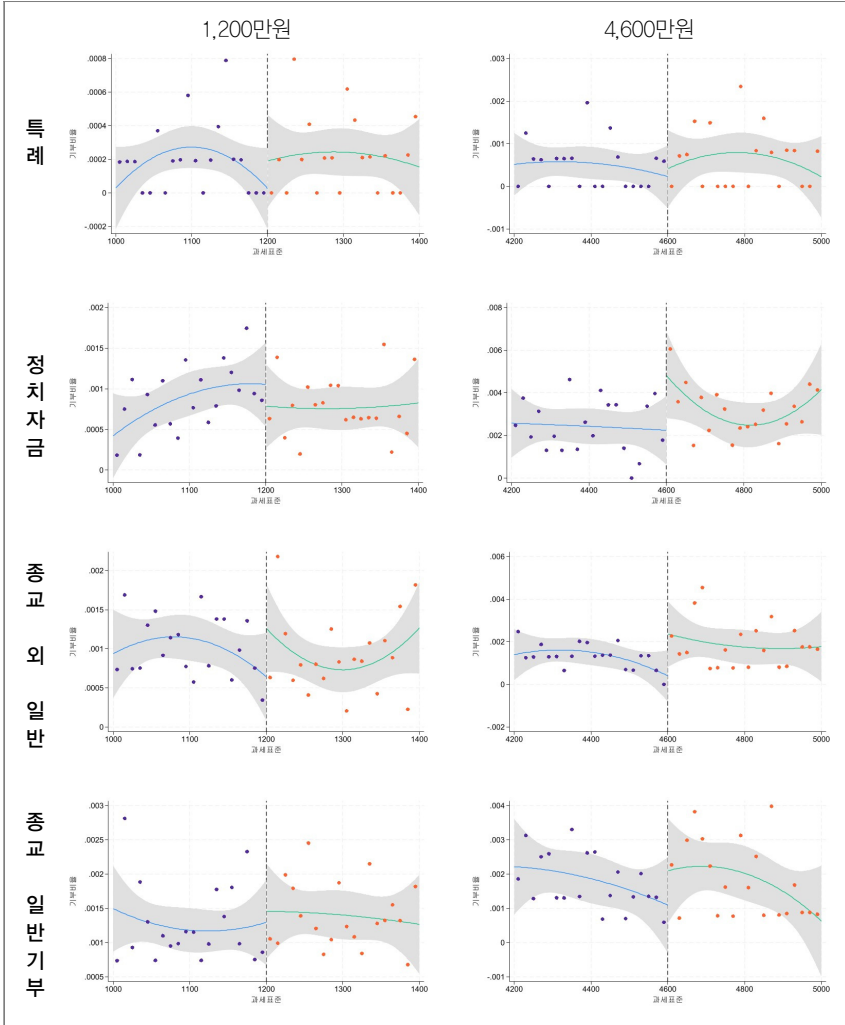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납세자의 기부행태 변화가 기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 소절에서는 기부유형에 상관없이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과세표준 경계점 근방에서 기부행태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기부에서는 기부행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특정 기부유형에 한정하여 기부행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앞 소절의 결과 중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 기부비율에 대한 분석에서는 예상되었던 현상, 즉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기부유형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소절에서는 과세표준 5억원과 10억원 경계점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과세표준 5억원과 10억원 경계점의 경우 관측치 수가 거의 없어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VI-12]와 [그림 VI-13]은 과세표준 경계점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근방의 기부비율을 특례기부, 정치자금기부, 종교 외 일반기부, 종교 일반기부 등 기부유형별로 보여 준다.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경계점의 경우, 모든 기부유형에서 경계점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정치자금기부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경계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일부의 경우 예상과 반대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의 경우 모든 기부유형에서 경계점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특례기부의 경우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과 윗 구간 간 기부비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정치자금, 종교 외 일반기부, 종교 일반기부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

에서 나타나는 기부참여에 대한 행태 변화는 정치자금, 종교 외 일반기부, 종교 일반기부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그림 VI-12]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근방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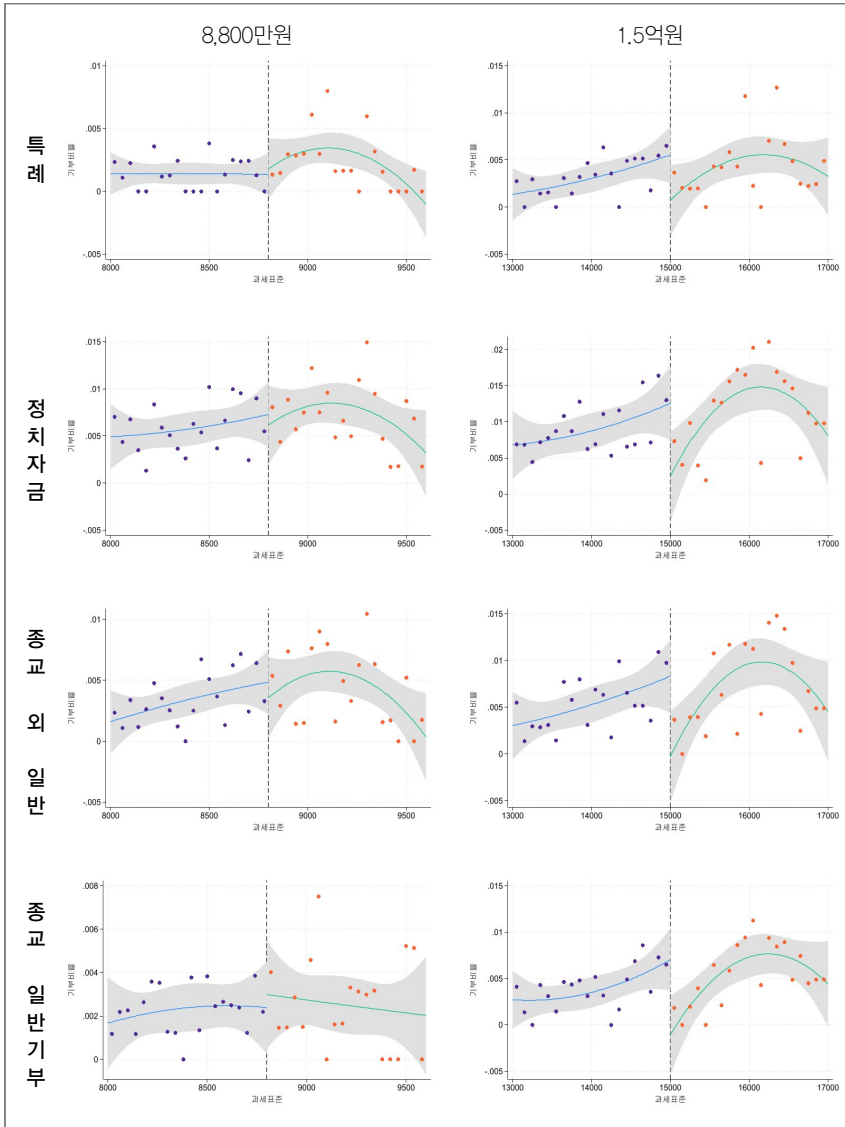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냄
-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13] 과세표준 8,800만, 1.5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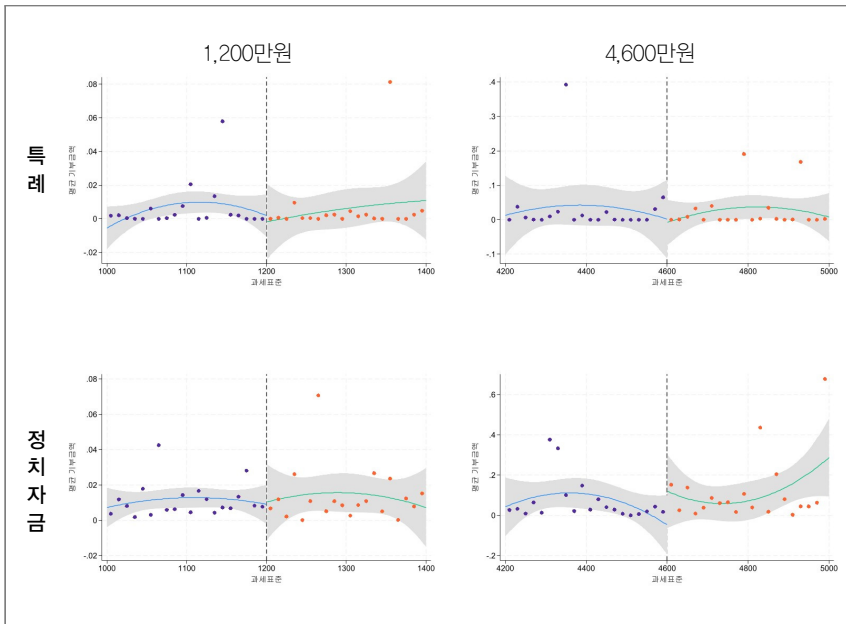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냄
-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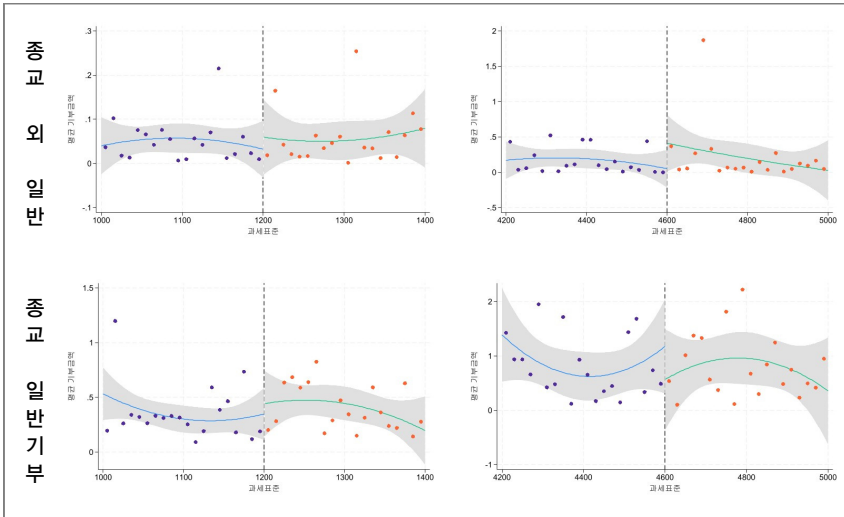
[그림 VI-14]와 [그림 VI-15]는 과세표준 경계점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기부유형별로 보여 주는데, 모든 과세표준 경계점, 기부유형에서 경계점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경계점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큰 경우는 존재하는데, 과세표준 4,600만원 경계점 근방 종교 일반기부, 과세표준 8,800만원 경계점 근방 특례기부, 과세표준 1.5억원 근방, 특례 기부와 종교 일반기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점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윗 구간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과 반대로, 경계점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아랫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관측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그림 VI-14] 과세표준 1,200만, 4,600만원 근방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그림 VI-14]의 계속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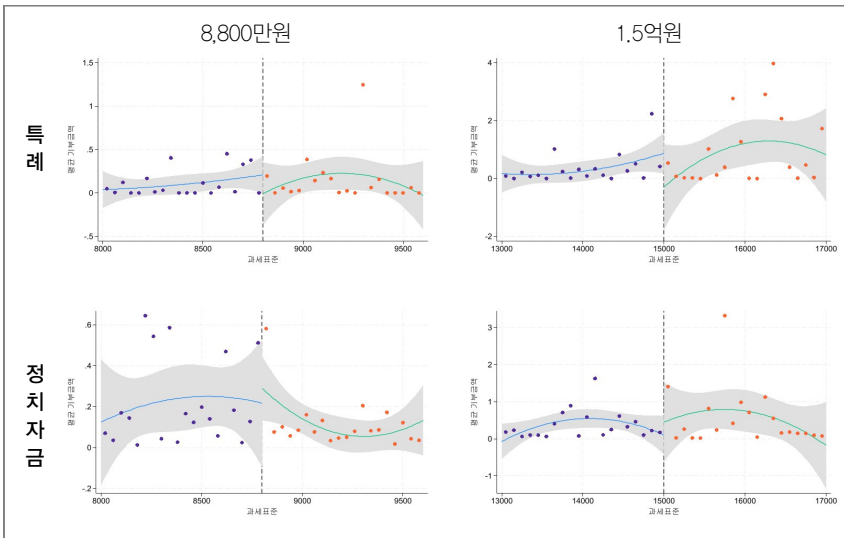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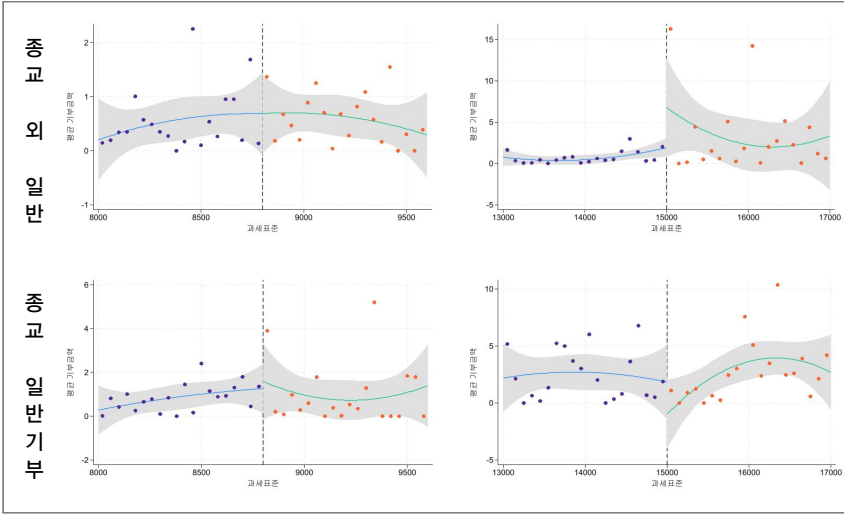
[그림 VI-15] 과세표준 8,800만, 1.5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그림 VI-15]의 계속

(단위: 만원)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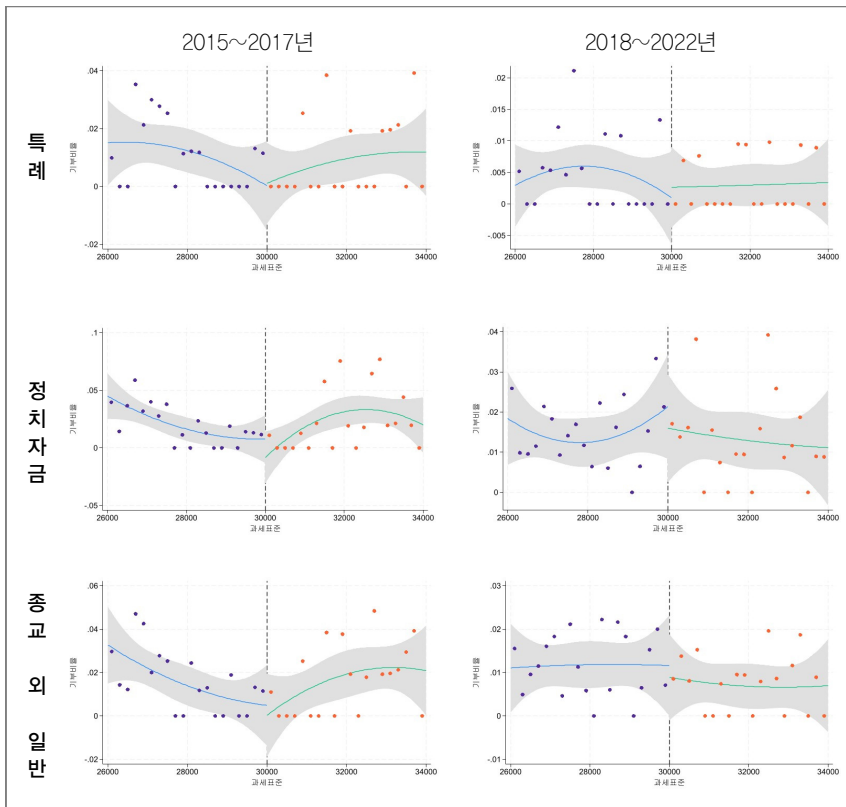
[그림 VI-16]은 과세표준 경계점 3억원 도입 전후, 즉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인상 전후 기간에 대해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기부 유형별로 보여 준다. 이전 소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계점 도입 이전에는 경계점 부근 아랫 구간과 윗 구간의 기부비율의 차이가 없다가 경계점 도입 후 경계점 부근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부근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세율인상으로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 일반기부를 제외한 모든 기부유형에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 일반기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이후 경계점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기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경계점 아랫 구간의 변화를 보면 경계점 도입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라 기부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계점 도입 이후에는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

라 기부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계점 도입 이후 기부비율이 0인 세부구간의 수가 줄어드는 패턴도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서 기부참여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려는 사업소득자의 수가 증가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표준 경계점 3억원 도입 전후 기간에 대해 경계점 근방의 기부인원을 기부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VI-17]이 그 결과를 보여 주는데, 특례기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략 과세표준 2.8억원에서 3.1억원 구간의 기부인원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이 도입되면서 많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다만 절대적인 기부인원이 적어 유의미한 변화는 아닐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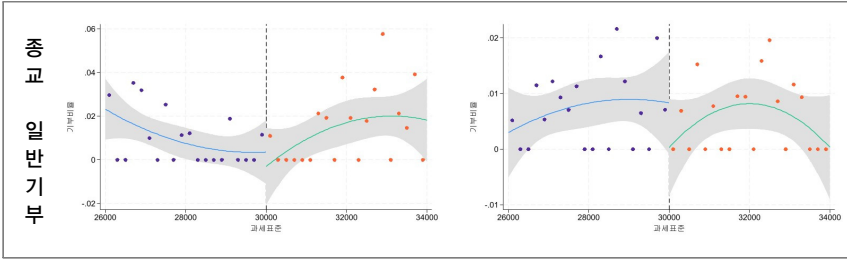
[그림 VI-16]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기부비율

(단위: %, 만원)



[그림 VI-16]의 계속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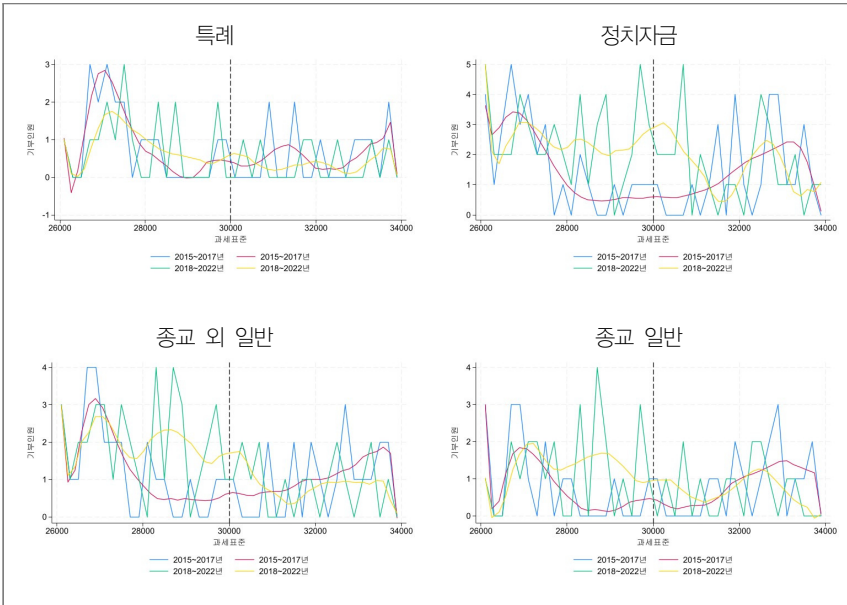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17] 기부유형별 신고인원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비교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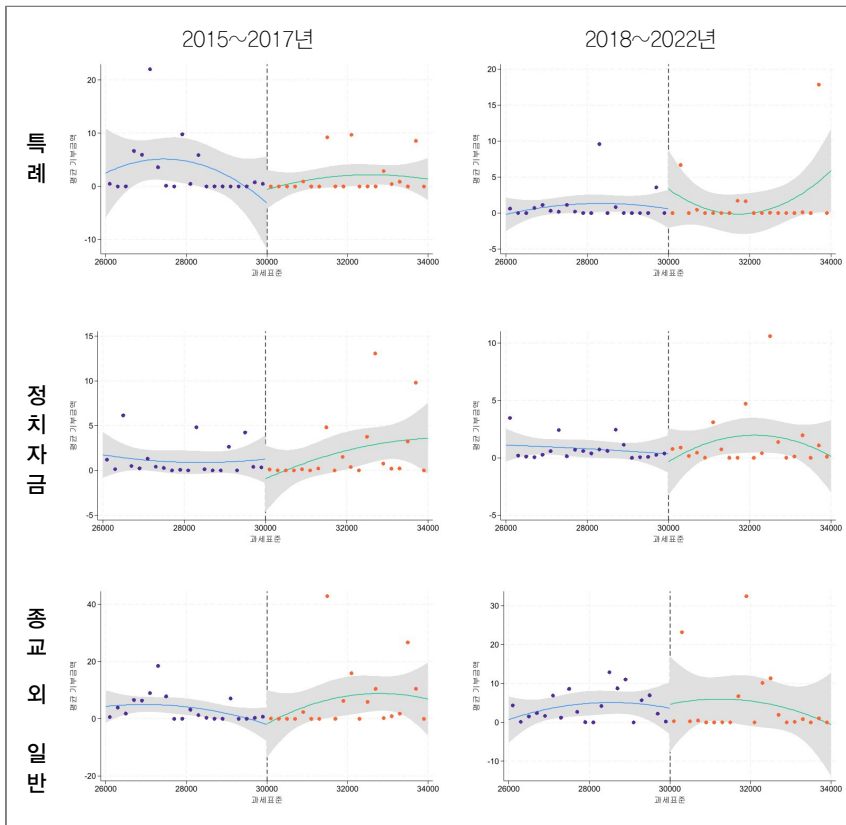
- 주: 붉은 실선과 노란 실선은 국소다항회귀(epanechnikov kernel, degree=5 적용)로 예측된 결과이고, 파란 실선과 초록 실선은 과세표준 세부구간별 인원을 연결한 선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18]은 과세표준 경계점 3억원 도입 이후 기간에 대해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기부유형별로 보여 주는데, 모든 기부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계점 도입에 따른 평균 기부금액 분포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단 종교 외 일반기부의 경우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도입 이후 증가한 모습은 확인된다. 이는 경계점 3억원 도입 전후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한 그림으로 비교한 [그림 VI-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종교 외 일반기부에 대한 그림을 보면 대략 과세표준 2.8억원에서 3.1억원 구간에서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도입 이후 증가한 모습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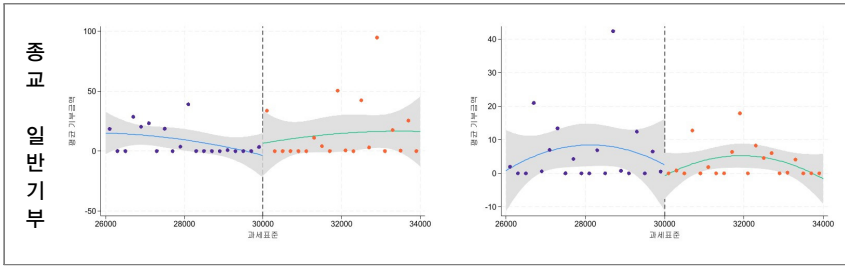
[그림 VI-18]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그림 VI-18]의 계속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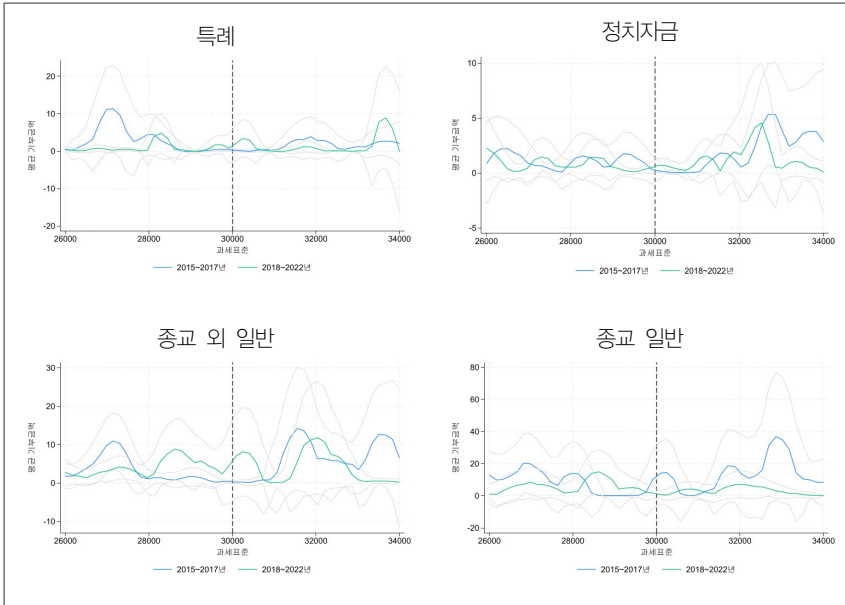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19] 기부유형별 평균 기부금액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비교

(단위: 명, 만원)



- 주: 파란 실선과 초록 실선은 국소다항회귀(epanechnikov kernel, degree=5 적용)로 예측된 결과, 회색 실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3)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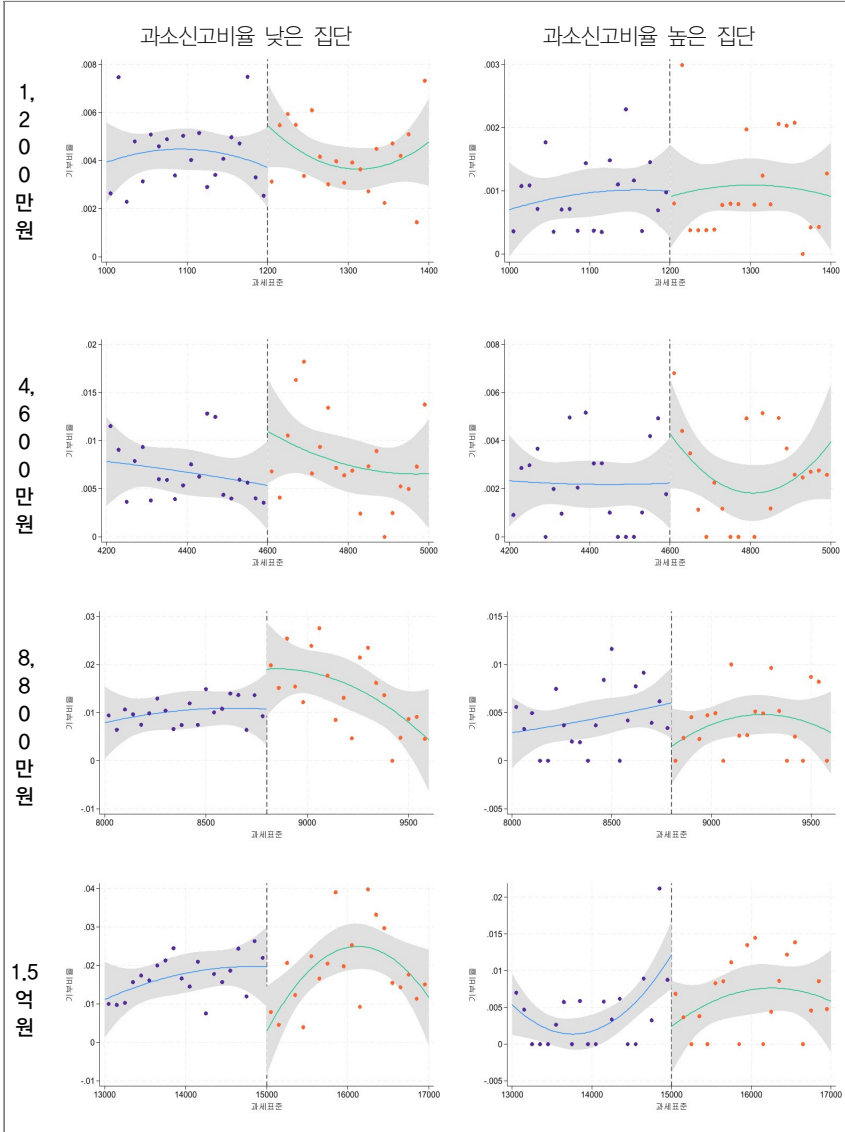
이전 절에서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도 이 두 집단에 대해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의 기부행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VI-20]은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경계점 근방의 기부비율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과세표준 1,200만원 경계점과 4,600만원 경계점의 경우 두 집단 모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8,800만원 경계점 근방의 경우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에서는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I-21]은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5억원 경계점 근방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과 8,800만원 경계점에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보다 높게 나타난다.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20]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 기부비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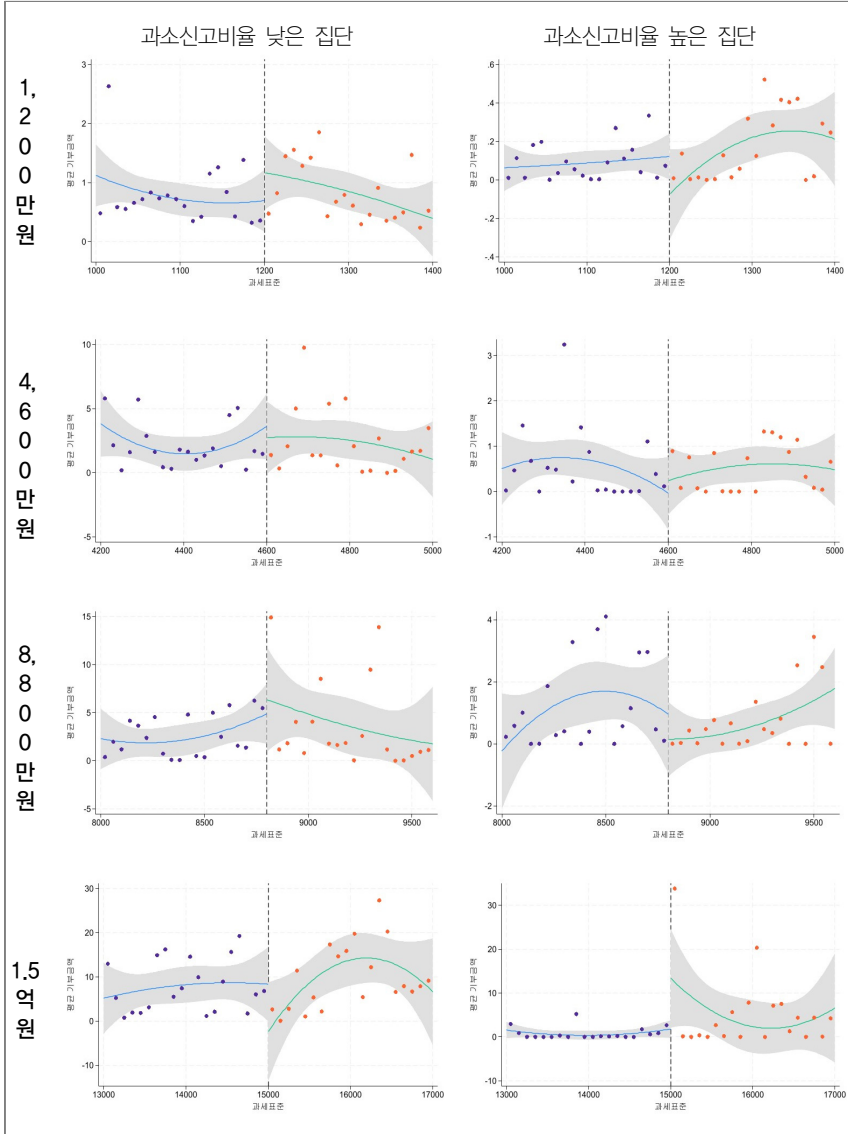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21] 과세표준 1,200만, 4,600만, 8,800만, 1.5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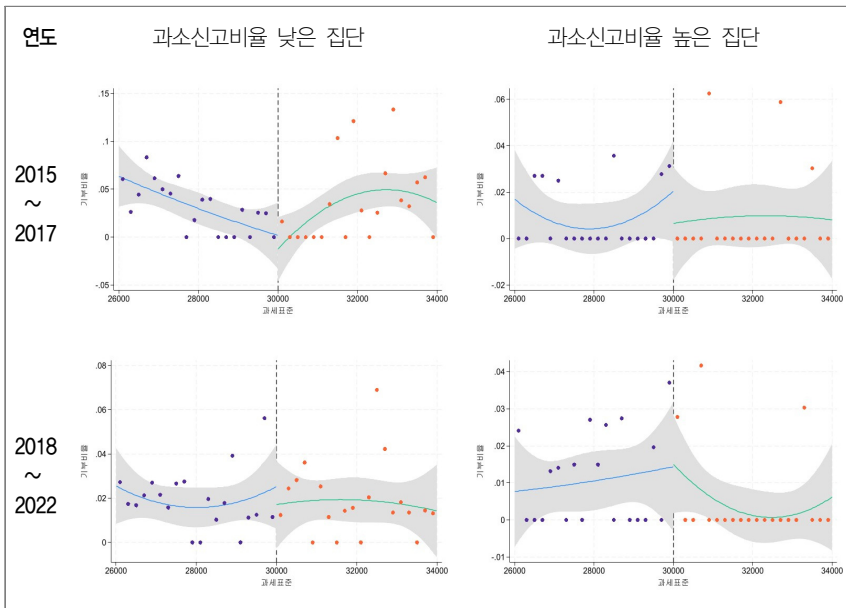
-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22]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전후 시기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부근의 기부비율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여 준다. 과소신고비율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세율인상으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기부비율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기부비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아랫 구간에서 세율인상 이후 기부비율이 높아지거나 0에서 0보다 높아지는 구간들이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 일부 확인된다. 이는 경계점 부근에서의 기부인원이 늘어남을 시사하는데, [그림 VI-23]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으로 경계점 부근에서 신고인원이 많아진 것이 확인된다. 다만 앞선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절대적인 신고인원 수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닐 수 있다.

[그림 VI-22]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 기부비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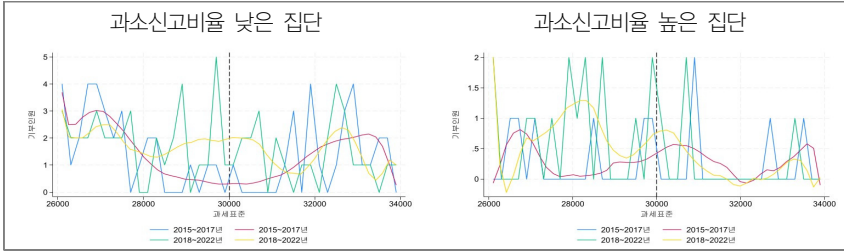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기부비율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 여부를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23] 과소신고비율별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도입 전후 신고인원 비교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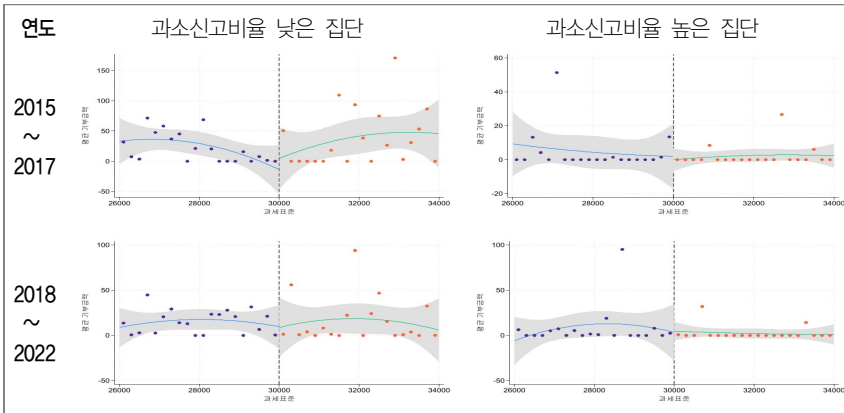
주: 파란 실선과 초록 실선은 국소다항회귀(epanechnikov kernel, degree=5 적용)로 예측된 결과, 회색 실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I-24]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한 전후 시기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경계점 부근의 평균 기부금액 분포를 과소신고 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여 준다. 기부비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비율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세율인상으로 경계점 바로 아랫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이 경계점 바로 윗 구간의 평균 기부금액보다 높아지는 패턴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VI-24] 과세표준 3억원 근방 과소신고비율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주: 1. 점들은 세부구간별 평균 기부금액을 나타냄

2. 파란색 실선과 초록색 실선은 각각 경계점 좌우 구간에 대해 기부금액을 과세표준의 이차식으로 회귀하여 예측된 결과를 나타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다. 소결

본 절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과세표준 경계점 부근에서 세율의 변화로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가 변화하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고, 특정 소득구간, 즉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근방에서 기부비율에 대한 행태 변화만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부유형, 과소신고비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기부유형, 과소신고비율에 따른 행태 변화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본 절의 분석 결과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혜택의 변화가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기부행태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자, 즉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사업소득 외 다른 유형의 소득도 존재하여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사업소득만 있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자에게서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행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세율인상은 기부가격을 낮춰 기부유인을 높일 수도 있지만, 세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부유인을 낮출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효과, 후자의 경우는 소득효과인데, 이러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호작용으로 기부에 대한 유인이 상쇄된다면 소득세율의 변화에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사업소득자는 기부가 아니어도 세율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 기부행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즉 기부 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 이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거나, 중소기업, R&D 등에 대한 공제 및 감면제도와 같이 사업소득자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

## VII. 결론

---

### 1.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변화와 소득세율 변화에 따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바뀌었을 때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납세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가격 탄력성도 추정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연구의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특정 고액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제도 변화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제V장의 분석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2018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는 사실상 의도한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제도 변화의 경우 고액기부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부금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 이는 기부금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의 증가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2018년 제도 변화로 고액기부참여가 증가하거나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부참여 또는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한 것과 같은 제도 변화는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제도 변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분석에서 기부참여와 기부금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의 공익활동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 외 일반기부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이를 참고하여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제도 변화 효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세액공제율의 전반적 인상의 효과가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미 기부를 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부금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한, 기부금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조세지출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 오히려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액기부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40)</sup>

사업소득자의 경우 각종 비용의 필요경비 처리, 다양한 공제제도 등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이는 실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용받는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제도가 기부문화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 비율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 부근 사업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기부 인센티브 또는 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기부행태가 변화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 인센티브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집단 또는 계층을 타깃하여 해당 집단 또는 계층의 기부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저소득구간의 과세표준 경계점에서 기부행태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고,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작을수록 또는 필요경비가 클수록 기부금액 수준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소득수준이 낮거나 수입 대비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소득자의 기부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40) 이와 관련된 내용은 권성준 외(2024)에서도 분석된 바가 있다.

기부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기부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적 관점 그리고 민간 공익활동의 증대 측면에서 특례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 일반기부는 대체로 신앙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종교 일반기부에 대한 경제적 유인 없이 신앙적 동기만으로도 기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교 일반기부의 이러한 특성은 기부가격 하락에 의한 세제혜택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세수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대체로 기부 인센티브 변화가 종교 일반기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종교 일반기부가 세제혜택보다 신앙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공제 방식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소득세율의 변화를 통해 기부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기부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와 함께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서로 상충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충효과는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율이 낮은 원인이면서 기부 인센티브 변화의 효과가 특정 집단 혹은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세제혜택의 확대로 기부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도 변화를 통한 기부유도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고소득층의 경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기부 인센티브 하락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방식의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액기부 참여를 늘리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이전에는 주로 고액기부 기준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고액기부를 유도하는 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2018년 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021~2022년에는 한시적이지만 소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액기부 참여의 증가가 이러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부참여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21년 제도 변화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에는 새로운 기부참여자 증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소액기부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기부참여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2. 한계점

본 연구의 분석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하며, 향후 더 엄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 중 하나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한계이다. 서론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으나, 이 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한계점들도 존재한다. 간단히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소득세 신고자료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가 없어 기부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신고자료상 기부금액과 실제 기부금액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세제적격 기부금에 한정하여 분석하여 모든 기부행태를 완전 반영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중차분 분석, 기부가격 탄력성 추정 등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다.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이 동질적이지 못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부분에서는 통제집단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한계

도 존재한다. 이중차분분석의 가정인 평행추세를 엄밀하게 검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주요 한계점이다. 그리고 기부금액은 0보다 큰 값을 가져서 0에 많이 분포하는 특성을 반영한 토빗 모형(Tobit Model)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이다.<sup>41)</sup>

### 3. 향후 연구과제

마지막으로 향후 수행되길 바라는 연구과제를 몇 가지 언급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향후 사업소득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기부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자들의 기부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과세표준이 커서 한계세율의 수준이 기부금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사업자도 전체 지출한 기부금의 많은 비중을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힌다면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 모두를 이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또는 소득세율이 변화할 경우에 기부금 공제방식에 대한 유인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의 기부방식 선택 행태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제도의 변화로 기부행태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제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해당 공제제도로 공제

---

41)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분석의 경우 토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자료의 크기가 커 추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컴퓨터 자원(메모리)이 부족하여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분석의 경우, 고정효과를 고려한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고, 분석 결과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와 유사했다.

받는 금액의 변화에 따라 기부의 유인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공제제도들이 동시에 개정되므로 이러한 연구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국내 문헌>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 연도.
- 권성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납세자 행태 변화- 집근추정법을 이용한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권성오·권성준,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권성준·송은주·김효림, 『개인기부 관련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20-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권성준·강성훈·이경훈,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사항』,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6),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22.
- 기획재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 9.
-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0, pp. 143~158.
-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박정수·김준기, 「개인 기부, 소득과 한계 세율에 관한 연구: 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52권 제3호, 2014, pp. 1~29.
-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회계학회 기타자료집』, 제2015권 제5호, 2015, pp. 1~40.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

- 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pp. 151~178.
- 안종석·김빛마로, 『소득세 Tax Gap 추정모델 고도화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홍우형,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20, pp. 31~61.

## 〈외국 문헌〉

- Adena, Maja, “How can we improve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Lessons from field experiments in fundraising,” *The Routledge Handbook of Taxation and Philanthropy*, 2021, pp. 344~353.
- Almunia, Miguel., Guceri, Irem, Lockwood, Ben, and Scharf, Kimberley, “More giving or more givers?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n charitable donations in the UK,”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3, 2020, pp. 104~114.
- Amato, Louis H., and Christie H. Amato, “The effects of firm size and industry on corporate giv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72, 2007, pp. 229~241.
- Andreoni, James,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6), 1989, pp. 1447~1458, <http://www.jstor.org/stable/1833247>.
- Andreoni, James, and A. Abigail Payne, “Charitable giving,”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5, 2013, pp. 1~50.
- Auten, Gerald E., Holger Sieg, and Charles T. Clotfelter, “Charitable giving, income, and taxes: An analysis of panel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2002, pp. 371~382.
- Backus, Peter G., and Nicky L. Grant, “How sensitive is the average taxpayer to changes in the tax-price of giving?,” *International tax*

- and public finance*, 26, 2019, pp. 317~356.
- Barrett, Kevin Stanton, Anya M. McGuirk, and Richard Steinberg, "Further Evidence on the Dynamic Impact of Taxes on Charitable Giving," *National Tax Journal*, 50(2), 1997, pp. 321~334.
- Chetty, Raj, Friedman, John N., Olsen, Tore, and Pistaferri, Luigi, "Adjustment Costs, Firm Responses, and Micro vs. Macro Labor Supply Elasticities: Evidence from Danish Tax Record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2), 2011, pp. 749~804.
- Clotfelter, Charles T.,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3), 1980, pp. 319~340.
- Fack, Gabrielle, and Camille Landais, "Are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efficient? Evidence from Fra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2), 2010, pp. 117~141.
- Hess, David, Nikolai Rogovsky, and Thomas W. Dunfee, "The next wave of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Corporate social initiativ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4(2), 2002, pp. 110~125.
- Hickey, R., Minaker, B., and Payne, A. A., "The sensitivity of charitable giving to the timing and salience of tax credits," *National Tax Journal*, 72(1), 2019, pp. 79~110.
- Hong, Woo-Hyung, and Sung Hoon Kang, "Does tax policy matter for donating behaviour? evidence from the korean tax reform," *Applied Economics Letters*, 2024, pp. 1~6.
- Johnson, Orace, "Corporate philanthropy: An analysis of corporate contribu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39(4), 1966, pp. 489~504.
- Jurik, Nancy C., and Ramsi Bodine, "Social responsibility and altruism in small-and medium-sized innovative businesses,"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41, 2014, pp. 113~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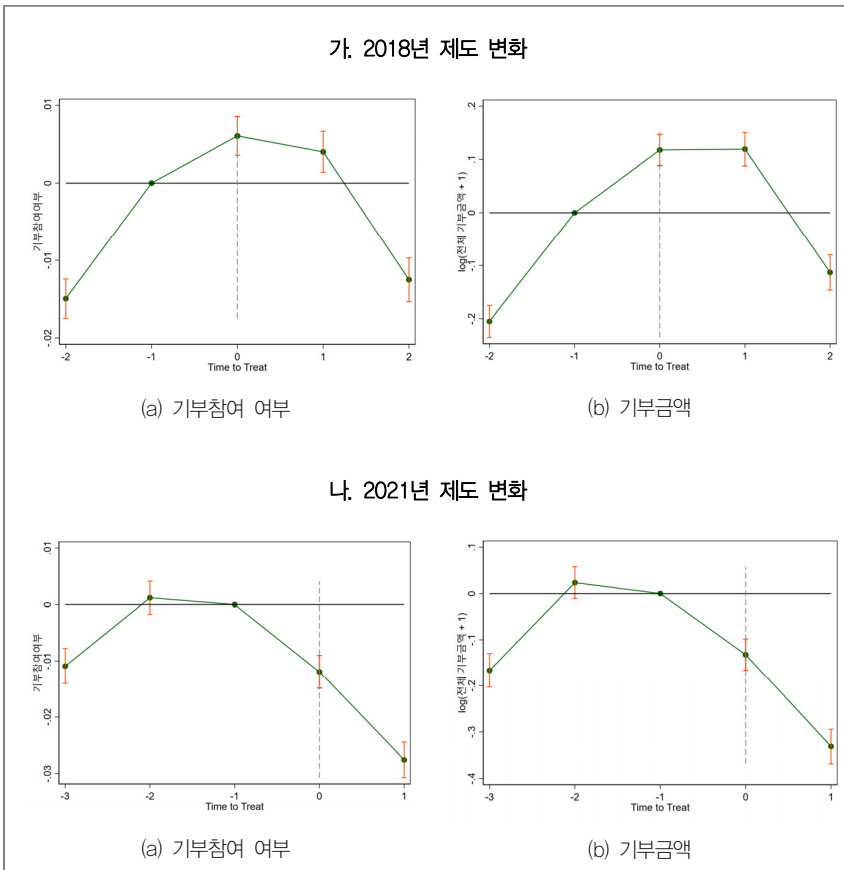
- Lähdesmäki, Merja, and Tuomo Takala, “Altruism in business—an empirical study of philanthropy in the small business context,”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8(3), 2012, pp. 373~388.
- Peterson, Dane K., Cathryn Van Landuyt, and Courtney Pham, “Motives for corporate philanthropy and charitable causes supported,” *Journal of Strategy and Management*, 14(4), 2021, pp. 397~412.
- Randolph, William C., “Dynamic income, progressive taxes, and the tim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4), 1995, pp. 709~738.
- Saez, Emmanuel, “Do Taxpayers Bunch at Kink Point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2(3), 2010, pp. 180~212.
- Schwartz, Robert A., “Personal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6), 1970, pp. 1264~1291.
- Taussig, Michael K., “Economic Asp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20(1), 1967, pp. 1~19.
- Thompson, J. K., Smith, H.L. and Hood, J. N., “Charitable contributions by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1(3), 1993, pp. 35~51.
- Tiehen, Laura, “Tax policy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of money,” *National Tax Journal*, 54(4), 2001, pp. 707~723.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 OECD Data Explorer, “Public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 <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4. 10. 25.
- \_\_\_\_\_,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자: 2024. 10. 25.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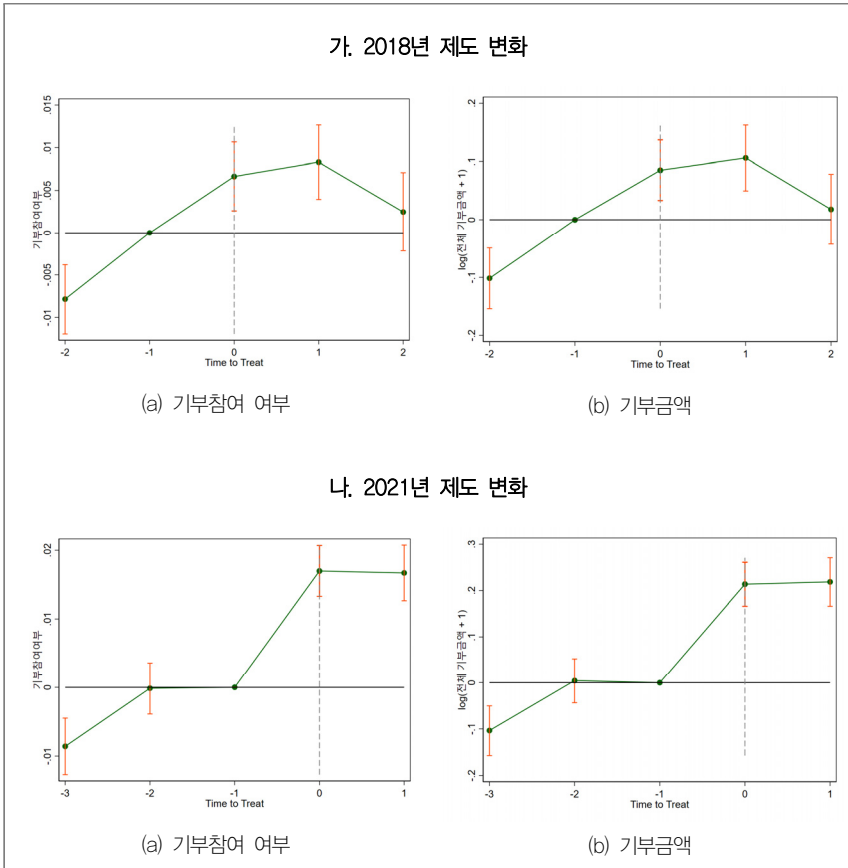
[부그림 1] 이벤트 스터디를 통한 평행추세가정 확인(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 주: 1. 분석 기간 계속 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2. 기부금액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포함하지 않음
- 3. 기부금액이 0인 납세자를 포함함
- 4. 개인특성으로 로그 가처분소득, 연령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함
- 5. 신뢰구간은 95% 유의수준을 반영하여 계산함

자료: 소득세 신고 및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2] 이벤트 스터디를 통한 평행추세가정 확인(종합소득세 신고자)



- 주: 1. 분석 기간 계속 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기부금액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포함하지 않음  
 3. 기부금액이 0인 납세자를 포함함  
 4. 개인특성으로 로그 가치분소득, 연령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함  
 5. 신뢰구간은 95% 유의수준을 반영하여 계산함

자료: 소득세 신고 및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

권성준 · 이경훈 · 강성훈

본 연구는 2015~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의 10% 표본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세율 등의 변화, 즉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변화가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과 2021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 2017~2018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에서의 소득세율 변화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기부참여, 기부금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기부참여와 평균 기부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때 소액기부와 종교 외 일반기부가 증가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경우 2021년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부참여와 평균 기부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변화는 기부금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이에 부합하는 납세자의 행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금액의 변화를 과세표준 5억~10억원 구간의 고소득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부가

격 하락으로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액이 증가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특정 기부유형이나 과소신고비율이 높은 집단에서만 기부금액 증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과 필요경비가 고소득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과소신고비율이 낮은 집단에서 이러한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년도 과세대상소득과 당해의 기부금액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경계점에서 사업소득자의 기부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계점에서 기부행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 1.5억원 경계점에서만 기부참여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평균 기부금액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고액기부금 구간의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전반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이 기부참여와 기부금액 증가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소득자의 기부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부 인센티브 변화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수입 대비 비용이 큰 사업소득자의 기부행위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종교 일반기부는 신앙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서 기회비용 관점에서 세제혜택이 세수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교 외 일반기부와 특례기부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적 관점과 민간 공익활동 증대 측면에서 중요하다. 넷째, 소득세율 인상 시 기부가격 하락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 효과와 기부 시점 조정에 따른 기부금액의 감소 효과가 상충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부금 세제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액기부를 촉진하는 방안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 Tax Incentive for Charitable Giving and Taxpayers' Charitable Giving Behaviors

---

Sungjoon Kwon, Kyoung Hoon Lee, and Sung Hoon Kang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hanges in donation tax credit rates and income tax rates—i.e., changes in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on taxpayers' donation behavior using income tax return and donation statement data from a 10% sample of taxpayers who filed global income tax and wage income tax year-end settlements between 2015 and 2022.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changes in donation participation and donation amounts in response to the 2018 and 2021 changes in donation tax credit rates, the 2017–2018 increase in income tax rates for taxable income exceeding KRW 500 million, and changes in income tax rates at the thresholds of taxable income brackets.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donation tax credit rate shows that, for global income tax filers, the increase in the donation tax credit rate in 2021 led to an overall increase in donation participation and average donation amounts. This effect was primarily driven by an increase in small donations and non-religious donations. In contrast, for wage income tax filers submitting year-end settlements, donation participation and average donation amounts showed a declining trend despite the 2021

policy changes. Additionally, the 2018 changes in the donation tax credit system were expected to affect high-value donors who contribute more than KRW 10 million; however, no corresponding behavioral changes among taxpayers were observed.

An analysis of changes in donation amounts in response to the income tax rate increase, focusing on high-income business income earners with taxable income between KRW 500 million and KRW 1 billion, found no clear evidence that the decline in the donation price due to the tax rate increase led to an increase in donation amounts. However, an increase in donations was observed only in specific donation types or among groups with high underreporting rates. Furthermore, disposable income and deductible business expenses were found to be factors influencing the donation behavior of high-income business income earners, with these factors playing a more significant role in groups with lower underreporting rates. Additionall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axable income in the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donated in the current year.

An analysis of the donation behavior of business income earners at the income tax bracket thresholds found no significant changes in donation behavior at most thresholds. However, at the KRW 150 million taxable income threshold, there was an increase in donation participation, although no notable change was observed in average donation amoun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irst, rather than adjusting the tax credit rate for specific high-value donation brackets, increasing the overall donation tax credit rate is likely to be more effective in promoting donation participation and increasing donation amounts. Second, to enhance the donation incentives for business income earners, policies should focus on encouraging donations from

lower-income business owners or those with high expenses relative to income, as they are less likely to respond to changes in donation incentives. Third, since religious donations are likely motivated by faith rather than tax incentives, tax benefits for such donations may lead to tax revenue losses in terms of opportunity cos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ise measures to promote non-religious donations and special-purpose donation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ctivities while considering fiscal sustainability. Fourth, When income tax rates increase, an increase in donation amounts due to the decline in donation prices may be offset by a decrease in donation amounts due to donation timing adjustment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tly operating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nations, tax credits may be more effective than income deductions. Fifth,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aimed at promoting a donation culture, strategies that encourage small donations could serve as a key policy tool.

## ■ 저자약력

### 권성준

고려대학교 경영학 · 통계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 ·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경훈

연세대학교 수학 학사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 ·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강성훈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응용경제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부교수

###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희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4-08

## 기부금 세제지원과 납세자의 기부행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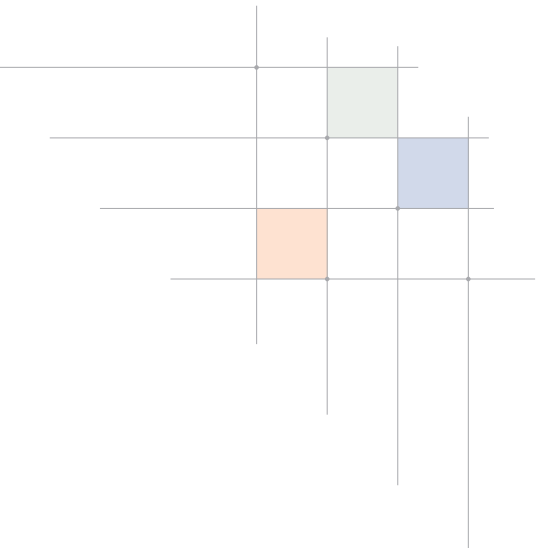
---

|         |   |                         |
|---------|---|-------------------------|
| 발행      | 행 | 2024년 12월 31일           |
| 저자      | 자 | 권성준 · 이경훈 · 강성훈         |
| 발행인     | 이 | 영                       |
| 발행처     |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주소      |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 전화      | 화 | (044)414-2114(대)        |
| 홈페이지    | 지 | www.kipt.re.kr          |
| 등록      | 록 | 1993. 7. 15. 제2014-24호  |
| 정가      | 가 | 18,000원                 |
| 조판 및 인쇄 | 일 | 지사                      |
| I S B N |   | 979-11-6655-317-2 93320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값 18000 원

95390

9 791166 55317 2

ISBN 979-11-6655-317-2